

2022

현장에서 전해온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CONTENTS

Part I

환경

1

1.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톤 → 1톤) 3
2.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한하는 포장재 개정법안 철회 7
3.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평판형’ 제외 10
4.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건의 12
5. 아스콘공장 저감기술 개발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단속 유예 14
6. 기존 아스콘공장의 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 특례규정 적용 17
7. 대기 배출시설 설비 증설을 제한하는 김포시 조례 개정 19
8. 폐기물재활용업자 위반행위별 횡수 합산 행정처분 규제완화 21
9. 중소기업자의 자원순환 이행기준 개선 22
10. 재활용(스티로폼)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24
11. 콘크리트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현실화 25
12. 폐기물관리법·개별법의 이중규제 적용 완화 27
13. 유해물질 관련 중복규제 철폐 등 체계 개선 28
14. 비금속광산 갱내수 규제 예외물질로 규정 30
15. 공장설치시기에 따라 차별적인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완화 32
16. 석회업종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지속 유지 34
17.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연1회 이상 자가측정 실시 폐지 36
18. 두부류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38
19. 염색가공산업에 가혹한 ‘환통법’ 40
20. 오염토양 반출대상 기준완화 42
21. 재활용 시 품목 특수성 반영 등 44
2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연장 46
23. 환경규제 처벌수준 완화 48
24. 환경부보다 지자체가 강화하는 환경규제 50
25.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범위 확대 53
2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55

Part II

입지·건축

57

1. 미음산업단지 내 창고업 입주 허용 59
2. 신발산업집적화단지 의류업종 추가 인·허가 절차 개선 60
3. 자동차정비업 관련 산업단지 입주 차별규제 해소 62

4. 협동화사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63
5. 공장 부대시설내 종업원을 위한 일반·휴게 음식점 운영허용	65
6.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조속한 허가 요청	67
7. 계획관리구역 건폐율 완화	68
8. 오염물질 배출업종에 대한 일률적 산업단지 입주 제한 완화	70
9. K-스타월드(미사섬) 관련 규제 완화	72
10.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제한 규제 완화 등	74
11. 경기북부 중첩규제 완화	77
12.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	81
13. 中企협동조합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허용	83
14. 갈 곳 잃은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85
15.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업무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	87
16. 자연녹지시설 건폐율 완화	89
17. 가설건축물 재질범위에 컨테이너 패널 포함	91
18. 공장설립시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부담 완화	93
19.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군사시설 보호 심의	97
20. 주유소 방화담 규제 개선	99
21. 산업단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승인제도 개선	102
22. 중소기업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104
23. 가락IC 통행료 유료화 폐지	106
24. 산업단지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108
25. 산업단지 주위 녹지의 진입도로 설치기준 완화	110
26. 서부산유통지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112
27. 산업단지조성사업 토지수용절차 개선	114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업인정 협의 프로세스 개선	116
29. 물양장 매립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승인	119
30.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방안 마련	121
31. 농공단지 입주기업대책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123
32.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지정 합리화	124
33.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최대대지규모 완화	125

1. 임의인증이지만 사실상 의무인증인 환경표지인증제도 개선	129
2. 단련용 구리합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유지	131
3. 각종 인증취득 시 규격별 중복인증 폐지	133

CONTENTS

4. 안전인증 심사기간 단축 및 정기검사 통합 운영	134
5. 중소기업 인증제도 창구 단일화	135
6.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방화문 등 소방용품)	136
7.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샌드위치 패널)	138
8. LED조명기구 전자파적합성평가 개선	140
9. HACCP 인증유효기간 확대 및 자동연장제도 도입	142
10.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제도 구분 요건 단순화	144
11. 유아용품 KC검사 비용 부담완화	145
12.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 및 보완기간 연장	146
13.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관련 인증 규정 마련	148
14. 가스농도 측정방식을 광산현장에 부합하도록 변경	149
15. 동일한 형태·기능의 광산업무 차량에 대한 검사기관 일원화	151
16.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최대안전경사각도 완화	153
17.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완화 및 시험방법 개선	155
18. 목재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 시험방법 이원화	158
19.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주기 완화	160
20.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선(성능점검)	161
2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선(유지관리자 선임)	163
22.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공인검사기관 업무 추가	165
23. 고압가스·LPG 공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166
24. 식품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횟수 경감	169
25. 위생용품 관리법 적용대상 기준 완화	172
26. 제주 석제품 전문기관검사 제외 요청	174

Part IV

신고·표시

177

1. 소비기한 표시제도 계도기간 부여	179
2.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 실효성 제고	182
3. 수입산 원료공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184
4. 일반식품 제형 범위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	186
5.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완화	188
6. 식품영업 관련 불필요한 신고절차 생략	191
7. 음식물류처리기 ‘부숙’과 ‘발효’ 용어 통일	193
8. 광물채광 부산물 반출 허가를 신고로 완화	195

1. 협동조합 공동사업 제한하는 '소비자 이익침해기준' 명확화	199
2. 낙찰하한율 도입 및 상향조정	201
3. 불합리한 예정가격 제도개선	204
4. MAS 2단계 경쟁기준 완화	207
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품목 수시추가 허용	210
6. 공통경비 증대시 MAS 등록제품 계약단가 일률조정	212
7. 가구류 MAS 계약단가 조정 관련 추가세부지침 개선	213
8. 조합 MAS계약 이행실적의 개별업체 이관	215
9.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항목 개선	217
10. MAS 조달등록 기준 완화	219
11. 다수공급자계약 조달 등록 소요기간 단축	221
12. 조합추천수의계약 명칭변경	222
13. 일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상향	224
14. 인증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중복부담 완화	225
15. 일률적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개선	227
16. 교통안전표지 직접생산확인 기준 현실화	230
17. 가드레일 직접생산제도 보완 및 완화	232
18.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잉제재 개선	233
19. 입찰참가 제한 이중제재 개선	236
20. 입찰담합 이중처벌 문제 개선	237
21. 공공기관 발주 시 제안규정 완화	239
22. 원부자재 결함시 감점 부과방법 개선	241
23.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입찰 제도 개선	243
24.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서류 간소화	245
2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무목표비율제도 개선	248
26. 복잡한 조달절차, 나라장터 물품등록 간소화	250
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개선	252
28. 자동제어 관련 공공조달 원가계산 자동화프로그램 개선	254
29. 콘크리트 제품 일괄발주 지양	256
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257
31. PIN-UP상(한국산업디자인협회) 신인도 가점 부활 요청	259
32. 소규모 생산 국내 주류 통신판매 허용(소규모주류제조업)	261
33. 자동차 정비 시 의뢰자 고지 대상에 자동차 재제조품 포함	263
34. 일정기간 경과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의 적용 제외	265
35. 대·중소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현실화	267
36. 중소기업도매물류센터 공동사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269

CONTENTS

Part VI

신산업

271

1. 규제 샌드박스로 법제화된 산업에 대한 책임보험료 부담 경감 273
2. 국내 드론 제조사 경쟁력 강화 위한 신제품 테스트 비행 특례 마련 275
3. 국내 드론제조사의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 확인 수수료 인하 277
4.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 279
5.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현대화 281
6.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 허가 요청 283
7. 서치펌(헤드헌팅업체)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285
8. P2E 게임 국내 서비스 허용 287
9.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289
10. 신개념 2단 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 검사 규제완화 291
11.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293
12. 원격의료 제도 개선 요청 294
13.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 완화 295

Part VII

창업·벤처

297

1.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299
2. 창업벤처기업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302
3. 신산업 진입규제 개혁, 성장동력 확보 304
4.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규제 형평 근거마련 305
5. 데이터산업 진흥 저해 법 규정 개선 307
6.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기업 업종 제한 완화 309
7. 여성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확대 조성 310
8. 창업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 311
9. 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부담 완화 313

Part VIII

통상·승계

315

1. 제재 국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 시 제재 문구 변경 필요 317
2. 병행수입제도 도입취지와 동떨어진 FTA 원산지 검증방식 319
3. 야생동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321
4.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 폐지 323
5.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보완 325

1. 주52시간제 유연화	329
2.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범위 최소화	331
3.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실화	333
4.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완화	335
5. 동일법인 내 여러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기능요원 배정 실시	337
6. 고용 현실 반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기간 제한 폐지	338
7. 근로자파견법 위반 행정처분 완화	341
8. 외국인근로자 연간 입국쿼터 폐지 및 기업별 고용한도 확대	343
9.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요건 완화	347
10.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가입 시 퇴직급여(연금) 설정 인정	350
11.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선	352
12. 외국인력 특정활동(E-7) 비자 임금요건 현실화 및 대상 확대	354
13. 외국인근로자 최초 입국 후 1년간 사용자 귀책 아닌 사업장변경 신청 금지	356
14. 100인 이상 사업장도 외국인 재입국특례취업대상기업 인정	360
1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절차 개선	362
16. 외국인근로자 취업기한 연장	363
17.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등의 사유 발생시 고용인원한도 완화	365
18. 수산물유통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업종 포함	366
19. 외국인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 규제 완화	368
20.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370
21. 폐기물재활용업 외국인 근로자 일반고용허가제 적용	373
22. 외국인근로자 관련 부처간 전산공유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375
23. 자료 공유 등 적극 행정 통해 외국인근로자 입국기간 단축	376
24. 광산 안전제원 필요인력 확보 위한 자격증 시험횟수 확대	378
25. 임산가공기능사 의무고용 규제 완화	379
26.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381
27. 자동차종합검사 검사원 (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383
28. 조선업 등 고용위기업종 4대보험 부담 완화	385
29. 선박수리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	387
30. 식품위생교육 자율화	389
31. 장애인 의무고용율 및 부담금 완화	391

CONTENTS

Part X

금융·세제

393

1.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평가 등급산정 개선 395
2. 법인 대표자의 전자적 보증 허용 397
3. 담보권 존속 기간 연장을 통한 동산금융 활성화 399
4. 회생신청 후 정상화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제한 완화 401
5. 협동화자금 제출서류(표준재무제표) 기준 개선 402
6.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 수수료 인하 404
7. 인천 재활용업체의 화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407
8.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징수주체 변경 409
9. 중소농약상과 농협 간 차별적 세제운영 시정 410
10. 상조업체의 선수금보전 기준을 개별가입건에서 회사전체로 확대 412
11. 상조업에 대한 방문판매업 및 할부거래법상 이중신고규정 개선 414
12. 대형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규제 완화 재검토 416
13. 뿌리산업 대상 신용평가 시 기술력 등 종합적 판단 요청 417

Part XI

정책일반

419

1.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 완화 421
2.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제도 폐지 423
3. 승강기 관련 업무 산업담당 부처로 이관 426
4.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규제 개선 427
5. 대두 수입물량공급제한 완화 429
6. 대두포장규격 소포장으로 개선 431
7.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활용 요청 432
8.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영역 규제 완화 434
9.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설업 등록 가능토록 허용 436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확대 438
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제도 신청절차 간소화 440
12.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개정(1인 사업체 대리인 자격 완화) 442
13.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443
14.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부품대금 5% 인하 관행 개선 445
15. 재활용 집계차량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 447

16.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지원사업 개선(지원대상 확대)	449
17. 전남서부수퍼마켓 공동물류센터 근저당 해제	451
18. 중소기업협동조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453
19.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탈부착 권한 부여	455
20. R&D 신청제한 예외조항 신설	457
21.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행 절차 및 점검완화	458
22.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459
23. 중소유통물류센터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461
24. 건설업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이행력 제고	462
25. 약자지원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	464
26.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466
27. 제주도 대·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68
28.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절차 개선	471
29. 대기업의 무차별적 홍보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완화	473



II. 환경

1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톤 → 1톤)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1)

현행 우리나라의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질의 특성과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1톤 이상이라 규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죠.

대량 사용되는 물질일수록 해외에 시험자료가 충분하지만, 1톤 미만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해외에도 시험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험자료를 생산해야 하는데, **최소 7~9종의 시험자료 생산에 드는 비용이 1~3천만원 정도, 시간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시험기관들이 한 업체가 요청한 자료들을 동시에 생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자료가 생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면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업성검토를 위해 양산에 준하는 규모의 생산이 필요합니다. 즉, **신규상품의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물질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인 지라, **차라리 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신규화학물질이란 개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규'와는 달라 골치가 아픕니다.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받으려면 1992년 이전에 유통·사용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필요한데, 이 기록은 대기업조차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계는 말할 것도 없죠.

환경과 안전이 중요하지만, **0.1톤~1톤 가량 제조·수입되는 신규물질들을 전부 등록해야 하는 현 규제**는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염안료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화학물질은 강하게 규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을 산업용으로 소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규제 수준과 동일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죠.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대신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관리 공백은 별도의 방안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 염료안료 제조업체, 매출액 200억, 종업원 53명, 경기 안산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저희는 인조대리석과 접착제 등을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제품 특성상 여러 화학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슴기 살균제 등 과거 화학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화평법의 취지 자체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 기존 국내에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화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모든 업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그 비용과 시간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업들이야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은 입장에서는 비용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 매우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물론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발생 가능한 원료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위험하지도 않은 원료에 대해서 추가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원가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게 없습니다.

위험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원료들에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혹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굳이 추가 시험을 진행하지 않게 하는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시험 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접착제 및 인조대리석 제조업체, 매출액 17억, 종업원 9명, 경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2019.1월,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 신고·등록의무 부여

< 관련 법률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 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도입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까지 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화평법의 모태이며, 가장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체제로 평가되는 EU REACH에서도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톤으로 규정

<국외 주요국가 화학물질 등록기준>

구분	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
신규물질	0.1톤	1톤	톤 수 무관	1톤	1톤
기존물질	1톤	1톤	X	X	X

* 10톤 이하 소량등록으로 진행되며, 톤수 무관하게 유해성자료 제출의무 없음

**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전국 배출량 기준('17년시행)

*** 1톤 이하 소량 신규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 3종 → 없음('21. 1월 시행)

- 개별기업이 0.1톤~1톤 범위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 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천 7백만 원으로,
 - 현재 매년 1천 5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되고 있으며, 이중 약 20%인 연간 300종의 물질이 0.1톤~1톤 범위로 등록된다고 할 때, 산업계가 부담해야할 시험비용은 연간 약 83억에 달함

* 출처 : 국내외 주요 화학규제 비교분석 및 규제합리화 방안연구(국가정책지원센터, 2020. 4월)

- 이에 따라, 기업이 물질등록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화학물질 개발을 회피하거나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하여 신규개발 원재료 및 소재의 시장 상용화가 지연되는 등 문제 발생
- 현재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는 해외구매보다 국내 직접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GLP(환경부 지정 우수시험기관) 의뢰 시 약 3~4개월 기간 소요됨에 따라 신규물질 등록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 * 기존물질(1000톤 이상 '21년 말까지 등록)로 인한 시험기관 물량초과로 추가로 4~5개월 지연
- 또한, 물질의 사용용도(소비자, 제품용)가 달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물질이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했고, 화평법 이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했다고 주장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상향에 반대 입장 고수
 - 그러나 '19년 1월부터 모든 살생물물질은 양에 상관없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고,
 - 종전 유해법 시행 당시와 달리 등록대상이 510종에서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단순비교 불가
- 따라서, 국내 화학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보완제도 운영 필요

■ 개선방안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0.1톤 → 1톤으로 상향
 - 다만, 0.1톤~1톤 범위는 EU와 같이 신고제도* 확대·운영
 - 기업에서 제출한 분류표시 정보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요구
 - * EU 신고제도(CLP) 도입 시 유해성확인을 위한 정보(분류·표시) 확보를 하면서도 기업 부담 최소화 가능
- 산업용/소비자용 용도에 따른 물질등록 차등 적용
 -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은 소비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유해성 자료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 관련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물용해도 3) 녹는점/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2) 이분해성

2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한하는 포장재 개정법안 철회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1)

유리병은 100% 재활용 원자재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포장재입니다. 재활용사업자로부터 파쇄된 원자재를 납품받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유리병 생산의 대부분은 소주병, 맥주병으로서 재활용 원자재도 녹색, 갈색, 그리고 여러 색이 혼합된 기타 색상으로 나누어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타 색상 자재는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색깔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타 색상 원자재가 들어가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색상으로 포장재 재활용의 용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시 재활용 부과금을 할증하는 등의 조치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 (2)

환경부는 현재 법안 적용을 위한 포장재 경량화 연구용역 추진 증으로, 포장재 무게와 만수(滿水) 용량만을 고려한 함수가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재의 경우 제품의 특성, 제조공정, 유통환경, 포장재 형태 및 구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여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습니다. 동일 재질이라도 보관조건별 두께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고, 제품특성에 따라 생산조건(열처리 등)이 다르고, 업체별 생산지 차이로 인한 유통경로가 달라 포장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 없이 연구용역 완료 단계까지 와왔습니다. 식품포장은 위생 및 안전과 직결됩니다. 위 내용들이 고려되지 않고 경량화지수가 도입되면, 품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조설비 변경 및 추가포장, 강화된 유통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오히려 포장폐기물 증가 및 산업계 비용 부담을 야기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는 포장재 재활용 의무생산자에 대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규정
 -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평가 실시
- 환경부는 기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1.12월 국회에 제출

기준	개정안
재질·구조·재활용용이성	재질·구조·재활용용이성·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 (문제점①) 포장폐기물 급증 원인 및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 부재
 - EPR 외 사업자(택배회사, 음식점 등) 대비 EPR 사업자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발생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근거 부족
 - 본 개정안의 규제영향 분석서에도 산업·업종·제품별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에 관한 데이터는 부재
 - * 전과정평가(LAC)의 관점에서 플라스틱포장재와 알루미늄, 종이 등 대체 포장재의 환경영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플라스틱포장재의 환경부하가 오히려 적다는 연구결과 존재
- (문제점②)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직접적·일률적 규제
 - 포장재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제품군 및 제품별로 특성, 재질 구조 등 상이
→ 직접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며 기업활동 저해
 - 포장재의 색상, 두께, 재질 등의 기준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시키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며, 포장재의 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음
- (문제점③) 소비자 안전 위협 및 통상마찰 우려
 - 두께·색상 기준 등을 포함한 일률적 포장재 규제 도입 시, 제품(식품, 화장품 등) 변질 및 훼손되어 소비자 안전 위협 우려
 - 해외 사례와 비교 시 이번 포장재 관련 규제의 수준은 과도하며,
 - 국내에 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도 국내 포장재 환경규제를 이행해야 하므로, 무역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개선방안

- ① 개정법안 철회
 -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두께와 폐기물 발생관계에 대한 분석 필요
 - 신설된 「제9조의5」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비율 설정될 시 플라스틱을 타 재질로 변경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계 부담 가중 우려
- ② 총량적 규제, 자율규제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하는 대안 검토
 - 경량화 플라스틱 사용, 자율 저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③ EPR 부담금 현실화, 화학적 재활용 시스템의 조속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p>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p> <p>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현장의 목소리

LED조명이 많이 버려지니까 형광등처럼 똑같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해서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건, 의도는 좋지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LED조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판형 LED조명의 회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예요. 왜냐하면 평판형 LED조명에 붙어있는 고철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미 중간에서 고철업체에 다 갖다 팔기 때문이에요. 평판형 LED조명으로 회수가 안 돼요. 그 말은 재활용 의무율 15.7% 중에서 2.5% 정도를 제외하고 13.2%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과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평판형 LED조명의 회수율은 의무율에 못 미치고, 결국은 생산업체들이 부과금으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생산업체 입장에서선 준조세가 늘어난 것과 같아요. 백 번 양보해서 재활용을 촉진한다면, 현실적으로 회수율이 높은 LED조명 전구형, 직관형 제품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다 LED조명의 재활용 의무율도 단순히 형광등 재활용 의무율을 인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 전등기구 및 LED제품 제조 관련 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LED조명에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고, 미충족 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현재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은 15.7%로 산정되었으나, 해당 기준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생산자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평판형 LED조명은 시범사업에서 회수율이 2.5%에 불과한 상황으로, 재활용 의무율을 지킬 수 없는 생산업체들은 부과금을 지불해야 함
- LED조명은 형광등과 비교해 생산 난이도가 쉬워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했고 저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도 심화된 상황
 - 여기에 분담금 납부까지 이뤄지면 업계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분담금 현황〉

- 형광등 : 143원/kg
- LED조명 : ① 전구형 1,100원/kg, ② 직관형 900원/kg, ③ 평판형 600원/kg

* 분담금 : 전년도 실적에 기준으로 사전에 재활용 비율을 관리기관(조합 등)에 제출하여 관리하는 비용

- 한편, EPR 분담금 부담주체인 LED조명 생산업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에도 협의에 충분히 관여되지 못한 상황

■ 개선방안

-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타당성 재검토 및 생산업계와 재협의
 - 간담회·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기회 마련
 - * (안건1) 회수한 품목을 어디까지 처리해야 재활용 의무이행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안건2) 재활용 회수업무를 생산자 협·단체가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안건3) 부품(고철 등) 판매를 통한 수입으로 분담금 처리 가능한지 여부
 -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대상품목 합리화(평판형 제외)
 - * 평판형의 경우 회수율이 2.5%에 불과
 - ** (참고) 미국 미네소타, 콜로라도 주에서 LED제품 내 회로기판을 전자폐기물로 분류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시행일 2023.1.1)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4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건의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환경부가 얼마 전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7개 법률과 10개의 인허가 및 신고를 합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요.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많아서 비용이나 책겨야 할 것도 꽤 됩니다. **인허가 등록을 할 때 원래는 저희가 작성해도 됐지만 이젠 외부 대행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알맞은 통합환경관리인을 채용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수질이나 대기 등의 배출시설에 자가측정이 의무화되고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졌습니다.

-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는 배출시설 관리 범위를 각 오염 매체에서 사업장 전체로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17년 1월 ~ '21년 1월까지 업종별 순차적용)

- 총 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 통합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인허가등록, 환경기술인의 자격, 배출시설 자가측정 등 실무에 변동 발생

<실무 변경사항>

인허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작성 또는 대행업체 의뢰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대행업체 의뢰만 가능·주기적인 허가증 검토 및 보완(5~8년) (작성 내용의 전문성 및 범위 확장으로 업체 자체 작성 불가능)
환경 기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 종별로 환경기술인을 선임 ■ 수질 및 대기 2종 : 수질 및 대기 산업기사 1인 이상 (타 의무고용직 겸임불가규정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환경 총괄관리인·통합환경 관리인 선임 ■ 통합환경관리인 :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 (타 의무고용직과 불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대상 한정적, 대기배출시설만 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 전체 (수질, 대기, 악취 등)에 자가측정 의무 부여 ■ 반기 1년, 연 1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보고서 제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보고서 제출(환경부)

- (문제점1) 외부대행업체 의뢰 → 고액 비용부담 발생
- (문제점2)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요건 때문에 필요인력 채용에 애로 발생

■ 개선방안

- 초기 통합허가 등록 관련 비용 지원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관련 유예기간 부여

■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약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허가)

-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1)

상전벽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요즘입니다. 처음 아스콘공장들이 들어선 곳 주변은 허허벌판이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모이니 어느새 공장 주변까지 주거지가 들어서게 된 거죠.

몇 십년 전에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이 존재하는 줄이나 알았겠어요? 그냥 먼지, 황산화물 등 몇 가지 측정하고, 신고해서 공장 지었죠. 그런데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때문에 **이제는 8개나 되는 새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아스콘 원료인 아스팔트 자체가 석유 찌꺼기이기에 이미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배출기준 허용치를 넘는 원료를 들여와서 배합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아니요. **한 업체는 170억 넘게 들여 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폐쇄됐어요.** 건강, 환경 매우 중요한 것 알아요. 그런데 현재 기술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해 주어야죠.

- 아스콘 관련 연합회, 회원 517개사

현장의 목소리 (2)

아스콘은 원유의 부산물인 아스팔트와 골재, 잔골재 등에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를 가열 혼합하여 생산되는 혼합물로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줄임말입니다.

과거 90년대에는 아스콘사업장은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배출시설 설치신고만으로 공장을 설립,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콘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로 먼지, SOx, NOx 등을 신고하고, **신고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자가측정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020년도에 환경조사를 한 결과 아스콘에서 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도 바뀌어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시에는 시설을 보강하고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 및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6개월 내 조업정지 명령과 공장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방지시설로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저감합니까? 적절한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라도 단속을 유예해야 합니다.

-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 (3)

처음에 공장 설립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관리지역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다 보니 공장을 설립하기엔 최적의 입지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이 '15년 12월에 새로 생기고 국토계획법 시행령까지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해있는 아스콘 제조시설들이 다 불법 운영시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환경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니까 법령을 개정한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미 큰돈 들여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중소 아스콘 제조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폐업하거나 이전하라는 말인데, 그렇다고 나라에서 폐업이나 이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고스란히 그 비용부담을 우리 기업들이 떠안으라는 건가요?

'20년부터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맞춰 업체들이 시설을 개조하여 대기질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스콘 제조업체, 매출액 71억, 종업원 15명, 충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아스콘 제품은 저장이 불가한 반제품으로 생산 후 9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만 사용가능하여 필연적으로 아스콘업체는 도심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외곽에 분포하며, 전국 아스콘업체의 72.3%가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
 - * 계획관리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 그간 아스콘 제조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절차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
 - 2020년 7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이 새롭게 추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특정대기유해물질 허용기준							
벤젠 (ppm)	시아나화 수소 (ppm)	염화 비닐 (ppm)	페놀 및 그 화합물 (ppm)	포름 알데히드(p pm)	아세트 알데히드 (ppm)	염소 및 그 화합물 (ppm)	벤조a피렌 (ng/Sm ³)
0.1	0.05	0.1	0.2	0.08	0.01	0.4	10

- 아스콘의 주요원료인 아스팔트(AP)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 아스팔트(AP)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로 정유사에서 공급

- 문제는 현행 방지시설 기술로는 법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까지 저감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 (사례) 경기도 소재 A사는 175억을 투자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적용기준량을 초과한 특정유해물질 검출로 시설폐쇄
- 환경부는 이러한 허용기준까지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 기술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므로,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기준적용 유예 필요
- 한편, 전체 아스콘공장의 73%에 해당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장’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다시 말해, 방지시설 설치로 환경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여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공장이어도 무조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

■ 개선방안

-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및 상용화될 때까지 기존 아스콘 제조시설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단속 한시적 유예(환경부 연구용역 완료시까지)
 - (환경부) 기존 아스콘업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단속 유예
 - (국토부)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아스콘공장 입지제한 유예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 기존 아스콘 제조시설 대상 허가조건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적용 한시적 유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개정
 - 기존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설치허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적합한 방지시설이 개발되어 설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운영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라남도]

현장의 목소리

아스콘 제품은 골재와 아스팔트(AP)를 가열·혼합 생산하는 공정으로 정부(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시방지침에 따라 생산을 하고 있으며, 공장 설치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1991.2.2.) 당시 16개 이었으나, 1998.2.21.에 25개, 2006.1.1.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외 9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30% 이상 강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장들은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공장허가 취소,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스콘공장을 운영하는 61개 조합원사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새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변경 허가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2020. 7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부록 16-4 아스콘 제조시설」에 8개 항목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이므로 공문을 보내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해온 우리 조합원사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하려 해도**, 지자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은 입지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변경허가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에 따라 **입지가 불가한 해당시설을 「폐쇄명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시행된 (구)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기존 용도가 확인되면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07.12.31.] 부칙 제5조에 기 설치된 적법한 시설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정대기유해 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입지제한 규정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적법하게 운영해온 아스콘공장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지가 금지된 불법시설로 보고 폐쇄 조치하려는 지자체의 규제 때문에 무허가(무신고) 공장으로 언제 폐쇄(가동중지) 될지 몰라 하루하루 가슴이 조여옵니다.

-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아스콘 공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 대부분 국토계획법령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공장을 가동해왔음
 - 당시에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개 항목만 신고
-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1996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공장별로 자가측정 실시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 2006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변경허가를 받고, 기존 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따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됨
- 현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대부분의 기존의 아스콘 공장들은 입지제한(건축불가) 처분을 받고 있음
 - 초기에는 적법설치, 이후 법개정으로 인해 같은 용도지역인데도 배출시설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불법시설로 간주되는 상황
 -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6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의 건축제한 규정 관련, 동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장 폐쇄명령은 과한 처분임
 - * 법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이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가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이는 기존의 적법한 공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건축제한 규정만을 적용한 불법 처분은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전가
-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등)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07.12.31.) 부칙 제5조도 참고 필요

■ 개선방안

- 계획관리지역 내 운영중인 아스콘 공장이 종전 용도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변경허가(신고수리)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특례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경과조치 규정 적용

7 대기 배출시설 설비 증설을 제한하는 김포시 조례 개정

[국토교통부, 환경부, 김포시]

현장의 목소리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어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주변의 땅을 매입하여 부지는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었던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되어 환경규제 때문에 주조, 샌딩, 코팅 등 대기 배출 시설이 있는 설비는 전혀 증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포시 담당자로부터 산업단지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회사를 이전하기에는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금속주방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며,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투자를 해서 생산능력을 확충하거나 개선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업체가 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데 아예 설비 증설 허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예외를 인정해 주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금속주방용기 제조업체, 매출액 280억, 종업원 55명, 경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업체의 기존 공장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대기 배출시설(집진기)이 있는 설비의 증설 등 신고에 제한이 있어, 동종사업장은 물론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모든 사업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체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업종(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에 해당

개선방안

- 기존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었던 사업장이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경우 공장 증설 또는 신규 건축에 대한 업종 제한 및 규제 예외 인정
- 대기환경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의 기준에 맞는 환경시설 능력을 갖춘 경우, 업체의 공장 증설 또는 신규 건축 허용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폐기물재활용업자 A는 2020년 7월 1일에 재활용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차로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2021년 5월 1일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적발되어, 처분 합산에 따라 2차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건의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처분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하위규정에 따라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처리 과정중 동일한 분야의 위반행위가 아닌 다른 분야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누적하여 행정처분을 받음
- 위반행위 및 횡수별로 처분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 규제임

■ 개선방안

- 폐기물재활용업자 위반행위별 횡수 합산 행정처분 규제완화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기)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횡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9 중소기업자의 자원순환 이행기준 개선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20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배출실적, 목표 설정, 이행 계획 제출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계획서, 실적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양식이 많고 용어가 어려우며 중복 기재 사항이 많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순환이용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과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최종처분량) 모두 목표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처분율을 감소시키려면 소각, 중화 등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하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처분량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폐기물 최종 처리업자가 아닌 제조업체에서 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접착제 제조업체, 매출액 470억, 종업원 90명, 경기 양주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자원순환기본 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 폐기물 발생량 감소, 자원순환 이용률 제고 및 최종처분율 감소 등의 목표가 새롭게 부여
- 특히, 동 법령과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13개 제조업종 중소기업은 순환이용률과 최종처분율 목표라는 달성 기준 이행 의무가 발생
 - 이와 관련, 현장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목표 관리 계획, 실적 보고 등에 대한 복잡한 절차 및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 호소
- 아울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배출만 하는 제조업자에게 순환이용률에 더하여 최종처분율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함
 -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이용 또는 재활용 비율인 순환 이용률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나,
 - 폐기물 최종 처분은 대부분 전문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최종처분율을 제조업자가 일일이 조정하는 것에 애로 발생
 - 대다수 중소 제조업자는 최종처분율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처리업자와 거래해야만 기준 충족 가능

■ 개선방안

- 자원순환 성과관리 관련 용어 순화 및 서류, 절차 간소화
- 최종처분율 목표는 제조업자(배출사업자)가 아닌 폐기물 최종처리 사업장에 부과

■ 관련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 자원순환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7항, 제8항

제13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처리 현황, 순환 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재료·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자원순환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재활용(스티로폼)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제품원료, 포장재 생산업체들에는 재활용(스티로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당한 제품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 농·수·축산물 판매업체들에게만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자원재활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연간 매출이 10억 원 이상, 포장재를 800kg 이상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재활용 부과금 의무 납부자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4
- 현재 재활용 부과금 납부 체계는 스티로폼 생산업체에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농·수·축산물)들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고 있어 불합리함
-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계약) 없는 공박스에 제품을 담아 생산하였다고 전액 부과시키는 현행 제도는 부당함

개선방안

- 재활용(스티로폼) 부과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등 법령 개정 요망
 - 법적 의무업체(원료, 포장재 생산)와 농·수·축산물 판매업체들 포함하여 일정 기준에 의거 재활용 부담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법령 개정 필요
 - * 예) 원료 생산업체 60%, 포장재 생산업체 30%, 농수축산물 판매업체 10%

관련법령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현실화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공공건설공사를 맡을 때에는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벽돌이나 도로경계석 같은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은 순환골재가 50%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현재 생산 중인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기준입니다.** 순환골재의 수급도 부족할뿐더러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건드리고자 하는 바는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에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30% 이상 정도로 낮추고, 의무사용에서 임의사용으로 제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원 재순환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현장에서의 재활용제품 생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건설폐기물법」 제38조 제3항 근거, 공공건설공사 대상으로 40%(지자체공사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양) 이상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의무 사용하는 제도를 지속 확대(50%까지) 추진 중
- 지방 공공건설공사(지자체,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발주)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을 의무 사용(서울, 강원)

- 예 시 (서울)
- (용도)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을 시설물 또는 구조물 설치·보수 활용
 - (사용량) 35% 이상(2014년부터)
 - (품질) 신제품인증, KS인증, 환경표지인증을 충족

-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은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등으로 ①순환골재(KS인증 충족) 50% 이상 포함(단,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 고시하는 경우 50% 미만도 가능), ②GR인증 또는 환경표지인증 획득 필요하나
 - 중소기업에게는 콘크리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의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콘크리트 중소제조업체 70% 이상이 “재활용제품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감량 필요”라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환 골재 의무사용량” 질문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30% 이상’이라고 응답함

* 콘크리트 제조 중소기업체 305개사 대상(’21.10)

제 품 군	감량 필요	적 정	증량 필요
벽돌 및 속빈블록, 보차도용 블록, 경계블록, 호안 및 옹벽블록	72.4%	24.2%	3.4%
조립식 철근 암거블록, 맨홀블록	78.7%	19.5%	1.9%

■ 개선방안

- 콘크리트 재활용제품 생산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현실화
 - (현행) 50% 이상 → (개선) 30% 이상
- 콘크리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이 아닌 임의사용으로 제도 완화
- 순환골재 생산업체 품질인증 의무화(용도별)

■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
-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장의 목소리

재활용업자가 재활용처리 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악취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같은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경고 처분도 받고 있습니다.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 하나로 두 번의 제재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각각 처분 이루어짐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 및 별표 5의4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그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개별 오염매체관리법에 따름
- 위반 시 개별법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이중 제재를 받음

■ 개선방안

-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한 이중규제처분 개선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2(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생)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법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3 유해물질 관련 중복규제 철폐 등 체계 개선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납 같은 물질은 화학사고의 우려가 거의 없는데도, 화평법상의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해요. 납으로 된 장신구를 삼키고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실수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은 실제 그 물질의 위해성과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고가 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규제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 취급 과정에서의 영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이미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규제가 꼭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만들 때에는 실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이 가능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리도 어려운 규제를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일 뿐입니다.

- 비철금속 전문제조업체, 매출액 5,900억, 종업원 405명, 경기 시흥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관리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의 물질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업계 애로 가중
- 납(Pb)은 액체·기체 상태일 때만 위해성이 있을 뿐, 가공 과정 중 누출이 되더라도 상온에서는 급속히 고체화되어 화학사고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0.009% 초과는 제한물질, 0.3% 이상은 유독물질로 엄격히 관리 중
 - 더불어 그간 취급 과정에서의 매체별 영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었으나, 「화평법」에 의해 또다시 규제를 받게 되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 과거 해외에서 어린이가 납 장신구를 삼켜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인해 장신구로서 납 사용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가공과정의 사고가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데도 제조기업이 책임부담을 안는 것은 과도함

■ 개선방안

- 납(Pb)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서 규제 불필요
- 환경 관련 법률 등의 규제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4 비금속광산 갱내수 규제 예외물질로 규정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석회석을 채광하는 회사입니다. 한 5~6년 전쯤에 **저희 광산에서 배출되는 물을 폐수로 규정한** 환경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광산의 갱내수가 채광 작업 공정에서 발생된 탁수 외에도 갱내로 유입되는 지표수나 빗물이 토사 등 석회석 공정과 무관하게 발생된 오염물질과 함께 갱도로 유입되어 오염수준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산들은 비금속광산으로, 그 갱내수의 오염수준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유한 ○○지역 광산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배출 부과금을 부과받지 않고 있고, □□지역 광산은 2020년을 마지막으로 배출부과금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표수나 빗물이 갱내로 유입되면 갱내 침수에 의한 시설피해와 종업원의 사고 우려가 있어 부득이 배수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입수까지 폐수로 단정 짓는다면 도로 터널에서 배수로를 따라 나오는 물 또한 폐수로 단정지어야 합니다.

광산 갱내수를 폐수로 규정하여 배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또한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석회석 제조업체 A사, ○○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업체들은 갱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채광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를 갱 밖으로 배출하고 있음
 - 갱내수란 갱구를 통해 유출되는 물을 의미하며, 채광 공정에서 발생된 탁수 뿐만 아니라 갱내로 유입되는 지하수나 빗물 등으로 구성
- 광산은 금속광산, 비금속광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속광산의 경우 채광 중 폐광된 금속광산(금, 은, 동, 연, 아연, 중석 등)의 갱내수나 광물찌꺼기 적치장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산성광산배수(AMD) 발생
 - 반면, 비금속광산의 경우 대부분 부유물질에 의한 혼탁수가 발생하지만, 농업 용수로 사용가능한 수준임
- 실제로 상기 업체 보유 비금속광산 갱내수의 경우에도 수질기준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질소 외에는 모두 충족할 정도로 오염 수준이 심각하지 않음

< 상기 사례 A사의 ○○지역 광산 수질시험성적서 >

구분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SS (부유물질) (mg/L)	T-N (총질소) (mg/L)	T-P (총인) (mg/L)
방류수질기준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검출량	1.9	4.6	28.942	0.04

* 주: 방류수질기준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자료: A사 수질시험성적서(2019)

- 따라서 비금속광산의 갱내수까지도 폐수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

■ 개선방안

- 비금속광산 갱내수의 특성을 감안하여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비금속광산 갱내수를 규제 예외 물질로 규정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하수도법 시행규칙

15 공장설치시기에 따라 차별적인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완화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석회 공정에서는 온실가스와 함께 질소산화물이 배출됩니다. 온실가스와는 달리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은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소산화물은 줄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공장 설치 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007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10ppm 이하이고, 2007년 2월~2014년에 설치된 시설은 170ppm이며 2015년 이후에 설치된 공장은 80ppm입니다. ppm 허용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한 겁니다. 이 허용치를 넘으면 해당 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5년 이후에 설치된 시설을 가진 업체에게 가혹한 규제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규제 기준을 분리시키는 경우에는 우리 업체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에 바뀌야 하는데, 업계 목소리 반영 없이 기준을 3개로 나누었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회업종의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을 80ppm으로 규제하는 건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낮춘 것을 다시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 기준이라도 유지해야 저희 업계는 살 것입니다.

정부는 질소산화물도 5년마다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80ppm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2015년 이후 증설된 업체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5년 이후 설치된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설치 시기에 따른 질소산화물 규제 차등을 조금 줄여주시면 저희 업계는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석회 제조업체, 매출액 770억, 종업원 133명, 서울(본사)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석회업종의 경우 공장 가동 시 질소산화물(미세먼지)이 생성되고 있고, 질소산화물 저감기술(SCR)을 통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음
 - 하지만, SCR 설치 및 유지비용 과도하여, 석회업종 중소기업들은 저감이 쉽지 않음
- 특히 석회업종 제조공장 설치 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이 크게 줄어 2015년 이후 신형시설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2007년 이전 설치 시설: 210ppm, 2007.2~2014년 설치 시설: 170ppm, 2015년 이후 설치 시설: 80ppm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공해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형 시설 보유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이 제한

■ 개선방안

-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중 2015년 이후 설치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완화 또는 현행 유지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ppm)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3) 이하

현장의 목소리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석회업종은 산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석회업종의 주요 생산품은 생석회와 경소 백운석인데, 생산과정에서 1톤 생산 시 온실가스가 1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시 **공정배출 비율 75%로 매우 높은 산업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여 근본적으로 **탄소포집(CCUS)을 도입해야 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없어** 대기업도 탄소포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회업종은 산업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생석회 등은 철강과 반도체에 필수적인 요소로, 만약 저희 산업이 무너진다면 몇 년 전 우리나라가 겪었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석회업종의 경우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무상할당을 통해 비용부담을 덜어왔으나, 2026년에 석회업종 유상할당을 확대할 경우 영세한 석회업종은 과도한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해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회업종 무상할당 유지를 통해 철강과 반도체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석회업종의 경우 제품 생산 시 감축이 불가한 공정배출과 연료배출이 전체 배출의 98% 차지
 - 산업계가 공정배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성로는 연료 전환도 불가한 상황
- 2050 탄소중립 시행에도 불구하고 석회업종은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실정임
 - 탄소포집(CCUS) 기술은 상용화돼 있지 않고, 중소기업은 자체개발 여력 또한 없음
- 한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15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유상할당 등을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가고 있음
 - * 1차('15~'17), 2차('18~'20), 3차('21~'25)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될 시, 배출 부과금으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 우려

■ 개선방안

- 향후, 석회업종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지속 유지
 - 2024년 8월, 제4차 할당계획(안) 결정 예정(2026년부터 적용)
- 감축이 불가능한 공정배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 유지
 - 3기 할당 시 공정배출 별도 할당계수 1.039 적용

■ 관련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②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 사업장은 1995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이 방지시설설치 면제를 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2020.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연1회 자가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의무화 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환경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약 2,300여평 부지의 협소한 장소에서 각종 생산설비를 최적 배치하여 매년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P.P 또는 P.E밴드(끈)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약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 국제경제가 침체되면서 원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요인으로 그렇지 않아도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설치비용 약 1억원)하거나, 아니면 개별배출구 마다 자가측정(연간 약 700만원)을 실시하도록 개정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P.P 또는 P.E밴드(끈) 생산 업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제는 현실성 있게 각종 환경규제를 정비하여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매년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종전대로 폐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포장끈 제조업체, 매출액 220억원, 종업원 42명, 경기 시흥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1회 자가측정 의무가 부과되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이에 중소기업 기업경영에 애로 가중
 - 국소배기장치 설치(설치비용 약 1억 원) 또는 개별배출구 마다 자가측정(연간 약 700만 원)등 비용 발생
 - 관련 기관에서 사업장 방문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추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 개선방안

-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연1회 자가측정 규정 삭제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52조 (별표 11) 비고. 2

비고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

정부는 한정된 하수처리시설을 감안하여 1일 일정량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폐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두부류의 경우 두부를 식히거나 담근 물에 대해서는 오염도가 크지 않아 폐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수질 오염에 영향이 큰 광유류(광물성 원료에서 얻어진 기름)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1일 20톤 이하의 폐수를 공공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폐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두부 제조업의 경우 공정상 폐수로 보지 아니하는 두부 식힌 물이나 담근 물 외에도 식용이 가능한 순물(두부를 누르면 나오는 물) 등 20t 이상의 물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폐수로 보고 있어 오염처리시설 설치에 더해 하수처리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1일 20톤 이하라는 기준이 지난 1996년 제정된 기준으로 지난 25년간 국내 하수처리 역량이 대폭 향상된 만큼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부제조시설 배출수는 오염도가 크지 않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과 같이 오염물질의 분해를 돕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부제조시설의 폐수 배출에 대한 이중 부담은 너무나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경기두부류및목류제조업협동조합 및
두부 제조업, 연매출 32억, 종업원 16명, 경기 고양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고 부족한 공공·개별 하수처리시설을 감안하여 1일 최대 0.1m³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 이와 관련,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두부류의 경우 두부를 식히거나 담근 물에 대해서는 오염도가 크지 않아 배출 폐수량 산정시 제외 중
- 또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①광물성 원료에서 얻어지는 기름과 같이 수질 오염에 영향이 큰 특정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며 ②폐수 배출량이 1일 20톤 이하인 사업장이 ③해당 폐수를 공공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 그런데, 두부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상 폐수로 보지 않는 두부를 식힌 물이나 담근 물 외에도 식용이 가능한 순물 등이 다량 발생하는데 이는 모두 폐수로 적용되어 대다수 사업장이 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이에, 1일 20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두부 제조업자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
- 이와 관련, ‘1일 20t’이라는 면제 기준이 1996.1월부터 25년간 동일하게 적용
 - 이는 산업발전에 따라 규모화 된 사업장의 증가는 물론 대폭 향상된 국내 하수처리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임
 - * 1일 500t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 ('91) 45개소 → ('18) 671개소
- 또한, 두부제조시설 배출수는 오염도가 낮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 같이 오염물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원수로 하수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대상 산정을 위한 폐수 배출량 기준과 관련하여,
 - (1안) 두부를 식히거나 담근 물을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시 제외하는 것처럼 두부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일괄하여 폐수량 산정에서 제외
 - (2안) 1일 최대 폐수량 기준을 20t에서 100t으로 상향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p>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p> <p>가. 생략</p> <p>2) 생략</p> <p>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p> <p>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p>
--

현장의 목소리

염색가공산업은 임가공 중심, 노동집약형 산업 구조로 매우 열악한 산업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동률이 매년 약 7%씩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환경 관련 법들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환경오염시설법(환통법) 모두 한꺼번에 만들어져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을 지우고 있죠.** 특히, 환통법에 따라 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염색업체들은 대부분 산업단지에 모여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등 환경오염 최소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환통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환경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지켜야 해 배출량이 증가하지도 않고요.**

우리 염색산업은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핵심산업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염색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고충을 고려해 환통법 적용대상을 축소해주셨으면 합니다.

- 염색가공업체, 매출액 40억, 종업원 65명, 대구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17년 환경오염 관리의 과학화·합리화를 목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이 시행되었으며, 염색업은 '24년까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염색업종 특성상 환경부 허가를 위한 비용부담이 과다함
 - 현재 염색가공업은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하며, 노동집약형 산업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환경 관련 규제 비용 증가와 더불어 환통법으로 인해 업체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 컨설팅을 받아야 함
- 환통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다른 환경법이 있어 오염물질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음

■ 개선방안

- 염색산업 환통법 적용대상, 수질/대기오염 2종 이상 사업장 → 1종 사업장 변경

■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 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장의 목소리

산업 활동을 하다보면 유해물질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오염토양은 기준치 이내로 정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염토양이 반출정화대상이면 토양정화업체의 정화시설에서 알맞게 정화되고, **반출정화대상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이 때 비용이나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건설폐토석으로 둔갑하여 불법으로 반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오염 확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생긴 오염토양이 건설 폐토석으로 둔갑하여 불법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토양 오염은 산업 활동 등으로 인해 유류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토양에 축적되어 생기는 오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오염이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정화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국내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 토양은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 처리
- 오염토양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반출정화대상일 경우 현장에서 반출하여 토양정화업체의 반입정화 시설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정화 처리됨
 - 건설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이 반출정화대상이 아닌 경우, 현장에서 토양정화(원위치정화)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재정 투입 및 공기 지연 등의 문제 발생
 -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이 건설폐토석으로 둔갑하여 불법 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오염 확산 및 피해 우려

■ 개선방안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6-260호)의 반출 정화기준 규제 완화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이 건설 폐토석으로 불법 반출되지 않도록 오염토양조사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

■ 관련법령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6-260호)

- 제3조(반출정화대상)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2.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3.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 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오염토양(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7.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8.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 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의 목소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상품목(49종)의 수입액 3억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 이상인 기업은 폐가전 회수·인계·재활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을 위해 전년도 매출 실적(대상품목의 총 무게)을 신고해야 하며, 해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품목별 재활용 비율에 대한 달성성과를 집계 제출해야 하고, 목표 미달 시 부담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특수 에어컨을 제조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품목의 형식, 구조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재활용 비율(에어컨의 경우 60%이상)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작년 7월에 특정업체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이에 대해 문의하니 개별업체가 부담해야 할 회수·재활용 비용의 1/3정도만 부담하면 되니, 공제조합에 가입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 제정의 취지는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인데, 전기전자제품 관련 공제조합 가입 후 제품의 실제 회수·재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제품 회수·재활용 현황, 업체별 부담금 부과내역·사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것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들에게 안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냉난방기기 제조업체, 매출액 288억, 종업원 48명, 인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나, 당사의 생산품인 에어컨은 가정용, 산업용, 특수용 등 다양한 에어컨이 존재함
 - 에어컨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품목의 형식,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활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60% 적용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또한, 제품 회수 및 재활용 비율 이행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며, 개별 업체의 공제조합 부담금에 대한 세부적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기보다는 재활용 관련 공제조합에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
 - 공제조합에서는 가입 부담금이 개별 업체 회수 및 부담금의 1/3이라는 안내만 할 뿐, 실제 부담금과 공제조합 가입에 대한 부담금 추산 등은 이뤄지지 않음

■ 개선방안

- 에어컨 종류별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자동차의 경우 폐차장 등의 재활용 처리 시설이 재활용 업무를 전담하듯이, 가전 제품도 전담 처리업체가 지정되어 업체의 회수품 및 재활용 물품을 처리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의 경우, 분담금 부과 내역 고지 및 재활용에 관한 공제조합의 운영 결산 등의 정보 공유

■ 관련법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현장의 목소리

우리 회사처럼 영업허가를 받은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6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매년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게 설치된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적절한 내구년도 등에 관계없이 매년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매우 큼니다. 매년 수십 종류의 요구 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여러 구매처 등에 전화해서 서류를 구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0~30개 항목에 대해 각각 2~3가지 이상 서류 준비 필요)

반면 다른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의 경우 각각 3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도 3년 주기 정도로 연장이 되면 중소기업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성접착제 제조업체, 매출액 68억, 종업원 14명, 경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매년 수수료 발생과 검사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에 상당한 행정부담이 발생
- 자격증을 갖춘 전담 기술인력을 채용해서 유지해야 하나, 소규모 영세업체로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어려움
- 매년 정기검사가 형식적인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영현실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주기 변경 필요

■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를 3년마다 실시
 - 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과 같이 3년마다 실시
 - 일정 년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기검사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제3호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단순한 행정착오를 한 중소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기회를 막아버리는 행정관행이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까?

중소제조업체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해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규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것을 모두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도 기존의 환경설비가 고장이 나서 기존의 것보다 용량이 큰 신규 환경설비로 교체했는데, 우리 회사는 사전에 이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승인 전 10여 일 간 가동하지 못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조달시장에서 이것이 감점사항이 되어 입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규정도 법 취지도 모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행정관행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구매시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보다는 행정지도·권고로 업체를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구제조업체, 매출액 120억, 종업원 45명, 인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체는 환경규제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 (사례) 공장 가동 중 환경설비 고장 발생 시 교체하려는 신규 환경설비가 기존 설비보다 용량이 큰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변경 신고 후 가동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일 이상이 소요(공장 가동은 불허용)
- 단순한 행정착오 또는 사전 지식이 없어 납기일 준수를 위해 사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 지도나 권고없이 경고(과태료 부과)가 부과되어 관내 중소기업체의 어려움 가중

■ 개선방안

-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안내 등으로 행정처리 요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등을 참고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위주 행정 제재 지양

■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의 목소리

경기도가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염색산업단지의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적용하는 색도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염색산업단지는 환경부로부터 100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경기도가 50도까지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산업단지는 70~80도를 맞추고 있는데, 더 낮추는 것은 시설을 대폭 개선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경기북부의 관광자원인 한탄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설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100도 기준 이상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나 하수처리시설부터 색도 기준을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인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색도 기준조차 없어 관리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염색산업단지, 포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2018년 양주, 포천, 동두천을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로 지정하여 전략산업으로 섬유산업을 육성 중
 - 섬유산업의 필수공정인 염색업에 종사하는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은 효율적인 염색용수 확보 및 폐수처리를 위해 집단화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구축·운영
-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항목별(수소이온농도, 페놀, 카드뮴 함유량, 색도 등)로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일부 발췌 >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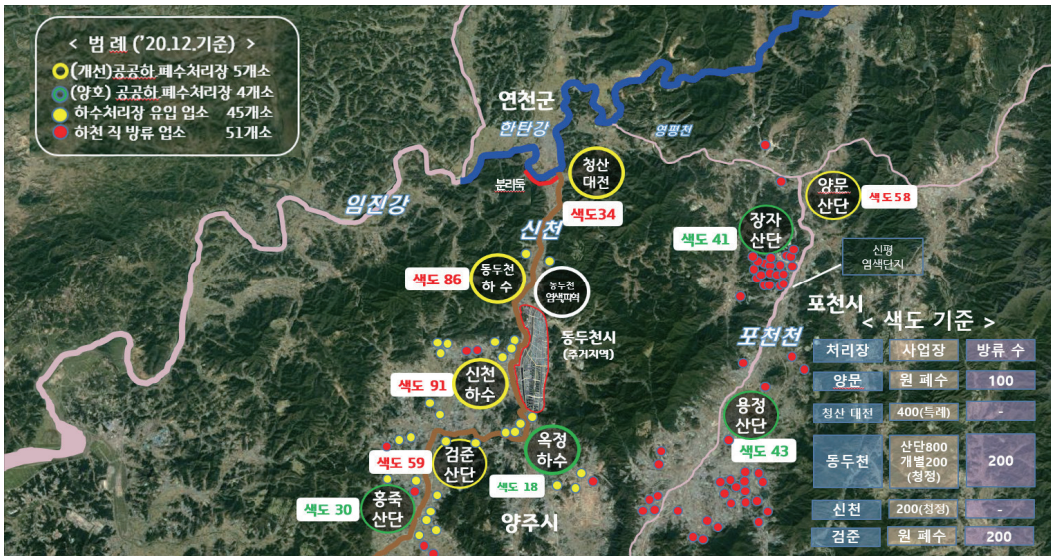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	⋮	⋮	⋮

- 또한, 필요한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등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각기 다른 기준 적용 중
 - 경기북부 섬유·염색 산업단지별로 '색도 기준' 등을 연천 청산대전산단 100도, 포천 장자산단 100도, 포천 양문산단 100도, 신평 집적화단지 200도, 포천시 하수처리시설 400도 등으로 적용
 - * 색도 : 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 색도 표준액 1ml를 물 1l로 한 경우에 나타나는 색이 1도
- 경기도는 '20.6월 환경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과 '한탄강 색도 개선 위한 협약' 체결, '21.5월 한탄강 수질개선·복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탄강 물 생태계 개선에 노력 중
 - 그러나 연구용역을 통해 방류수 색도 기준을 50으로 설정할 계획,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색도 고시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
- 색도 기준은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섬유제품 제조시설, 인쇄업 등에만 적용하므로 환경부보다 강화된 색도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경기북부 섬유염색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폭 개선해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환경부조차도 “정화시설 개선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합리적인 색도 기준이 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21.9.13 언론보도, 한탄강 수질개선 효과 보려면 방류수 '색도 50'까지 낮춰야)

< 한탄강 및 신천 수계 색도 및 공공처리장 현황('20. 12) >



* 자료 : 경기도 보도자료('21. 5. 10)

■ 개선방안

- 색도 기준 100도 이상을 적용받는 공공폐수처리시설부터 정화시설 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색도 기준을 낮출 필요
- 환경부보다 과도한 기준 강화 지양, 합리적인 기준 수립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2조(배출허용기준)

-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6조의2

제16조의2(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생분해성 1회용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과 다르게 친환경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원활용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집단급식소나 대규모점포에서도 무상제공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생분해성 수지제품 중 1회용 플라스틱이 제외되면서** 관련된 인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장점을 어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산업 육성 부분에 생분해 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던 만큼, **생분해성 1회용 플라스틱이 환경표지 인증 대상으로 복귀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생분해성 1회용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환경 친화적
 -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자원활용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상승에 따른 제조업체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점포에서도 무상제공 되고 있음
 - * (합성수지 투입 kg당)건축용 3.8원 → 75원, 기타 7.6원 → 150원(약 20배)
 - ** 2021. 10월말 기준 199개 기업, 417개 기본제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인증 획득
- (21. 12월) 환경부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생분해성 1회용품이 제외되어, 친환경적인 제품 특성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는 상황
 - 친환경 특성을 드러내는 인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산업 경쟁력의 약화 우려

■ 개선방안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중 EL724 생분해성수지 제품 (EL724:2022)에 생분해성 1회용 플라스틱 추가
 -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시스템 마련을 명시한 만큼, 관련 제도 조속 반영

〈 환경표지 인증기준 “생분해성 수지제품” 개정안〉

현행	개정안
<p>1. 적용 범위</p> <p>이 기준은 단일 재질 또는 복수 재질의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성형 제조한 생분해성수지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으로서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 원료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어업용 제품과 별도의 인증기준이 정해져 있는 제품은 제외한다.</p>	<p>1. 적용 범위</p> <p>이 기준은 단일 재질 또는 복수 재질의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성형 제조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 또는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이하, “제품”이라 한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원료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어업용 제품과 별도의 인증기준이 정해져 있는 제품은 제외한다.</p>

현장의 목소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면 화관법에 따라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뒤야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인력이라는 게 중소기업으로서는 알맞은 인력을 확보하기에 난감합니다.**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술인력 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상당히 유사하여 굳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설사 기술인력을 고용하더라도 퇴사하는 이들이 많아서 대표가 직접 자격증을 얻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별표6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1인 이상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제외
-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해당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확보와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높은 책임을 지면서도 기술인력보다 그 자격을 폭넓게 인정
 - ‘기술인력’ 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까지 인정
- ‘기술인력’의 기능과 역할이 불명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사하기에 불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 젊은 기술인력을 고용해도 퇴사율이 높아 장년층인 기업대표가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 상황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개정으로 종업원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교육이수로 기술인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30명 이상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기에 형평성에 어긋남
 - 교육이수자에 한해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유효기한인 '23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 기술인력 관련 중소기업 기준 확대(종업원 수 30명 미만 → 50명 미만)
- 한시적 인정기간('23.12.31) 삭제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별표6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 제3항 관련)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III. 입지 · 건축

1 미음산업단지 내 창고업 입주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현장의 목소리

미음산단 내 풍력발전부품단지는 창고업이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에 8m에 달하는 대형 풍력부품에 특수컨테이너 상차처리작업을 하려면, 인근 녹산산단의 창고로 부품을 옮겨야 합니다. 즉, 미음산단→녹산산단→부산신항 순서로 2단계 운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부품을 운송할 때에는 부품 크기 때문에 화물 폭과 운행시간 등을 협의하고,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횟수가 늘어나다 보니 기업의 행정력도 낭비되는 상황이고, 도로에 두 번 나가야하다보니 교통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운송비 부담에 이런 상황까지 겹치니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처럼 2단계 운송이 아닌, 풍력발전 부품 생산지에서 부산신항으로 즉각 옮겨지는 1단계 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대세가 전환되다 보니 지름이 7m~8.5m인 제품까지 주문이 들어오기 있지만, 운송 등의 문제로 수출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산업단지도 융·복합으로 되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30년 전의 획일적인 산업단지 정책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강서구 소재 미음산업단지 내 풍력발전 부품사업단지 입주업종은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정보서비스 등 크게 3개 분야임
 - * 미음산업단지는 3,549천㎡ 규모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함
- 창고업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대형 풍력발전 부품 수출을 위한 부산신항으로의 수송이 원활하지 못해 기업의 운송부담 가중 등 기업애로 상존

■ 개선방안

- 미음산업단지(풍력발전 부품사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 풍력발전 부품 수출 시, 녹산산업단지 물류기업을 거쳐 부산신항으로 가는 2단계 운송을 풍력발전 부품 생산지에서 부산신항으로 즉각 운송

■ 관련법령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현장의 목소리

현재 산업단지 인·허가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신청하는 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중소기업은 인·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개발계획변경서, 환경영향평가서, 관계기관 협의 등 전문적인 절차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해당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용(1건당 6천만원~7천만원)을 들여 전문기술용역업체에 대행을 맡긴다고 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초 글로벌 신발산업의 메카인 부산의 신발산업역사를 계승하고, 지역전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가 **신발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하였는데, 산업단지 육성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신발 제조업체, 매출액 1,048억, 종업원 180명,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산업 환경에 따라 고객사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는 신발·의류 간 통합생산이 요구되나 부산 소재 신발산업집적화단지에는 의류업종 추가가 제한되는 상황
 - 기업 자생능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류업종 추가 허용 필요
- 2021년 9월부터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 중이나,
 - 인·허가 변경 시 업종을 추가하고자 해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에게 애로 과중

- (①행정절차) 인·허가 변경에 따른 복잡한 전문 행정절차 규정상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위탁해야 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정)
- (②비용) 신청부터 전문기술용역업체를 통해 실시 → 막대한 비용 발생(수천만 원 수준)

■ 개선방안

- 신발산업집적화단지에 의류업종 추가
 - 고객사의 수요 충족 위해서는 신발, 의류 통합생산이 절실

〈 추가요청 품목 〉

대분류	세분류	추가요청 품목
C14 (제조업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부담 지원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3 자동차정비업 관련 산업단지 입주 차별규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의 목소리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 제조산업 발전을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요즘 같은 서비스시대에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비가 시원찮으면 제조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려면 환경 민원으로 인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면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정비업자들은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은 유사업종 대비 차별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업은 정비업과 업무수행 특성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차량의 용도변경이라는 행위의 목적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튜닝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가 가능하고, 업무가 비슷한 자동차 정비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적은 면적에 해당하는 지원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은 물류차량 정비 등 산단 내 입주업체와도 밀접히 관련된 만큼, 산업시설구역 내 정비업 입주를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정비업체, 매출액 4억, 종업원 6명, 인천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정비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
 - 이에 대부분의 산업단지에서 지원시설구역 분양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은 산업시설구역보다 면적이 좁고 더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함
 - 반면, 자동차 튜닝업(자동차 용도변경)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
 - 튜닝업과 정비업은 판금·도색·구조변경 등 업무수행 특성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행위 목적(수리 또는 용도변경)에 따라 입주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산업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자동차 정비업은 물류차량 정비 등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들과 밀접히 연관된 업종임에도 입주 제한되는 것은 산단의 장점인 ‘집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임
- * 사례) 자동차정비업은 인천 남동공단 첨단산업단지 계획상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표준산업분류 코드 C30)은 유치업종(첨단제조산업)이므로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 건의사항

- 남동공단 첨단산업단지 계획 입주대상에 자동차 정비업 포함
- 서비스 업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확대

현장의 목소리

광주아스콘협동화단지는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장 등 사업장의 집단화,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경영활동을 공동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협동화단지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발생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용은 차치하고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협동사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에 따른 국토부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지정에서는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한 사례가 있는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협동화단지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은 사례〉

-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훈령 제1131호)을 마련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공장은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명시"하고,
- 또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에는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안에서 완화"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천지산업개발, 광주아스콘협동화단지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장 등 사업장의 집단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등 경영활동을 공동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동화사업단지는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인·허가된 것으로 규정, 동법에 따라 조성(설치)할 수 있지만,
 -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달리,
 - 협동화사업단지는 조성 이후 모든 부분이 부처별(중기부·국토부·환경부 등) 인·허가 대상

- 민간이 주도해 중소기업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집단화를 통해 토지이용을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협동화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 필요

■ 개선방안

- 협동화사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 받지 않고 기업 활동에만 집중하여 협동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이 필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 16. (생략) ③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같은 법 제52조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 16. (현행과 같음) ③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13조의 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현장의 목소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지역 청년층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현상이 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려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식당이나 휴게시설 등의 복지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급식업체에 맡기려면, 영양사 고용 등 식품 위생법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 운영하는 입장에선 힘이 듭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식단개선이나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하면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의무사항 준수가 필요 없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을 입점시키려고 해도,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라서 허가가 나질 않네요. 산업시설구역 내에 있어 용도 변경도 쉽지 않고, 참 답답합니다.**

카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 식후나 쉴 때 아메리카노 같은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제대로 된 브랜드 가맹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려 해도 일반음식점처럼 허가가 안 납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업체 부담도 줄이며 사업장 내에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매출액 23억, 종업원 8명,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구내식당) 또는 50인 이상 위탁 급식을 하려면, 식품 위생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함
 - 종업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일반음식점 운영(입점)이 필요
 - 또한 식사 이후 및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음료·빵·과자 등 판매)에 대한 운영(입점)도 필요함
- 그러나 사업장 내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가능
 - 산업시설구역 내 용도가 ‘공장’인 경우 시설의 허가가 불가능, 용도 변경도 어려움

■ 개선방안

- 공장 부대시설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포함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공장의 범위)

-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현장의 목소리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가 준공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제약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산단에 들어온 업체도 많아졌고, 근로자 수도 많아졌습니다. 하나 안 바뀐 게 있다면, 산단 내 시설들입니다. 나날이 근로자 수는 증가하는데 지원시설은 부족합니다. 근로자도 산단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요.

다른 입주업체들도 부지가 부족하다면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근로자들도 잃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산단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입주기업 중심으로 3,000평방미터의 땅을 기부채납하고, 18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이 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부정적이라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운동장과 법정 녹지비율을 초과해 확보한 녹지 중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공원, 주차장, 지원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39개의 제약기업이 입주해 연간 3.5조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산단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한국제약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85년 준공된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단지로 입주기업·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지원시설과 부지가 부족한 실정
 - 공원, 주차장, 지원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산업단지 근무를 기피
- 법정 녹지비율 충족 등 관련 법상 이상이 없음에도 지자체가 산단 계획 변경의 허가를 미뤄 근로자 지원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산단 내 운동장, 녹지 부지 → 공원, 주차장, 지원시설부지 용도 변경

■ 관련법령

-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기도 고시 제2001-251호)

7 계획관리구역 건폐율 완화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우리 기업은 1990년대부터 파주에 공장터를 잡았는데, 30여년 간 가동되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안전·소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 보완도 하고 있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건폐율이 40%로 제한되면서 한계가 있네요.**

또, 가구 특성상 원재료의 부피도 크고 성수기·비수기에 따라서 물량이 몰릴 때가 있는데, 보관을 위해서 천막 가건물을 지으면 주변에서 '불법가설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해 법적인 문제도 여러 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건폐율을 준수하려면 인근에 비슷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수도권 일대의 토지값도 상당히 올랐고 신규 공장을 지으려면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건폐율 제한이 완화되면 증축만 하면 되지만, 제한이 걸려서 신규로 토지매입부터 설계·시공·주민민원·행정처리까지 다 하려다 보니 기업 경영에 큰 장애가 됩니다.** 우리 기업은 파주에만 30년 이상 있어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는데, 국가 제도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폐율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편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가구 제조업체, 매출액 1,100억, 종업원 270명, 서울(본사), 파주(공장)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계획관리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으로 생산·보관시설 등 확장이 필요함에도 건폐율 제한(40%)으로 증축이 불가해 신규 증설이 불가피하며,
 - 신규 증설 시 부지매입 및 건설 비용 투입, 까다로운 행정 절차 진행 등으로 경영자금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한편, 제한된 건폐율로 인해 임시로 자재보관용 건물 설치 시 불법 가건축물 신고, 민원 제기 등 법적 문제도 다수 발생

■ 개선방안

- 계획관리구역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현행 40% 이하)

■ 관련법령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84조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⑤ 생략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제84조(용도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 중략-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 1~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20~21. 생략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생산비용 증가로 애를 먹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확장하고 자동화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제3산업단지, 대구성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고자 문의를 했는데 저희 업체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청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의 입주승인을 받아오면 허가해 준다고 했지만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관리기본계획과 환경오염물질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입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제3산업단지나 대구성서 산업단지에는 저희와 같은 업종이 이미 입주해서 설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저희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염정화기술을 설치하면 오염물질의 97~98%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가 싶어서 구미에 있는 산업단지에 문의했더니, 구미 산업단지는 가능하다고는 하였으나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지역 산업공단에서도 관리기본계획에 일률적으로 저희 업종을 입주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지 말고, 국가산단처럼 환경오염기준에 따라 입주 규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도장·피막처리업체, 매출액 33억원, 종업원 33명, 대구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가 꼭 필요함
- 하지만, 산업단지별 입주 제한업종 규정이 상이하고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기존 입주업체와의 입주 차별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실정
 - 대구제3산업단지 및 대구성서 산업단지의 경우 도장, 피막처리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상 입주 대상업종 변경 고시에 따라 신규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오염물질 배출업종을 제한하고 있음
- 특히, 오염물질 감축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업체들도 특정 산단에서만 일률적으로 입주 제한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

- 국가산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업종도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2호(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 개선방안

- 대구 소재 일반산업단지 입주시, 오염물질 배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완화
 - 지자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규정에 오염저감 등을 통해 공해유발 없는 경우 입주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관련법령

- 대구성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제 2019-129호)

업종별	입주대상업종
기타 제조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C10 ~ 33)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 (도금, 도장, 피막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레미콘·아스콘제조업)은 입주제외 ※ 1차단지의 경우 기존업체는 공해업종 허용 ※ 위험물제조 및생산공정상 악취, 특정 대가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②~③ 생략

- 대구제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2020-179호) 등

9 K-스타월드(미사섬) 관련 규제 완화

[환경부,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하남시에서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문화 산업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했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을 꼽자면, 1천 평 이상의 스튜디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 프로덕션사에서 한국은 기술력도 있고, 능력 있는 스태프들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스튜디오가 없는 게 아쉽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천평 이상 되는 규모를 가진 사운드 스테이지 즉, 방음이 되는 스튜디오는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한 곳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1년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스튜디오 촬영을 원하는 외국 프로덕션 사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남시에서 K-스타월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환경 규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K-스타월드가 조성 될 미사섬에 대형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효과가 엄청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산, 파주 쪽에 스튜디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방음이 잘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하남시가 한류문화 확산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컬처의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영상업체, 경기 하남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하남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정중앙에 위치, 지하철 5호선과 중부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
-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1.0km² 내외(약 30만평) 면적으로 ‘K-스타월드’ 설립을 추진 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GB환경평가등급,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움

K-스타월드 활용방안	<p>① K-Pop 공연장 겸용 돔구장(프로야구 겸용) 설치로 다양한 공연 및 야구경기 진행</p> <p>② 마블시티(Marvel City) 유치 ※ TMX 4D MOU체결('22.4.11) - 4D, 5D를 망라하는 메타버스형 테마파크 및 어린이체험형 테마파크 조성</p> <p>③ 세계적 영화촬영 Studio 조성 및 영화단지 조성 - (가칭) "ARETE Project*" 유치 및 MOU 체결 ('22.3.21) * 아레테 프로젝트 : 최첨단 영화사운드와 촬영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실행하는 세계적인 영화사들의 사운드시설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프로젝트</p> <p>④ AI, ICT가 융합된 첨단 문화영상단지 조성 : 사업화 지원 - K-Culture Academy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건의) - 상업시설 및 영화 기술학교, 호텔 등 한류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조성 * 공연(하이브·카카오·JYP 등) 및 음향·조명업체 등과 LOI 체결 추진 중(9월) → 한류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 포럼' 개최도 추진(예정)</p>
------------------------	--

■ 개선방안

- GB환경평가등급 조정(국토교통부, 환경부)
 - 환경평가등급 제도운영 재검토
 - 「GB해제지침」 개정을 통한 환경평가등급 완화 또는 예외적용
 -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평가항목 기준 완화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수변구역 규제완화
 -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은 시설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이 갖춰진 경우 한강변에서 일정거리(100~200m) 이내 완충 지역을 제외하고 시설입지 허용
- 신속한 K-스타월드 사업추진 위한 대책사업 반영 및 행정절차 지원
- ※ 기대효과
 - 고용창출효과 30,000명, 경제유발효과 2.5조원
 - 대한민국 한류 문화영상단지 조성을 통해 한류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현장의 목소리

현행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부 업종만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업종이 정해져 있으며 공사업종은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설치와 시공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제한된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종 등을 같이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해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의 상하류 일정지역 내에는 공장설립(제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남시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 2호 지역' 내에 9개 업종만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폐수 발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을 제한하다보니, 중소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영향이 없는 제조업종의 경우 공장설립 허용이 필요합니다.

- 센텀비즈경영자협의회,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부 업종만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업종이 정해져 있으며 공사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함
- 이와 관련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 하면서 설치·시공을 하기 위해 입주가 불가능한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종 등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cctv 제조를 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이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 등으로 설치(납품)하는 업체가 존재
- 또한, 공장설립 승인지역(2호지역)의 경우 제조업 477개 업종 중 9개 제조 업종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유사함
 - 하남시 공장설립 규제지역 중 공장설립제한지역(34%)은 제조업 불가
 - 공장설립승인2호지역(13%)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9개 업종만 가능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집수시설 설치의무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

- 공장설립승인1호지역(53%)은 업종제한은 없으나, 2호지역과 마찬가지로 집수시설 설치의무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허가 가능

구 분	면 적(k㎡)	면적률(%)	규제내용
공장설립규제지역	80.944	100	-
공장설립제한지역	27.105	34	제조업 불가
공장설립 승인지역(2호지역)	9.893	13	9개 제조업만 가능 집수시설 설치 의무
공장설립 승인지역(1호지역)	43.946	53	제조업 가능(업종제한 없음) 집수시설 설치 의무

-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폐수발생 유무와는 무관한 제조업*까지 제한을 받고 있어 소규모 제조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은 상황

* 부품단순조립업, 의류봉제업, 커피가공업, 단미사료 제조 등

■ 개선방안

-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한해 입주 허용
 - 「산업집적법」에는 공사업 등에 대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의4)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업종에 대한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용도 공장에 입주 가능 하도록 개정
- 제조공정상 물 또는 액상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의 경우, 입지 가능 하도록 수도법 상 가능한 제조업 범위를 재조정
 - 수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 ④ <생략> ⑤ <신설>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의 제한) ① ----- ----- ----- ----- ----- ----- ② ~ ④ <좌동>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업종(제조 공정상 물 또는 액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의 경우, 공장설립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 수도권 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

제조업	산업분류	비 고
곡물 도정업	10611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류 제조업	10743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커피 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차류 가공업	10792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삼제품 제조업	10795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조공정상 물/액상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업종 추가 개정		

11 경기북부 중첩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과 가깝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고, 북한과 가까워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환경이 깨끗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가 많다고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각종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다른 수도권처럼 발전이 되어 있는지, 인구가 과밀한지. 낙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산업기반시설이나 정주시설이 부족하다보니 기업들도 적고,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도 줄어드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죠.

이 때문에 경기북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남부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동두천,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기존 산업은 더 기업하기 좋게 만들고, 새로운 산업도 유치하여 경기북부 지역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 섬유 제조업체, 매출액 85억, 종업원 39명, 포천 소재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 매출액 6.8억, 종업원 8명, 서울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양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제정
- 경기북부의 전체 행정구역 대비 규제지역 지정면적 비율이 1.6에 해당, 이는 경기북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평가

< 경기북부 주요 중첩규제 현황 >

규제분야	규제 현황 (경기북부 면적 대비)	주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4,266km ² (100%)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3km ² (42.8%)	건축물 산·증축, 토지지형 변경 등 원칙적 금지(군부대 여외적 허용)
개발제한구역	502km ² (11.7%)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
팔당특별대책지역	386km ² (9.0%)	일정 규모 이상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양식장 등 설치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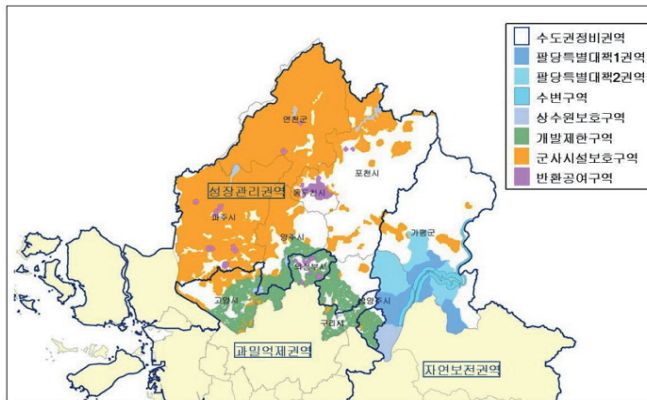
* 자료 :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장인봉, 2021)

-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대부분 공업지역 및 공공시설 개발에 제약이 존재하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

- 특히 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는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일괄하여 구분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산업·관광 분야 개발 계획 추진에 한계로 작용
- 또한, 경기북부 면적의 42.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로 인해 개발 제한이 가중
- 포천시·남양주시·가평군 등은 상수원보호 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 용도 변경, 산업입지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음
- 포천 등 일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증축 등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적용
- 이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
-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어 산업 기반 구축, 정주환경 낙후 등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경기북부지역 규제현황 >

< 경기 북부지역 규제 현황 >



< 경기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현황 >

(단위 : km², %, 가구, 명)

구분	행정구역면적	개발제한구역	구역 비율	가구	인구
경기도 전체	10,172.3	1,176.4	11.6	25,117	61,025
경기도(21개 시군)	4,934.6	1,176.4	23.8	25,117	61,025
북부지역	4,265.7	501.7	11.8	9,868	27,054
소계	1,151.3	501.7	43.6	9,868	27,054
의정부시	81.5	58.0	71.1	2,223	4,667
고양시	268.1	119.4	44.5	2,247	6,898
구리시	33.3	20.5	61.6	712	1,745
남양주시	458.1	226.6	49.5	3,438	9,126
양주시	310.3	77.2	24.9	1,248	4,618

* 자료 : 이의희 외(2015)

■ 개선방안

- 경기북부 접경지역 (1)지역혁신특구 지정 또는 (2)성장관리권역 제외
 - (1)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해 신사업분야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지역혁신 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하여 건축물 신설·증설·허가 및 공업지역 지정의 유연성 확보
 - * 경기북부 접경지역(6개) 권역 지정현황
 - (성장관리권역) 동두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 (과밀억제권역) 고양시
-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 시 지역 특성 고려하여 규제 완화 및 지원
 - 소규모 서비스 및 제조업에 대한 입주 허용
 - * 사례 : 물류업, 원료재생업, 금속가공업 등
 - 기반시설 조성 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등
 - *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지역 확대 : 비수도권 →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등

■ 관련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세율)

-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1. 인천광역시[강화군...]	1. 이천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2. 동두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3. 의정부시	3. 안산시	3. 용인시(김량장동...)
4. 구리시	4. 오산시	4. 가평군
5. 남양주시	5. 평택시	⋮
6. 하남시	6. 파주시	
7. 고양시	7. 남양주시(별내동...)	
⋮	8. 용인시(신갈동...)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략)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하남시의 공장설립 규제지역은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2호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규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제한지역은 제조업이 불가하고, 2호승인지역은 9개 제조업이 가능하며 집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1호승인지역은 업종 제한 없고 마찬가지로 집수시설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지역)이 사실상 공장설립제한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477개 업종인데, 오염물질, 특히 폐수 배출과는 무관한 제조업까지 제한해서 기업활동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법 상 가능한 제조업 범위를 좀 조정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 「수도법」 제7조의2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의 상·하류 일정지역 내에는 공장설립(제조업)을 제한함
 - 하남시 공장설립 규제지역 중 공장설립제한지역(34%)은 제조업 불가
 - 공장설립승인2호지역(13%)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9개 업종만 가능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집수시설 설치의무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허가 가능
 - 공장설립승인1호지역(53%)은 업종제한은 없으나, 2호지역과 마찬가지로 집수 시설 설치의무 등 일정요건 갖춰야 허가 가능

< 하남시 공장설립 규제지역 현황(80,944km²) >

구 분	면 적(km ²)	면적률	규제내용
공장설립규제지역	80,944	100	-
공장설립제한지역	27,105	34	제조업 불가
공장설립 승인지역(2호지역)	9,893	13	9개 제조업만 가능 집수시설 설치 의무
공장설립 승인지역(1호지역)	43,946	53	제조업 가능(업종제한 없음) 집수시설 설치 의무

- 공장설립 승인지역(2호지역)이 제조업 477개 업종 중 9개 제조 업종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유사함
-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폐수 발생 유무와는 무관한 제조업까지 제한 →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기업활동에 애로 많음

■ 개선방안

- 제조공정 상 물 또는 액상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의 경우, 입지 가능하도록 수도법 상 가능한 제조업 범위를 재조정

* (예시) 부품단순조립업, 의류봉제업, 커피가공업, 단미사료 제조 등 다수

■ 관련법령

- 수도법 제7조의2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타 산업단지는 모두 관리위탁기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허용하고 있지만 유독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위탁기관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비영리 자조조직이라는 점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른 점이 없는데, 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리업무 위탁기관이 될 수 없어 별도의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또 다시 만들어서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모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조조직으로서 中企협동조합법에 따라 다양한 공동사업과 단지의 조성·관리·운영사업을 수행
 - 또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서도 산업단지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해 中企협동조합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단지 관리위탁기관으로 허용
-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산업집적법상 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달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관리위탁기관이 될 수 없음
 - 반면,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 자조조직이나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모든 산업단지의 관리위탁기관이 될 수 있음
 - 이에,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다시 조직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관리 위탁기관으로서의 단지 운영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각각 조직하여 운영해야 하는 상황

■ 개선방안

-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0조 제1항

제30조(관리권자 등)

-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현장의 목소리

금속공업 회사들은 대부분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해서 금속 정밀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은 실제로는 폐절삭유를 폐기물로 위탁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입지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용성절삭유가 아니라 지용성절삭유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지용성절삭유를 사용하면 폐기물관리법만 적용받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지용성절삭유는 화재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도 피부발진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부고시에 따른 입지제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경남지역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수천~수만 평 이전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며, 근로자 생활이 정착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 금속가공업체, 매출액 305억, 종업원 130명, 경남 김해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은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중규제를 받으며, 특히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입지제한으로 산업단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
 - 낙동강 하류의 경우 환경부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이전을 조건으로 입지 제한을 유예한 상태
- 수용성절삭유는 대부분 시설 내에서 순환·재이용하며 폐절삭유는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 배출이 없으며 폐기물로 관리 중
- 지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만 적용되어 입지제한 규제를 받지 않으나 화재위험, 피부발진 등 안전·보건상 문제로 사용하기 어려움
-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이전은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며, 제한지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더라도 시설 신설·증설이 어려운 점과 직원 생활근거지 이동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함

■ 개선방안

- 수용성절삭유를 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폐기물로만 관리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제8항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제3조제1항제7호 (환경부고시 제2020-60호)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水溶性)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밖에 설치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설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설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에는 외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여러 군데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행정관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저희도 서부산유통지구에 협업화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하였습니다만, **각종 인·허가, 신청, 신고 등 행정기관 이원화로 인해 경자청이나 관할 구청으로 이중 방문이 빈번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를테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나 말소 신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인데 건축물대장 관리·발급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나 부동산 매수시 실거래 신고는 경제자유구역청이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와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관할구청으로 이원화 되어, 행정 실수요자인 기업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이견 어디로 가야하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행정서류를 통합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정말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업무인 단지 개발과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체와 주민의 복합 행정 서비스는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산업단체, 매출액 24억, 종업원 6명,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서부산유통지구는 2,400여 개 중소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로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됨
-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무처리의 특례를 규정하여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환경영향평가 사무, 공장설립과 등록 사무, 도시가스 시설공사 승인 등 수많은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과 이원화되어 불편이 많음

■ 개선방안

- 사무처리의 특례 중 기업체 및 주민의 생활민원 업무와 관련된 처리는 시·군·구청장으로 일원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서부산유통 지구와 같이 개발이 완료된 단지는 중소기업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종 규제행위 완화 요망

■ 관련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현장의 목소리 (1)

저희 제품이 납품도 잘 되고 경영실적도 성장하니까 투자도 하고 우수인력도 채용할 겸 여러 부지를 알아보다가 조건들이 적절한 곳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자연녹지시설이라 건폐율이 20%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위 유해물질을 뱉어내는 화학공장도 아니고 단순하게 식품첨가물을 생산해서 용기에 담아서 포장하는 생산공장인데 건폐율 20%는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남은 땅은 뭐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대충 물건이나 쌓아두는 땅으로만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장은 스마트공장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어 공장도 깨끗하고 폐수를 버릴 일도 없는 업종인데 **건폐율 20%에 막혀있다 보니 나중에 생산을 늘리기 위해 또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자연녹지시설에 기업이 들어선다고 무조건 자연이 파괴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를 건의드립니다.

- 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100억, 종업원 30명, 경북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강원도는 상수원보호 지역 및 자연녹지 등 규제가 너무 많고, 지원받는 것도 없으면서 수도권에 의해 제약만 받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몰리고, 지방 인구유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심지역은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을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활용하고 싶어도,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20%에 머물러 있다보니 투자 비용 대비 많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IT기업, 강원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을 정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산림의 보호,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상에도 국토계획법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음

-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업종인 경우 자연녹지시설 건폐율 20%가 적용됨에 따라 부지를 구매하고도 활용하지 못해 유휴부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폐율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유해업종 제외, 환경저감 장치 보유기업 대상 등)

■ 개선방안

-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유입을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 건폐율 재검토 및 자연녹지시설 건폐율 40~50% 수준으로 확대
 - 국토계획법의 건폐율 개정과 함께 지자체·기초지자체의 도시·군계획 조례의 비율도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 환경오염 유발하지 않는 업종에 한해 녹지지역 사업장 건축 허용
 - * (사례) ICT 융합 중소벤처기업과 지식서비스 업종 등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6호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초지자체]

현장의 목소리

생산공장 부지에 유휴공간이 있다보니 창고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 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창고용 건물을 지으려는데, 가설 재질이 천막 위주로만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가설 재질이 천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컨테이너 패널로 지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저렴해서 창고로 사용하기 좋으니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규정상 안 된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는 가능하다는데, 사실 이게 컨테이너 패널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보니 창고 가설물로 짓기엔 고민이 됩니다. 주변에 중소기업 생산공장에 컨테이너가 많은 이유는 가격도 저렴하고 활용하기 좋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가설건축물 재질에 왜 컨테이너 패널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론 화재 문제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는 다른 재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창고가 필수적인데, 천막창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100억, 종업원 30명, 경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생산공장 내 추가적인 건물증축이 어려워 부득이 제품 보관을 위한 용도로 가설 건축물을 통해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가설건축물 허용 재질이 천막 정도로 국한되다 보니 창고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태풍이나 자연재해 시 보관제품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천막 외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도 있으나 폴리카보네이트는 가격이 높고, 스크래치에 약하고, 황변현상 발생하다는 단점 존재
- 가설건축물 재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창고용 컨테이너 패널 활용을 건의했으나 미반영
 - 컨테이너 패널은 물품보관 창고로 축조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축조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높아 생산현장에선 선호하고 있음에도,
 - 가설건축물 재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기업들은 천막 수준의 창고만 활용
- 가설건축물의 재질 범위는 건축법에 따라 광역·기초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기재
 - 기초지자체 조례는 공통적으로 컨테이너 패널을 구조물 범위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가설건축물 축조 시 애로로 작용

< (참고) 경상북도 주요 기초지자체의 건축조례 상 가설건축물 범위 >

경산시	천막과 유사한 구조, 레일구조 (건축 조례 제12조)	안동시	철거가 쉬운 마감재(천막 등) (건축 조례 제22조)
경주시	지면 레일설치·이동 구조 (건축 조례 제17조)	영주시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건축 조례 제7조)
고령군	보온덮개, 비닐, 천막 등, 유사구조물 (건축 조례 제7조)	영천시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건축 조례 제22조)
구미시	레일구조, 천막-유리-플라스틱 등 (건축 조례 제22조)	청도군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 조례 제22조)
문경시	천막과 유사한 구조 (건축 조례 제9조)	칠곡군	천막, 폴리카보네이트, 강판 (건축 조례 제20조)
상주시	천막과 유사한 구조, 간단한 포장과 수선작업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 조례 제17조)	포항시	천막과 유사한 구조 (건축 조례 제11조)

■ 개선방안

-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재질에 컨테이너 패널을 포함
 -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시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

■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20조(가설건축물)

-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

제15조(가설건축물)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개별 기초지자체의 「건축 조례」

현장의 목소리

1년 9개월째 인허가 받느라 이제 지쳐서 공장설립을 사실상 포기했어요. 지난 2020년 10월에 현재 공장 근처 임야를 8천평 정도 구입해서 알루미늄 압출공장을 추가로 지으려고 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9개월에 걸쳐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공장을 설계할 때 도장도 들어가고 하는 특수공장이라 용도에 맞게 'L'자 형태로 배치(25미터×75미터)를 했다가 지금은 범용형태인 'ㄱ'자 형태로 변경하려 했더니 **공장 배치가 원래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재해영향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영향평가를 받는 것과 비슷하게 다시 받으려니 또 몇 달 걸리게 생겼어요. 이게 토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 배치를 조금 변경해 건축하게 되는 건데 또 협의를** 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재해 등 예방 차원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소연이긴 하지만, 코로나 사정도 있고 **인허가에 따른 행정부담이 커져서 공장을 추가로 만들어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8천평 중에 일부를 분할해서 토지를 팔기로 했는데 측량이 안 돼 공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400평 정도는 경사도 문제로 아직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기준이 25도 이하면 가능하긴 한데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화성시는 15도라서 경사도 16도인 그 토지는 허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업하는 사람이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경사도 사례처럼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것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 폴딩도어 제조업, 매출액 210억 , 종업원 120명, 경기 화성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①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상향조정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재해영향평가등 :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규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재협의토록 규정되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 소요됨
- 특히,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을 재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개별입지에 공장 설립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장기간의 심의를 받게 되고, 이후 공장 배치를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을 재협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개발계획 허가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지 일부 변경 등을 포함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여 협의 완료 이후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등 시간과 비용 부담 완화 필요
-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 제1항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없는 상황임

② 경사도 기준의 지자체별 기준 완화

- 산지개발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의4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지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25도 이하)의 40% 강화된 15도 미만 등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
 - 경사도는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 등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 보다 높은 경사의 토지(임야)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게 제한됨.
- 산지전용허가의 경사도 기준과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도 다름
 - 산지전용허가의 경사도 기준은 전국의 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실제 개발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지자체별로 경사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특히, 일부 지자체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과거 수준으로 경사도 기준을 강화

* 사례) 경사도 기준(경기도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 화성시 : 15도 미만, 광주시 : 20도 미만, 파주시 : 18도~23도 미만(법원읍 등)
- 용인시 : 기흥구(21도 → 17.5도), 처인구(25도 → 20도) * 2015년 수준 강화

■ 개선방안

①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상향조정

- 중소기업이 공장 설립시 인허가 심의 및 협의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
 -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허가 심의시 환경, 재해, 교통 등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
 - * 예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 변경
(현행) 30퍼센트 이상 변경시 → (조정) 50퍼센트 이상 변경시
- 또한 경미한 개발행위의 변경 등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제외 대상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

② 경사도 기준의 지사체별 기준 완화

- 산지 등 개별입지에 공장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경사도 기준 완화
 - 산지관리법의 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의 30%(17.5도) 이내로 규정하도록 각 지사체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기업투자 유도

■ 관련법령

①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상향조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② 경사도 기준의 지자체별 기준 완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절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화성시)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다만, 지목이 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

19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군사시설 보호 심의

[국방부]

현장의 목소리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부족한 경기북부 물류거점을 보완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 등의 지원을 받아 파주시에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어 군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이 필요한데 4년 동안 4차례나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계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동 사업을 위해 상당액을 이미 투자하였고, 군부대의 작전 측면에서 제한되는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군보협의를 신청하였으나, 군부대 측은 일관성 없는 사유로 부동의 판정을 거듭하고 있어 사업이 표류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매출액 4.4억, 종업원 44명, 경기도 고양 업체

현황 및 문제점

- '13년 북한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로 6개월간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상황 발생
 - 개성공단 현지에 원·부자재를 적치하였으나, 남측 물류거점 확충 필요성 대두
- 이에 '15년 경기도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연구를 바탕으로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개요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성동IC옆),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 면 적 : 64,000평(가용면적 : 45,000평)
- 참여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40개사

- '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조치로 약 2,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류단지 조성 본격화
 - 개성공단 폐쇄로 해외에 대체생산시설을 마련한 기업의 경우 임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을 보관할 물류거점이 더욱 절실해짐
-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 통과('18), 경기도-파주시-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간 업무협약('19) 체결 등을 진행

- 그러나 대상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어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군보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육군 9보병사단 및 1군단의 군보심의에서 4년째 4차례의 ‘부동의’ 판정을 받고 사업 추진이 표류 상태
-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군부대 작전 측면에서 제한되는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보완 중

〈군보 심의 부동의 이력〉

구분	군사 시설 훼손	관측 및 사계	전투 공간 확보	화력 운용	기동성 보상	지휘 및 통제	통신 장비	폭발물 안전 관리	제한 고도	소음/환경	대공방어 협조구역	기타
1차 19.12	A	C	C	C	C	A	-	A	A	A	A	A
2차 20.04	A	C	C	C	A	A	-	A	A	A	A	A
3차 21.12	A	A	C	C	A	A	-	A	A	A	A	C
4차 22.03	A	C	-	C	C	A	A	-	A	A	A	C

- 대상지와 인근한 탄현일반산업단지(물류단지 끝에서 5~600m 밖에 이격되지 않음) 및 타 인접지역(물류단지 끝에서 300~400m)에 대한 군보협의를 조건부 동의 득
- 대상지 바로 옆에 인접한 A모텔은 높이가 25m로서 이미 사계와 관측에 일부 제한이 됨에도 건축 승인 득

■ 개선방안

- 군 당국의 부동의 사유와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완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 관련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장의 목소리

주유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출입하는 쪽 외에 방화담이나 방화벽을 설치하여 관할소방서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에 연소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불필요한 방화담 설치에 관할 소방서에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면제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면제없이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식으로, 법에 명확히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부분까지 방화벽 설치를 요구하여 주유소 사업주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주유소, 연매출액 9억, 종업원 4명, 경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주유소의 경우,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에는 높이 2m 이상의 방화담을 설치하도록 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하고 있어 주유소 처음 설립 시 방화담 설치 관련 등 관할 소방서의 허가가 필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제조소 등의 기준의 특례(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 내용은 별도 업무지침(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2010.8.16.))에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동 업무지침 ‘특례적용(예외) 내용’에서는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방향이 아닌 도로에 접하는 부지경계선의 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에 건축물·공작물·하천·호수 또는 저수지(상수원 포함)가 없는 경우 해당 부지경계선의 담’ 등 인근에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 등에는 안전조치 보완* 등을 통한 방화담 면제 내용을 담고 있음
 - *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cm 이상, 폭 10cm이상의 콘크리트둑 설치 및 둑에 접하여 깊이 1m, 폭 30cm의 누출위험물 수용설비 설치
- 문제는 이러한 방화담 설치 면제와 관련한 내용이 시행규칙이 아닌 업무지침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 소방서별로 동 업무지침에 대한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방화담 설치와 관련 면제를 받지 못하는 주유소가 발생

■ 개선방안

○ 불필요한 방화담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 개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등)

-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방화담을 설치. 예외적인 경우 설치 면제’의 방식이 아닌, ‘어떠한 필요한 경우에는 방화담을 설치’의 방식으로 시행규칙 등 법 개정과 방화담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하여 정부가 연구용역 등 적극 확인하여, 불필요한 주유소 방화담 설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상기와 같은 개정까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우선적으로는(단기적 개선방안) 업무지침에 나타나 있는 ‘특례적용(예외)’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포함하도록 하여 차이없이 모든 지역소방서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필요

* (변경예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Ⅶ. 담 또는 벽'의 제3호를 신설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특례적용(예외) 규정 추가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가. 주유취급소와 가스충전소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에 주유취급소와 가스충전소를 포괄하여 그 주위에 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충전소에 면하는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1)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cm 이상, 폭 10cm 이상의 콘크리트 독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동선에 지장을 주는 위치의 부지경계선에는 독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독 또는 부지경계선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cm의 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 누출위험물 수용설비 : 누출된 위험물의 확산범위를 주유취급소의 부지 내에 국한하기 위하여 부지경계선을 따라 지반을 Pit 형태로 판 후 내부를 콘크리트로 마감한 구조물이며, 그 상부에는 격자(Steel grating)를 덮어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고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는 담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부지경계선을 따라 담을 설치하여야 하는 길이만큼 설치하여야 함. 평상시 소량으로 누설되는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구, 집유 설비 등과는 달리 이동탱크저장소·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로부터 누출된 다량의 위험물을 수용하는 기능임. 따라서, 유수분리장치는 필요 없고, 고인 빗물 등을 하수도로 배출되는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사시 위험물의 하수도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함

나. 주유취급소와 인접하여 세차장·자동차경정비점 또는 점포(이하 “준부대시설”이라함)가 설치되는 경우에 주유취급소와 준부대시설을 포괄하여 그 주위에 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부대시설에 면하는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준부대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VI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준부대시설 중 자동차경정비점 및 점포의 면적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V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유취급소 내의 부대용도 시설로 본다.

1)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cm 이상, 폭 10cm 이상의 콘크리트 독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동선에 지장을 주는 위치의 부지경계선에는 독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독 또는 부지경계선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cm의 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다.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방향이 아닌 도로에 접하는 부지경계선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 1)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cm 이상, 폭 10cm 이상의 콘크리트 독을 설치할 것
- 2) 독에 접하여(주유취급소 내부 방향) 깊이 1m, 폭 30cm의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에 건축물·공작물·하천·호수 또는 저수지(상수원 포함)가 없는 경우 해당 부지경계선의 담은 다음 각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안전조치(누출위험물 국한조치)를 보완하여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추후 35m 이내에 건축물·공작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담을 설치하여야 함

- 1) 부지경계선을 따라 높이 30cm 이상, 폭 10cm 이상의 콘크리트 독을 설치할 것
- 2) 부지경계선을 따라 깊이 1m, 폭 30cm의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Ⅶ. 담 또는 벽’의 제1호

Ⅶ. 담 또는 벽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①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17.>

1.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방법 및 제조소등의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상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목소리

산업단지는 환경, 소음, 교통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조성하여 근로자의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큰 기업 또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하여 지하철과 같은 주변의 대중교통 시설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세버스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세버스 운영을 승인 받는 일은 신청서류가 과다하고 복잡해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 산업단지(입주기업 44개), 파주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는 환경오염, 소음발생, 교통체증 우려 등 민원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이격된 지역에 조성되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
 - 이에, 자가용 차량을 통한 통근이 필수적이어서 고용창출의 악재로 작용함은 물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물류와 비상차량 접근성마저 해치고 있는 실정
 - 때문에, 대다수 산업단지는 도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근로자 출퇴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대중교통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공용 교통수단 운영이 필수적
- 정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지역사회 실정에 맞추어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통해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그러나,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전세버스 운영을 위해 자료를 구비하여 심사 받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며 번거로워 신청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

■ 개선방안

-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에 한해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서류 간소화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현장의 목소리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거의 도로를 활용한 진출입로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계속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관리청에 매년 계속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도로를 빌려주지만 점용료를 책정할 때 **유통 상업지의 높은 인접토지의 지가를 반영하고, 개별공시지가마저 상승하다보니 매년 어김없이 10%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 인상 상한율을 규정한 것은 국민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이지만, 실상은 매년 10%씩 누적되는 인상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해가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에는 도로관리청이 부동산임대업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10%까지** 부과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의 부동산임대업이면 도로관리청에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왜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 강관 가공품 및 연결구류 제조업, 매출액 67억, 종업원 4명, 부산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도로를 빌려주고 닿아 있는 상업용지 등 높은 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음
 -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애로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합법성만 주장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규정한 도로점용료 인상 상한율을 10%로 규정한 것은 국민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매년 상승이 누적되어 중소기업의 도로점용료 부담 가중
- 또한 도로관리청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10%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

■ 개선방안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개선
 -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 → 점용한 그 도로부지
- 도로점용료 인상 상한선 완화 (현행 10% → 개선 5%)
- 도로점용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변경 또는 면제규정 신설

■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별표 3] 비고 제2호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장의 목소리

가락 요금소는 1982년 개통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요금징수 구간이 부산 권역 내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보다는 이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큼니다.**

이 구간은 부산신항과 녹산산단 등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로, 지역 항만 물류수송은 물론 인근 산단 종사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향후 서부산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무료화는 필요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162km)이 무료로 운영되는데 이 중 82.7%인 134km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경쟁력 강화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가락 요금소를 시작으로 단계별 무료화 방안**이 절실합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1700억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요금 징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락IC가 포함된 남해 고속도로 제2지선은 2013년 기준 건설유지비 총액의 150%를 징수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법령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산업단체, 매출액 2억, 종업원 2명, 부산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강서구 녹산지역은 1999년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입주를 시작으로, 화전단지, 미음단지, 지사과학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입주하였음
- 이에 따라 가락IC, 낙동대교, 미음터널, 용원터널 등 접속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은 편리해졌지만,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은 2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 자가운전자의 경우, 동부산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도심 교통 혼잡과 가락IC 통행료 부담으로 인하여 20~30km 돌아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
- 김해지역의 근로자들은 미음터널의 유료화로 조만포교를 이용함에 따라 녹산공단으로 진입하는 가락IC~경마공원 구간과 하단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피로감을 더하고 있음

- 이러한 근로자 출·퇴근 접근성 불편함은 신규인력 모집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녹산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가락IC 통행료 유료화 폐지

■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4항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④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

국가나 민간 주도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산업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들이 지원되어 입주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사무실 부지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개발정책도 시행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산단에 모여들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상 단지에 모여 있는 게 사람을 구하기도 더 쉽습니다.

다만, 전국에 수많은 산단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특히, 개별 숙소와 통근수단을 공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재직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산단 주변에 대중교통 수단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주차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일 아침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산단의 특성상 이 문제는 산단 입주업체에 재직을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도로는 잘 닦여 있지만, 단지까지 출퇴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이 부족합니다.

교통수단과 주차시설은 전기, 수도 시설과 같은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산단 소재 중소기업 인력충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산업단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 곳곳 산업단지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온수모듈 제조업, 매출액 79억, 종업원 37명, 경기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혹은 민간 주도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다양한 산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산업·교육·연구·유통·주거 등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됨(전국 1,256개)
- 그러나, 지방 소재 산업단지 재직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
 - 산업단지 일자리 매칭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등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이 존재함에도, 통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재직 유인이 크게 떨어짐

■ 개선방안

- 산업단지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대중교통 및 주차시설 지원)

■ 관련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2012년 12월 보은군 삼승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교량 가설구조물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의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산업단지 부지를 2019년에 분양받아, 지금까지 당사의 사무실, 원자재 가공라인, 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경관녹지의 극히 일부분을 공장과 공장 사이 진출입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주위 녹지의 경우 개별공장의 진출입도로 사용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계부서의 고발로 인해 벌금형(법인 150만원, 대표자 150만원)의 약식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해당 진출입로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해당 진출입로 사용이 불가하여 1.2km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므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공장 and 자재 야적장 사이에 진출입로 점용허가가 되지 않아 **자재의 운반이 어려워 시간 및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 교량 가설구조물 및 조형물 제조업, 매출액 65억, 종업원 15명, 총복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산업단지 주위의 녹지일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의3에 따라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한 업체의 사업장이 서로 측방에 있더라도 사업장 사이에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할 수 없어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함
-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장 간 자재 운반 및 이동 등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법령 보완이 필요한 상황

■ 개선방안

- 산업단지 주위 녹지라 하더라도,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 등과 협의 시, 진입도로 설치가 가능토록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공원녹지법 제44조제3호의3 관련)’ 제10호에 단서조항 신설

■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의2. (생략)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공원녹지법 제44조제3호의3 관련)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주위의 녹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정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

서부산유통지구는 도심의 노후시설에 있던 산업용재상들이 교통난과 주차난을 피해 부산시가 마련한 외곽 집합건물로, 그것도 2007년 평당 210만원 가량의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입주했는데 이제와 **교통혼잡 유발자로 몰아 세금 폭탄을 물리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서부산유통지구는 부산시 중심상권인 서면, 연산동, 광복동 등과 같은 도심지역 배후 상권의 교통 혼잡과 대비되는 부산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장면적이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마트, 백화점과 같이 교통유발계수 7.21을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시설물의 특성 및 구조, 입주업종과 취급품목, 원도심과의 지리적 거리,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 등 주변 환경여건은 배제한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이용자 수와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부산유통지구 내 시설이 판매시설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일괄 발주를 받아 한 차에 실어 보내는 형태여서 마트, 백화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매출액 39억, 종업원 9명, 부산소재 업체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이용자 수와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매년 유발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서부산유통지구 내 3개 협동조합*은 그동안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7.판매시설, 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유발계수 1.68’을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되어 왔음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x단위부담금x교통유발계수)
 - *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168개), 부산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73개), 부산건축자재판매업협동조합(71개)
- '21. 9월, 부산시 강서구청은 부산시 감사 결과에 따라 백화점, 복합쇼핑몰과 같은 교통유발계수 7.21을 적용하여 2016~2020년 누락된 교통유발부담금 추징세액 13억 2300여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3개 협동조합으로 통지

-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 결정되고, 서부산 유통단지 내 시설들은 명백하게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 그러나, 인근 지역인 대구시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1.68로 적용하고, 종합유통단지 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해소와 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서부산유통지구 내 협동조합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부산광역시 교통유발금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7.판매시설, 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유발계수 1.68’로 적용

■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7. 판매시설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2 관련) 〉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7.21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현장의 목소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취지는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며, 목적은 관련 법규에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권 및 조성원가 통제를 통한 사업시행이익의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듯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관장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성 협의신청이라는 명분하에 민간 사업시행자에 과도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취득율 75%~79%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토지소유주는 감정평가에 의해 제시된 보상금액을 거부하고, 20%~70% 이상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지나면 재결감정평가를 받는데, 사실상 무조건 감정평가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외부에서 개입하여 토지소유주들이 협의계약 하지 않도록 꼬드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의 증액은 산업용지의 분양가에 전가되어 산업용지 수요자인 기업가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라는 도미노현상을 부채질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후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협의가 된 산업단지 사업지구**는 **민간사업시행사에게 수용의 권한**을 주는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일그러진 보상 업무의 무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 충남 테크노파크(천안)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성 협의신청이라는 명분하에 민간 사업시행자에 협의 계약율 75% 이상을 맞출 것을 강요
-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3명의 감정평가사(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행정기관장 각 1인 추천)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을 제시하며, 보상선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금 이상의 감정평가를 함에도 보상계약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최초 감정평가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협의가 안되면 재결감정을 실시하며, 이때 감정평가 금액이 무조건 상승하는데, 이를 빌미로 외부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을 지체하도록 부추기는 상황

- 과도한 재산권 행사로 인한 보상금의 증액은 산업용지의 분양가에 전가되어 수요자인 기업가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됨

■ 개선방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50%이상 협의가 된 산업단지 사업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수용의 권한을 주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9. 1., 2016. 12.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8. 12. 31.>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31.>

③~⑧ <생략>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전동의서를 65%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동의 받으라는 규정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전동의를 받았습니.

빠른 협의를 위해 3~4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사전동의 64% 받았습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양식을 천천히 살펴보니 **사전토지확보(취득/동의)비율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이 시작도 안됐는데 토지취득률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허가받은 산업단지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적어도 70% 이상은 적어내야 협의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토지확보비율을 75%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조건부동의로 협의를 완료되었습니다. 조건부동의 회신공문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완 계획상 75%의 사유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여 제시한 협의 취득률을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었고, 꼼짝없이 75%를 달성해야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유지 60%를 달성했습니다. **현행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2조에는 "50%만 달성하면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75%를 제출했으니 무조건 75%를 맞춰오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어쩔 수 없이 75% 달성을 위해서 토지주를 찾아가 정당하게 평가된 **감정금액에다가 50% 이상 웃돈을 주고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한 60%의 토지 소유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대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옳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협조해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 0억, 종업원 5명, 총복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일부 개정(18.12.31.)되면서 기존 의견청취 기관이었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협의 기관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업인정 협의가 필요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업인정 협의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충족해야만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개발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어 토지수용 신청 전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임
- 또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지 확보비율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있긴 하나, 사업시행자가 실제 기준(3분의 2이상, 약 67%)이 아닌 70%~80% 정도로 제안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토지협의 취득률을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작성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음
-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와 협의 절차 후 토지수용 신청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의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 권한이 발생하여 토지수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작성·제출한 협의 요청서 상의 토지협의 취득률에 도달해야지만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의 입장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자부담, 공사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 보상율을 높여 토지를 취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추가보상금 증가 등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 또한 증가하므로 토지수용 신청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업인정 협의 프로세스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개선방안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 양식에서 ‘주민 사전동의’ 및 ‘토지협의 취득률’ 기재 부분 삭제 또는 ‘토지협의 취득률’ 관련,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의 토지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 기준인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업인정 협의를 위해 ‘주민 사전동의’를 받고, ‘토지협의 취득률’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 추진과정상 어려움이 매우 크며, 비합리적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 상에 기재한 ‘토지협의 취득률(사유지 확보비율)’과 실제 토지확보비율이 상이하더라도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확보 충족 시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토지수용)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의 목소리

인천의 명물인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이 급속한 시설노후화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이렇게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천종합어시장은 인천의 자부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을 구매하면서 인천을 이해하고 인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천종합어시장이 건립 된지 45년이 지났으며, 현재도 2천명의 상인 및 근로자가 일하면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콘크리트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교통난 및 주차난도 가중되는 상황이며, 고객 유인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연안부두 물양장 정비사업지역”이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인천종합어시장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들은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 수산물 판매업체, 매출액 10억, 종업원 4명, 인천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종합어시장은 1975년 인천 중구 향동에 설치되어 황해안 인근 연안에서 인천 어민이 포획한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국내 수산물 유통의 집결지 역할 수행
- 준공 후 45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 수평균열, 철골변형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교통난 및 주차난 가중, 입주민과의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2005년부터 이전을 추진 중
-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연안부도 물양장 정비사업”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여 조합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해당지역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 획득 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으나, 인천해양수산청은 수용불가로 회신

■ 개선방안

- 인천해양수산청은 인천종합어시장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사업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지원 요망

*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자”가 항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

■ 관련법령

- 항만법 제2조 제5호(항만시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가능시설

- ⑧「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에 따른 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 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런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16곳(50.9%)은 소멸위기를 맞닥뜨렸거나 조만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공단지는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습니다.

전국 지방 14개 시·도, 123개 시·군, 476 읍면에 입지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의 저수지로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남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농공단지의 61%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단지로, 슬럼화 진행되고 있음
 - 시설 노후화, 인력난 심화, 경영능력 취약 등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
- 농공단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

■ 개선방안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성해 평가진단의 실시
- 지역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대응을 위해 농공플랫폼(온오프라인 센터 및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원근거 마련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 제5호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①항11,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 관련법령

- 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74조(사업) 1항 11.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7. 7. 26., 2018. 12. 31.>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제25조 입주기업 지원 등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관리·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용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4조(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입주기업체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영연수
 3. 입주기업체 경영자에 대한 단계적 국내외 연수실시
 4. 수출지원 및 대기업과의 판매계열화 알선 등
 5.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입주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거래 판매 행사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 등 기준이 같을 경우에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5조(입주기업 지원)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 농공단지 입주유치 및 상담 업무
 2. 농공단지 입지실사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3.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4.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의 관리
 5.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 업무
 6.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업무
 7.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
 8.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
 9.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 업무
 10. 기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 제5호 업무소관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현장의 목소리

농공단지의 입지와 조성 특성상 다부처의 지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1년 7월에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종합하여 2022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고시 제2022-12호)"(이하 "통합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통합지침 제42조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의무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남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광역 시·도와 시·군·구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광역 시·도의 조례는 '농공단지협의회'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시·군·구의 조례에는 '입주기업협의회'에 대한 규정만 존재
 - '입주기업대책위원회' 설치의 의무가 아닌 자율규정으로,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시·군·구 등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들에 의한 관리와 지원이 전무함
 - * 유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등

개선방안

- '입주기업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통합지침" 개정

개정전	개정후
제4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한다.

32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지정 합리화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하남시는 전체면적의 77%(71.89km²)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법』에 의거해 하남시 총면적(93.1km²)의 87%(80.95km²)가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규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다보니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적용 지역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신·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표준세율 2% -> 중과세율 6.7%)를 부과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 하남시

현황 및 문제점

- 하남시는 현재 하남교산신도시(총631만m²)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자족용지(92만m²)에 4차 산업 확보 및 기업유치를 추진
-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3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정부가 표방하는 자족도시 건설이 요원한 상황

개선방안

-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기 신도시에 한해 해당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시행령 별표 1 개정)하고,
 - 공업물량 배정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이전 시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면제 추진으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개정 필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6. 하남시(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추가)	16. 하남시 중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지역 (신설)

33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최대대지규모 완화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최대 대지규모 완화가 절실합니다.

자동차 쉐어링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이 있는 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취락 지구로 편입되어 그린벨트가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공장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 **기존 건물 500평 1동이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최대대지 규모 300평 규정에 묶여 건물을 분리해서 건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변경**을 건의합니다

- 자동차 쉐어링업체, 경기 하남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은 집단취락 중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하여 그린벨트가 우선해제 된 상황
 - 대지규모 현황 : 최소 230㎡~최대 1,000㎡
 - 건 폐 율 : 60%, 상한용률 180%
- 이와 관련 우선해제취락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1,000㎡이상 건축이 불가하여 기존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별도를 지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편과 비용부담 초래

■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관리계획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1-8의 일부 개정 → 지자체 여건 감안, 시·군수가 최대대지 규모 변경 가능토록 개선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 도로 계획한다.	----- ----- 다만, 지구단위계획 상 최대대지 규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변경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Ⅲ. 인증 · 검사

현장의 목소리

KC인증이 의무인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은 들어보긴 했어도 임의인증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경표지 미인증 제품(수도꼭지, 샤워기)을 설치하면 관련 지자체의 수도사업소에서 준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폐기하고 다른 인증제품으로 재설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공공조달의 영향을 받는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이 없는 제품은 설치를 할 수 없어 유통시장 및 개인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설령 환경표지 인증에 부합하는 제품(샤워기 토수량 1분에 7리터)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물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KC인증이나 KS인증과 중복되는 환경표지 인증을 추가적으로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임의인증임에도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환경표지 인증이 사용되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복된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심사 제 비용을 대폭 경감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 수도꼭지·샤워기 제조업체, 매출액 134억, 종업원 38명, 경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환경표지 인증 마크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소비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환경부가 현장 중소기업의 의견이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
- 특히,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인증 유효기간(3년)은 짧아 업체의 비용부담(경기소재 A업체의 경우 3년간 2,232만원)이 과도함
- 일부 제품 품목은 환경표지인증은 기존 KC인증(의무인증)이나 KS인증(임의인증)에서 수치만 강화된 수준인 경우도 존재
 - 중복된 인증으로 인해 인증 관련 비용이 과하여 업체에 큰 부담
- 환경표지인증 마크는 임의인증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실제 준공검사 시 환경표지 인증이 없는 제품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무인증처럼 운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개선방안

- 중복된 인증제도를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통폐합
 - 기존 KS인증이나 KC인증에서 수치만 강화된 수준인 경우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서 삭제(폐지)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심사 제비용(수수료, 인증심사비 등) 대폭 경감, 인증 유효기간 확대
 - 인증심사 제 비용 경감 : 유사 모델 제품의 경우 인증심사 비용 통합 부과 등 제도 개선, 인증 수수료(현 제품당 5만원) 인하 등
 - 인증 유효기간 확대 : (현행) 3년 → (개선) 5년

■ 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6조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그간 환경성적표지제도를 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작성지침 개정안이 발표되어 당황스럽네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EL741 단련용 구리합금 관련 인증을 개정할 때에는 당연히 저희 회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간 저연황동·무연황동·내식황동 등 단련용 구리합금 관련 인증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관련 프로세스의 전산화를 핑계로 **기준이 모호하다며 인증을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고, 이러한 애로에 대해 건의를 하면 담당자 변경 등으로 그간 제도 운영에 대한 히스토리를 몰라 **이유와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내식성과 Pb 함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인증비용이 발생**하고, **원소재 가격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계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비철금속 전문제조업체, 매출액 5,900억, 종업원 405명, 경기 시흥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인증사례를 바탕으로 개별지침 대상 제품군을 확대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 통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추진
- EL741 단련용 구리합금의 경우 기존에는 내식성(무연·저연)과 납(Pb) 함량 등 2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받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납(Pb) 함량 기준은 삭제되어 유형이 단일화됨
 - 납(Pb) 함량 기준 삭제에 따라 별도의 인증이 아닌 납(Pb) 함량 기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더불어 내식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인증 비용이 발생
- 특히 EL741 인증의 경우 특정 업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

- 그동안 환경 관련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도, 의견 반영의 어려움 및 의견 적용가능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업계 애로 가중
 -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건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개선방안

- 단련용 구리합금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준 현행 유지
 - 내식성(내식활동), Pb 함량(무연·저연활동) 구분하여 인증

■ 관련법령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전문 EL741, 단련용 동 합금

기준	개정안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무연 동 합금에 대한 납(Pb) 용출량 시험 결과로 무연 여부를 평가하며, 동 합금을 제조할 때 납(Pb)을 첨가하지 않아 납(Pb) 함량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	<삭 제>
3.2 저연 동일 용도의 동 합금에 비하여 납(Pb) 함량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 비고. '저연'과 '무연'은 동 합금의 납(Pb) 함량 수준과, 주어진 용출 조건하에서의 납(Pb) 용출 시험 결과로 구분한다.	<삭 제>
3.3 내식 동 합금에 대한 평균 부식 깊이 시험 결과로 내식성을 평가하며, 동 합금이 물 및 친수성 유체와 접촉하는 조건에서 탈금속이 억제될 수 있는 특성	3.1 내식성 구리합금에 대한 평균 부식 깊이 시험 결과로 내식성을 평가하며, 구리합금이 물 및 친수성 유체와 접촉하는 조건에서 탈금속이 억제될 수 있는 특성
3.4 무연·내식 동 합금이 '무연'과 '내식'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	<삭 제>

3 각종 인증취득 시 규격별 중복인증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가구제조업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임에도 규격(크기)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규인증 취득이나 갱신 시 중복해서 인증취득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광주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가구, 기계업종 등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 향상 및 판로확대를 위해 각종 인증 취득이 필수적임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환경표지(친환경)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 주요인증 현황〉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 GS인증, ICT융합품질인증, 혁신시제품 인증, KC인증, KS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단체표준인증 등

-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증취득 및 갱신(유지)하는데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20.5.19)

- 63.7%가 인증비용 부담 응답(연간 평균 인증비용 2,180만원)
- 가장 시급한 정책지원 : 인증취득 비용지원(40.3%), 서류 간소화(39.0%)

※ 광주 A가구 제조업체 환경표지인증 수수료(예시)

- 2019년(제품수량 80개) : 갱신수수료 4,020,060원, 사용수수료 3,463,419원

■ 개선방안

- 인증취득 시 규격별로 인증취득비를 부담하는 것을 제한하고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품질의 차이가 없는 제품군별로 분류하여 부담 최소화 필요

현장의 목소리

안전인증 심사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 제품을 정해진 기간 내 수입 및 출시가 어렵고, 특히 계절가전의 경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평소 이용하던 인증기관에 안전 인증을 받으려 하였지만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 다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자제품 수입유통 및 제조업체, 매출액 25억, 종업원 5명, 경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은 물론,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이와 관련 현재 안전인증 3개 기관(KTC, KTL, KTR)의 인증을 받기 위한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신제품 출시, 특히 계절상품의 경우에는 시기성 문제로 인해 판매가 어려운 실정
- 또한, 정기검사를 인증기관 3사가 모두 분리하여 운영하는 상황에서, 기관별 안전인증 처리시기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이 아닌 타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정기검사 유효기간(2년) 시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재실시*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개선방안

- 안정인증 기관 확충 또는 안전인증 기관별 심사기간 단축방안 마련
- 정기검사 통합 관리

■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7조

5 중소기업 인증제도 창구 단일화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부처별 인증제도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각 부처별로 인증 제도를 개발하여 협회와 단체들의 수익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찾아서 신청하는 것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된 인증 플랫폼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IT기업, 강원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각종 사업의 가점 수단으로 부처별 중소기업 인증 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각종 부처나 협회, 단체들의 인증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이 각종 단체들의 수익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는 수요기관이나 부처 등에 대해 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와 같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
 - 이에 새로운 인증이 나오면 취득할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인 행정 및 금전적 비용이 투입되어 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 개선방안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인증 플랫폼 구축 요청
 - 플랫폼에서 부처별 정보를 한눈에 확보하고,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점검 및 현장실사 회신 등 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장의 목소리

건축법 개정(2020.12.22.)으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가 시행(2021.12.23.)돼 방화문은 이 법에 따라 새롭게 품질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방화문 관련 많은 중소기업은 현재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국면에 처해 있고, 전혀 대응과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의 현장 점검, 성능 시험 항목은 KS 인증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방화문 업계에서는 KS 인증도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또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품질인증제도로 품질관리 인력 부족과 심사수검 비용 증가, 절차상 평가 소요 기간도 몇 배로 늘어나 기업경영활동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KS인증 업체의 경우 건축자재 품질 인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 금속 제조업체, 매출액 105억, 종업원 36명, 천안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법이 개정('20.12.22. 공포)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 내화 구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등은 정부 지정기관을 통해 인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됨('21.12.23.)
- 동 제도 관련 행정규칙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4호)에서 ‘인정절차’, ‘인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방화문의 경우 품질인정 절차(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 품질시험)가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KS 인증심사 절차(공장심사, 제품심사)와 유사하고, 평가 및 시험항목(KS F 3109, 문세트)도 유사 중복됨
- 한편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에 따라 KS 인증 제품에 대하여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각종 법정 의무 인증, 검사,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인정절차와 평가항목이 유사 중복되는 방화문 등 건축자재 품질인증은 KS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심사를 면제하여 중복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

- 건축법,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방화문 등에 대하여 KS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품질인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 건축법 제52조의5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6조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증명·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 ~ 6. (생략)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8.~ 18. (생략)

7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샌드위치 패널)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정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 인정제도를 확대해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무기질 단열재에 대해서는 시험면제라는 특혜를 주면서 중소기업이 주로 다루는 **유기질 샌드위치 패널에는 재료시험, 복합자재 실물모형 시험, 외벽 복합 마감재료 실물모형시험이라는 3중 시험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샌드위치패널용 실물모형시험과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은 어느 나라에서도 강제로 법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을 시행할 설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 면으로 보아도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2,500억원에 달해 총 매출액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샌드위치패널에 대해 실질적 실물화재성능시험만 적용하고, 명확한 시험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의 시행유예를 두기를 건의드립니다.

-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20.6)과 「건축법 개정」(’20.12)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 추진
 -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의 경우, 설치·양생기간·철거 등 약 1개월 소요
 - 시험이 가능한 설비는 2개소(건설연, 건자재시험연 삼척)이며, 향후 시험설비의 증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시험설비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시험 신청이 어려우며, 시험접수 후 대기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업계가 부담해야 할 시험 비용은 약 2,500억 원 이상, 이는 유기질 단열재 산업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것임
- 유기질 단열재에 대한 시험 강화로 해당 기업 경영환경 악화 초래
 - 재료시험(콘칼로리미터시험),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외벽복합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도 추가 발생 → 3중 시험규제

■ 개선방안

-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KS F 8414 시험의 강제시행 중단과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실질적인 실물화재성능시험 규정(KS F ISO 13784-1) 적용
- 국민의 화재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적 성능확보를 위하여 시행 유예기간(최소 3년 이상) 필요
-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 및 결과판정 등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시험기준 제시 필요
- 재료적 모순성으로 구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열방출시험(콘칼로리미터)의 판정 기준인 용융 수축조항의 근거 명확화, 불합격 판정기준으로는 무의미하므로 삭제
- 화재성능 실물모형시험은 시험기관의 절대부족, 대기시간의 불특정으로 인한 기회손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관련 업계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여건 조성 선행

■ 관련법령

- 건축법 제52조의5, 제52조의6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2012년 7월 1일부로 LED 조명기구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많은 조명업체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조명기구가 전자파적합등록대상에 포함됨으로서 인증 취득비용이 5배 상승하였으며, 이관 초기단계에 인증지체현상으로 업체의 혼선이 어마어마했어요.

또한, 2018년 4월 24일에는 LED 조명기구는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제품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하겠다는 조달청의 공지에 따라 하루 아침에 판매금지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LED 조명기구 388개 제조업체가 약식기소 및 행정심판소송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후 수차례 민원 및 개선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으며,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었어요. 이번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의견 전달 및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조립 컴퓨터는 내부 부품인 전원장치 인증 시 면제인데 왜 LED 조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주지 않을까요?

- 전등기구 및 LED제품 제조 관련 조합, 조합원사 119개사

현황 및 문제점

- 가정 및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립 컴퓨터(PC)의 경우 완제품은 전자파 적합등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컴퓨터 부품인 파워 서플라이(전원변환 공급 장치)가 전자파 인증대상이므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파워 서플라이를 활용한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 국내 KC인증 중 전자파인증(적합성평가)은 기본적으로 완제품 단위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립컴퓨터 특성상 많은 부품 중 하나의 부품만 변경되어도 전체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완제품에 대한 인증의무를 면제를 하고 있음
- 컴퓨터의 경우 고가의 품목으로 제품가격 대비 인증비용 부담이 적겠지만 LED 조명기구의 경우 컴퓨터 대비 10%정도의 가격으로 제품가격 대비 인증비용 부담이 높으며, 제조사 및 품목(모델)도 다양하여 엄청난 인증비용이 발생

- 동일한 방식의 제품구조인 조립컴퓨터는 완제품 인증 면제이나, 중소기업 생산품인 LED 조명기구는 완제품도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LED 조명기구의 완제품 대상 인증은 엄연한 중복 인증으로 과도한 기업 부담

■ 개선방안

- LED 조명기구의 컨버터(전원공급장치) 전자파적합인증 완료시 완제품 면제
- 위 개선방안 수용 불가 시 KS인증과 동일하게 구간별 인증 수용
 <LED전등기구, KS인증 구간별 인증>

- | | | |
|-----------------|-------------------|----------------|
| ① 10W 이하 | ② 10W초과 30W 이하 | ③ 30W초과 60W 이하 |
| ④ 60W초과 100W 이하 | ⑤ 100W 초과 300W 이하 | |

■ 관련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현장의 목소리

공장을 2019년도에 설립하면서 당시 HACCP 인증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ACCP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HACCP 담당 인력까지 배정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게다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매년 공장을 방문해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더 확대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장신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공장도 21년도에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장을 위해 또 현장조사를 나와서 평가하고 연장신청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어차피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사를 받고 있으니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별도로 연장신청을 번거롭게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인증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기업들이 좀 더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100억, 종업원 30명, 경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식품 제조와 관련해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법 제48조2에 따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2에 따라 유효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에 따라 HACCP 인증업체를 매년 정기조사·평가하고 있는 와중에, 인증 연장을 위한 추가적인 과정과 비용 부담은 규제로 여겨지고 있음
 - HACCP 인증업체는 매년 정기조사를 받고 있으며 식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유효기간을 3년보다 길게 두거나,
 - 인증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없이 매년 이뤄지는 정기조사에서 우수한 평가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대해선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필요

■ 개선방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연장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기보다는 매년 이뤄지는 정기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자동연장제도를 도입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유아의류 및 언더웨어 전문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생산)업체로 주로 어린이용 의류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제도에 따른 유아복 시험검사의 기준은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유아용섬유제품의 세부분류 기준에 맞춰 구분과 종류에 따라 안전확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분류 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같은 원자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구분에 맞춰 중복하여 의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인력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낭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 유아용 섬유제품 제조업체, 매출액 40억, 종업원 22명, 전북 전주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인증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인증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한 후 제품을 출고
- 그러나, 영세한 봉제 업체에서는 복잡한 안전인증제도의 규칙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또한 시장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계속 개발 되는데도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선
- 예를 들어 “유아용 배넛우주” 제품의 경우 구분을 우주복(내의류)으로 봐야 할지 배넛저고리(신생아 용품)로 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중으로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

■ 개선방안

-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세분화 되어있는 안전인증제도의 구분요건 단순화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1 유아용품 KC검사 비용 부담완화

[산업통상자원부]

현장의 목소리

유아동용품의 환경호르몬 검출 및 유해성분 검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너무 과도한 검사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같은 원단이나 같은 부자재의 경우에도 각각 검사비용을 들여 건당 100만원 하는 검사비용과 필요이상의 검사 규제로 일부 제품은 기획 단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어린이에 유해한 품목 지정', '같은 소재나 같은 부자재 사용한 경우 검사 면제 또는 부분적 검사 시행'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 장난감 제조업체, 매출액 6억, 종업원 3명, 서울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모두 어린이제품 KC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함
- 제품개발을 하게 되면 KC인증을 위해 설계 변경을 해야 하며 상당시간도 소요됨
 - KC인증 시험 기간만 보통 3-4주 정도가 걸리며, 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약 80-100만원 정도에서 액상이나, 인쇄, 코팅 등 유무에 따라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비용이 발생
- 중복시험, 짧은 유효기간(5년) 등으로 기존에 합격한 제품을 다시 검사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각종 부대비용 등 업체부담이 가중됨

개선방안

- 중소기업계 시험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차원 대책 마련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2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 및 보완기간 연장

[행정안전부]

현장의 목소리

승강기 인증제도는 유럽의 기준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대로 도입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6개 부품만 강제 인증 받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20개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기간도 두달 반이나 걸립니다. 심사받고 보완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한 달의 시간만 부여됩니다. 불합격하면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부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완성품도 인증 받을 수 없다보니 도저히 납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승강기 인증심사의 경우 신청 및 심사기간이 2.5개월 소요되고 보완기간이 짧아 (1회, 1개월) 상당수 불합격
 - 불합격률이 높은 상황에서 재신청을 하는 기업이 대다수로, 추가적인 인력과 행정비용 등 이중 부담 발생
- 승강기 부품에 대한 인증이 이뤄지지 않을 시 승강기 완성품에 대한 인증신청도 불가능, 납기지연 문제도 야기

<참고 : 승강기 인증별 처리기간 및 보완기간>

	승강기부품 인증	모델승강기 인증	개별승강기 인증
처리기간	서류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 시험완료 후 신청인에게 통보 ※ 부품특성상 안전성시험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 만큼 연장	서류 접수 후 90일 이내 심사, 시험완료 후 신청인에게 통보 ※ 승강기특성상 안전성시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 만큼 연장	서류 접수 후 20일 이내 개별인증 설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보완기간	설계심사에 한하여 1회만 보완하되 1개월이내 보완		
	공장심사에 한하여 1회만 보완하되 2개월이내 보완 ※ 1개월 이후 종결처리, 서류 및 인증비 다시 납부		※ 공장심사 제외 ※ 1개월 이후 불합격처리, 서류 및 인증비 다시 납부

■ 개선방안

-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승인 모델과 동일한 모델의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절차 간소화)
- 1개월 보완기간 별도 두지 않고 보완사항 충족할 때까지 재심사 유예
 - * 불합격 시 500만원 수수료 재납부, 1,000페이지 기술서류 재제출 해야 함

■ 관련법령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7조·제28조
-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 규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승강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현장의 목소리

재사용배터리의 경우 안전성에 치중되다보니 셀별 전수검사 비용증가로 인하여 재사용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도 검사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조원가가 높아져서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감안하고 제품화에 성공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여도 KC인증 등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태양광 및 ESS제조업체, 매출액 140억, 종업원 51명, 제주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논의 되고 있는 단계임
- 이와 관련 안전성에 치중되다보니 재사용배터리에 대한 셀별 전수검사 비용 증가로 재사용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도 검사비용이 너무 비싸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짐
- 또한,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원자재가 재사용 제품이라는 이유로 KC인증 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
-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화의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배터리의 판매단가 현실화가 절실함

■ 개선방안

- 판매가격을 고려한 제품화 단계에서의 시험기준 및 비용 현실화
- 자원순환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적 전략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KC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

■ 관련법령

- 현재 사용 후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수거·회수에 관한 법령만 존재하고 이외 해체, 성능검사, 안전검사, 활용, 폐기 등의 절차와 관해서는 법령이 부재

14 가스농도 측정방식을 광산현장에 부합하도록 변경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

현장의 목소리

현재 광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작업장의 유해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받아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는 현실을 모르고 실시하는 가스농도 검사에서 발생합니다.

광산업의 프로세스는 크게 6가지로 진행됩니다. 천공, 장약, 발파, 부석제거, 원석 상차, 작업장 정리 이렇게 됩니다. 각 프로세스별로 작업자가 일을 수행하며, 그 중 기계장치를 오래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1개 프로세스별 작업량은 약 2시간으로 1일 평균 2~4개 프로세스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유해가스는 처음 작업장에 들어갈 때 매우 낮게 측정되나 작업이 진행되며 장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해 유해가스의 농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기계장치 사용유무에 따라 배기가스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검사자의 임의에 따라 1~2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1~2곳이 기계가 오래 가동되었던 곳으로 정하게 되면, 당연히 유해가스농도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업체는 증장비 사용금지, 작업중지 등을 처분받게 됩니다. 현실과 다른 가스검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산업현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에, 법에서는 유해가스농도 측정을 8시간 하여 평균농도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광산업 프로세스별로 1~2시간씩 나눠서 총 8시간을 측정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근로자의 동선과 머무르는 시간을 고려하여 8시간 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맞고 산업 현장에도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광산업체, 매출액 770억원, 종업원 133명, 서울-제천-삼척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광산업 운영 위해서는 법적으로 작업장의 유해가스농도 주기적 측정 필요
- 광산현장에서는 광산업 프로세스(천공, 장약, 발파, 부석제거, 원석 상차, 작업장 정리)로 나눠서 작업을 하며,
 - 그 중 기계장치를 오래 사용하여 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프로세스에서는 2시간 마다 작업장을 변경하고 있음
 - 아울러, 근무시간 8시간 중 갱외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존재함

- 그러나 가스농도 측정은 원칙 없이 검사자 임의에 따라 1~2곳에서 이뤄짐
 - 1~2곳이 장비 가동이 오래된 곳일수록 가스농도는 높게 측정됨
 - 해당업체는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프로세스와 괴리가 큰 검사진행임에도 억울하게 중장비 사용금지, 작업정지 등을 처분 받게 되는 게 현실

■ 개선방안

- 유해가스농도 측정을 8시간하여 평균농도로 결정한다고 규정된 만큼,
 - 광산업 프로세스별 1~2시간씩 나눠 총 8시간을 측정 또는 실제 근로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1~2개소 이상 측정 후 8시간 평균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측정방식의 개선 필요

■ 관련법령

- 광산안전기술기준

제6조(유해가스) 광산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갱내 공기중 유해가스는 작업시간 8시간 동안의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조작업 등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책임하에 안전조치(산소흡입기, 국부통기시설 등)를 이행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

현장의 목소리

현재 광산 현장에서는 화약장전을 위해 '장약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약차는 통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암포차저 또는 차량기계로 분류되는 차량용 장약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포차저와 차량용 장약차 모두 바퀴로 이동하며, 장약기능을 탑재하는 등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차량용 장약차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 뿐입니다. 최근에는 광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작업처리속도 향상을 위해 암포차저 보다는 차량용 장약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는 장약차 사용을 위한 '성능검사'에서 발생합니다. 형태와 기능이 동일함에도 암포차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차량용 장약차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두 군데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암포차저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 광산으로 방문하여 검사해주고 유효기간이 2년인 반면, 차량용 장약차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차량부문'에 대해 6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장약부문'에 대해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에는 검사장소까지 차량을 가져가야 해서 6개월마다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암포차저와 차량용 장약차가 형태, 기능, 사용목적 등 사실상 동일함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일원화 및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공단에서 직접방문 및 검사한다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작업 중단기간 감소 및 검사비용 절약 통해 광산업무에 집중하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광산업체, 매출액 770억원, 종업원 133명, 서울-제천-삼척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광산현장에서는 화약장전을 위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암포차저 또는 차량기계로 분류되는 차량용 장약차 사용 중
 - 2개 모두 바퀴로 이동하며, 장약기능을 탑재하는 등 동일 형태·기능 보유
- 비합리적인 규제는 장약차 사용을 위한 '성능검사'에서 발생
 - 암포차저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 방문 및 유효기간이 2년인 반면, 차량용 장약차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차량부문'에 대해 6개월 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장약부문'에 대해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
 - 도로교통공단은 검사장소에서 진행함에 따라 매 6개월마다 작업이 일시 중지됨

■ 개선방안

- 암포차저 및 차량용 장약차가 형태, 기능, 사용목적 등 사실상 동일함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하여
 - 검사 위한 차량이동으로 작업 중단되는 기간을 줄이고 검사비용을 절약하는 등 기업운영에 효율성 제고 필요

〈차량사진〉



■ 관련법령

- 「광산안전법」 제9조(성능검사 등)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 도로상태가 5~60년대 비포장도로 수준도 아니고 자동차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이 시대에 **최대안전경사각도는 수십 년 전 아주 오래된 예전 규정 그대로인 35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들이 첨단안전장치를 의무 장착한 후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점점 안전하게 제작되고 있고 사고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최대안전경사각도를 대폭 완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고유가 시대에서 유류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안전경사각도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자동차를 제작할 때 경량화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차량 무게의 감소로 남은 만큼 더 많은 화물도 실을 수 있으며 연비 감소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없는 등 국제기준에서도 실차시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이 과도한 최대안전경사각도를 규제하는 것은 다양한 자동차 생산을 제한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 자동차 제작 관련 협회,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규정되어 있는 최대안전경사각도(차량을 좌우로 기울였을 때 전복되지 않는 각도) 35도 등의 기준은 과거 우리나라의 열악한 도로상황과 낙후된 자동차 제작기술이 존재하던 60여 년 전의 1962년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는 기준
 - 규제 준수를 위한 차량 하중량 증가로 인해 화물적재량 감소, 유류비용 증가 등 자동차 제작 시 비효율 초래
-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상태(전국에 35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도로가 없음)와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속도제한 장치(90km/h), 차로이탈방지장치, 비상자동 제동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차량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으로 인해 전복사고의 위험성이 거의 없음

■ 개선방안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규정된 현행 최대안전경사각도 35도 규정을 30도 이하로 완화
 - 차량의 연비 제고 및 화물적재량 증가
 - 규제 완화로 인한 다양한 특장차 제작(냉동차, 냉장차, 탑차, 윈바디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특장차 제작 산업의 발전과 국가 물류 및 운송사업 활성화

■ 관련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 2호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현장의 목소리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지난 30년간 국가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며 제 소임을 다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요건 강화**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5년 의정부화재, 2017년 제천화재, 2020년 이천화재 등을 거치면서 **단열재 규제는 더 강화됐고 덧칠**이 되었습니다. 과거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은 안전수칙에 따른 관리시스템 부재와 안전수칙 미준수, 시공 절차상 올바른 소재 선정 및 시방서에 따른 정확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없애자는 일차원적인 사고로 단순히 유기물 자재를 건축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요건을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인명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소비자의 선택 또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 건축단열재 제조업체, 매출액 56억, 종업원 14명, 충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 (22.2.11.)하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건축자재 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강화
- 이에, 건축물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단열재의 외부 표면(강판) 뿐만 아니라 내부를 구성하는 심재까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하며, 화재성능 시험방법도 기존의 소규모 샘플에 대한 '난연성능 시험(KS F ISO 5660-1)'에 추가로 실제 건축물모형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KS F 8414)'까지 모두 통과해야 함
- '실대형 화재성능시험(KS F 8414)'의 경우 실내 화재 발생 후 실내 가연물의 전부 연소로 인한 화염의 개구부 분출에 따라 외벽에서의 수직 화염 확산만을 고려한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단열재 자체의 화재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한 시험방법이므로 시험방법의 현실화 필요
-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외벽마감재별 성능시험, 취급 단열재의 두께별로 성능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등 고가의 시험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가중

■ 개선방안

- 복합자재의 심재에 대한 준불연 이상 성능 충족 기준 삭제
 - 복합단열재는 심재의 취약한 난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재료를 활용하여 난연성을 개선한 것으로 복합자재의 심재에 대한 별도 화재 성능시험이 아닌 실제로 생산·시공하는 완제품에 대한 성능시험만을 통해 화재 안전성 판단 요청
- 외벽 복합 마감재의 성능평가를 ‘실대형 화재성능시험(KS F 8414)’이 아닌 단열재 자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FM 4411’ 등의 시험방법으로 채택 요청 (※ 기대효과 : 비용 절감 및 화재성능 측정의 정확성 제고)
 - 현행 ‘KS F 8414’의 시험 비용은 약 3천 5백만 원인 것에 반해, ‘FM 4411’은 약 5백만 원으로 약 7배 정도가 차이이며, 마감재의 화재성능 평가인 ‘KS F 8414’ 시험 시, 두께별 단열재 제품이 사용된 마감재별로 각각 시험을 시행해야 하므로 단열재 자체의 화재성능 시험인 ‘FM 4411’ 보다 시험 횟수가 많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무리인 상황임

* 자사 기준 시험 비용 : (KS F 8414) 약 490백만원(35백만원x14건(2개 제품x7가지 마감재))
(FM 4411) 약 10백만원(5백만원x2건(2개 제품))

<화재성능시험 비교(현행 : KS F 8414 / 개선안 : FM4411)>

구 분	KS F 8414	FM 4411
성능시험 대상	벽체 구조의 화재성능 시험(마감재 성능 평가)	단열재 자체의 화재성능 시험
측정 항목	단지 온도만 측정	열방출률 + 화염 높이(화재 확산 직접요소)
크 기	주벽 폭 2.6m x 높이 8.0m x 측벽 폭 1.5m	폭 1.2m x 높이 2.4m
판정 기준	①15분 이내 5m 지점 온도가 30초동안 600℃ 이하일 것	①최대 열방출률(kW) < 100 ②최대 화염높이(m) < 1.8
시험 비용	약 35백만원 내외 *시험비용 13.5백만원 + 시험체 설치·해체·마감자재 비용 20백만원(화강석 기준) (폐기물처리비 별도)	약 5백만원 내외 *시험비용 4백만원 + 시험체 설치·해체비용 1백만원
시험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방재시험연구원
시험대기 소요기간	신청 후 1년 이상 대기 *23년까지 예약 마감, 현재 대기 접수만 가능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시험 가능
시험 소요기간	(건식 구조) 최소 1주, (습식 구조) 최소 3주 이상	1.5일 소요
특 징	외벽에서의 수직화염확산만을 고려한 온도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단열재 자체의 화재하중과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①단열재 자체의 화재하중과 수직연소성을 정량적지표로 측정가능 ②중공층이 반영된 단열재의 화재 특이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
비 고	-	미국 화재보험협회에서 채택·사용

■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⑨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 다. 도금의 부식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 1) ~ 5) 생략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text{MJ}/\text{m}^2$ 이하일 것
 -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text{kW}/\text{m}^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현장의 목소리

목재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방출검사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환경부 표준 KSM 1998(건축내장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에 따른 데시케이터법 검사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국내 산업계 대부분 생산공장에서는 데시케이터 등의 시험장비와 검사 인력을 갖추어 자체검사공사 공장을 운영하는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22.1.3일부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실내용 목질바닥재 등 실내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방출 시험방법**을 기존의 데시케이터법, 소형챔버법 2가지 방식에서 **소형챔버법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데시케이터법, 건축자재 공급용 목재제품 환경표지 인증은 소형챔버법으로 해야 하다 보니, 건축자재용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소형챔버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검사기관을 통해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계는 목재제품 접착제로 사용되는 요소 및 원료 부족 사태로 가뜰이나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가운데 해당 규제까지 더해져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 목재제품 제조업체, 매출액 522억, 종업원 16명, 충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목재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방출검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경우, 데시케이터법 검사방식을 채택·시행해왔음
 - 이에 대부분의 목재제품 생산업체는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데시케이터 등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22.1.3.)개정으로 인해 실내용목질바닥재 등 실내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방출 시험방법을 단일화
- 즉 동일한 성분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는 데도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함
- 업계에서는 목재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고액의 소형챔버 장비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검사기관을 통해 별도의 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의한 목재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 시험 검사방식을 소형챔버법 법령 개정('22.1.3.) 전과 같이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 병행으로 개정

■ 관련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제4조(인증기준)

- ②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하여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이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19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주기 완화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타워크레인 검사가 과거에는 15일 걸렸는데 요새는 2개월 걸립니다. 검사업체가 1개에서 11개로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검사 일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공정을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위험합니다. 설치, 해체 모든 것을 급하게 하니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검사를 6개월에 한번 씩 받아야 합니다. 현장과 정말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타워크레인은 정기검사(이동 및 설치시마다, 6개월경과 시 재설시) 및 생애주기별 검사 등 횟수가 과도하게 책정된 상황
 - 타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
 - * 안전성검사, 비파괴검사(2년마다), 정밀진단(3년마다), 부품 인증제 등
 - 타워크레인 검사가 지속적으로 신설되면서 정기검사 적체현상 발생, 이에 설치 및 해체작업이 무리하게 실시되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짐
- 국토부 지정 위탁 검사업체에서는 ‘반입전 검사(법정X, 고비용)’를* 신청하지 않고 법정 ‘정기검사’만 신청할 시 검사를 거부하고 있음
 - * 검사업체에서 임의로 신설한 검사, 대부분 건설사가 법정 정기검사 외에 반입전 검사 강제하는 상황

■ 개선방안

- 정기검사 주기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 정기검사 신청에 대한 검사기관 검사 거부 금지
- 국토부 지정 검사업체의 ‘반입전검사’ 강제 관행 개선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장의 목소리

기계업종 조합이나 업계에서는 작년에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라는 목적은 알겠지만 **한번 성능점검을 받는 데 비용이 무려 수백에서 수천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몇 업체는 성능점검 견적을 받다보니 지나칠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기계업종 협동조합이 매년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점검을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수백만 원이나 물어야 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매년 수백~수천만 원 이상이나 들여 성능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도 어려운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입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할 여력이 있거나 점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계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구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기계설비법」 제16조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월 제정)이 마련된 이후 관련 기업은 매년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성능점검을 받아야 함
- 건축물 규모에 따라 점검시기를 달리두고 있으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계설비법 제30조)

건축물 규모	최소 점검시기
연면적 3만㎡이상 / 2천세대 이상	'21. 8. 9 ~ '22. 8. 8.
연면적 1.5만㎡ ~ 3만㎡미만 / 1천~2천세대 미만	'22. 4. 18 ~ '23. 4. 17.
연면적 1만㎡ ~ 1.5만㎡미만 / 500~1천세대 미만	'23. 4. 18 ~ '24. 4. 17.

* "연면적 3만㎡이상 / 2천세대 이상" 의 경우 점검 기한 22.12.31까지 연기

- 해당 기준으로 기계 업종 중소기업이 매년 성능점검을 받으면서 부담하는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원 수준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
- 심지어 성능점검업체에 따라 견적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애로가 많음

- 과도한 성능점검 비용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해당 법령과 기준은 기계설비산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라는 목적을 과하게 벗어난 수준임
- 기업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할 여력이 있음에도 매년 수백~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축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소규모·소용량 설비임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규제

■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 성능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소규모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지도를 통한 개선 필요
 - * 국토부의 최근 보도자료[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22.7.8)]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효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황

■ 관련법령

- 기계설비법 제16조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현장의 목소리

저희 조합은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앞으로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준수하지 못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합니다.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만 뽑으면 다 해결되나요? 자격증은 없지만 이미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정부가 기계설비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지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도 않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슷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도와주는 일인가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은 실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기, 소방, 건축물, 시설물, 기계설비 등과 관련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과 유사한 중복규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종업원 2명, 인천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일정 기계설비를 보유한 건물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필요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실무경력과 교육을 3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초급건설 기술인 또는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 기존 비자격 시설관리자들의 자격증 취득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본래 이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자들을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 설비관리 관련 직원은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것이 현실이며, 용역 업체 특성상 2년 이하 단기계약을 체결
 - 이에 현장에는 2020년 4월 이전부터 업무를 수행하던 관리자들이 남아있지 않음
- 향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우려됨

■ 개선방안

- 기존 비자격 시설관리자의 인정 요건 완화
 - (현행) 2020년 4월 18일 이전 근무자는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인정
 - (개선) 시행 6개월 전까지 채용한 인력도 위 기간까지 선임한 것으로 인정

■ 관련법령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현장의 목소리

고압가스판매사업 보다 상위 업무인 고압가스충전시설과 저장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은 공인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이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은 가스안전공사에서만 대행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판매는 대부분 액화석유가스(LPG)판매사업자가 검업을 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와 LPG판매시설 자율검사는 동일한 공인검사 기관에서 취급 가능하며, 동시에 자율검사를 할 경우 단가 인하요인도 발생합니다.

공인검사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유사한 업무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 경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고압가스 충전시설, 저장시설에 대한 검사대행은 공인검사기관이 판매시설의 검사대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 * 판매시설자율검사 : 상대적 중요성 낮음
- 고압가스 판매자들은 대부분 LPG판매사업자도 검업하고 있는데, LPG판매사업의 자율검사대행은 공인검사기관만 수행할 수 있음
 - 다른 품목에 대해 두 기관에서 유사한 검사시 가스판매사업자들의 번거로움만 가중되며 공인검사기관도 동시에 두 검사 수행할 시 단가 인하 가능

개선방안

- 검사기관이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관련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제4-1-5조

② 검사기관의 수를 당해지역의 검사대상물량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로 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검사수행물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게 확보된 것일 것

검사구분	기술인력 1인의 연간 검사처리물량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2,300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920건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	920건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	440건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자율검사대행	530건

23 고압가스·LPG 공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안전공사]

현장의 목소리 (1)

종래 조합은 공인검사 기관으로 승인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고압가스(LPG)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조합원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정책 개선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강화로 2020년부터 협동조합은 공인검사기관으로 재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조합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조합의 생존마저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합이 공인검사기관으로 승인받아 수행하였던 해당 업무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으로, 이는 조합원인 LPG판매업소가 스스로 자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불편하여 공인검사기관이나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은 일반 공인(전문)검사기관의 불공정 처리와는 결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조합'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경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 (2)

전북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1997년 LP가스판매시설 안전관리규정 검사 위탁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따라 매년 자율검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모든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사업자와 직접적 관계에 놓인 협회나 관련조합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으로 재지정 받을 수 없도록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는 LP가스판매업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율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는 법에서 정한 검사가 아니라 사업자 자체의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자율검사임을 감안할 때 변경된 고시 적용 예외 검사로 관련 조합도 자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절실히 요구 됩니다.

- 전라북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LPG판매시설 검사는 두 종류
 - 매년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 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하거나,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검사
- 조합은 자율검사에 대한 공인검사기관로서, 자율검사를 통해 조합원사에 가스정보 제공 및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 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과 LP가스판매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회원사간 정보 교류 증대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음
-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등을 사유로 고압가스 관련 검사기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스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검사기관에서 배제되었음
 - 기존 가스관련 협동조합이 검사기관으로 수행하였던 업무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으로, 조합원 스스로도 검사가 가능한 영역
 - 조합원이 검사대상이라 하여, 자율검사기관에서 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함

■ 개선방안

- 사업조합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LP가스판매시설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검사기관 지정요건 요건 완화
 -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지정기관 요건 중 다음 사항(1호 다목) 삭제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협회,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해당 검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닐 것

■ 관련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어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제4-1-5조

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협회,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해당 검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아닐 것

현장의 목소리 (1)

식품제조업을 하다보면 검사를 받아야할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히 성분 함유량이 표기대로 제대로 되었는지를 분기별로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분 함유량이란게 새로운 제품이 아니면 변동될 일도 없을뿐더러 생산방식이 예전 가내수공업도 아니고 **자동화가 이뤄진 상태인데 굳이 1년에 4번씩 검사**를 받는 것은 규제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연 4회 외에도 1년에 1번 통합검사를 받고 있어 시간을 많이 뺏기는 편이에요.

비용도 검사 한번에 품목별로 10만원 가량이다보니 1년에 여러품목 검사비용만 1,000여만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다른 가공식품은 6개월에 1회씩 받고 있다는데 검사 횟수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식품 제조(도소매)업체, 매출액 80억, 종업원 20명, 경북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도시락(이동급식) 사업 시작하고 지금까지, 항상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조리했습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위생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했죠. 특히 위생은 손님 건강에 직결될 수 있기에 청결 유지에 힘썼습니다.

그래도 이걸 너무 과합니다. 식품업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HACCP 인증도 받아야 하죠. 둘은 사실상 같은 검사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았다면 식품 제조과정에 위해요인이 없어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검증받은 건데, 또 비용을 들여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대부분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데, 검사기관은 제품 하나를 기준으로 검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만드는 저희 도시락(이동급식) 업체들은 **한번 검사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요.**

물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하니 식품 제조에 있어 안전관리는 필요 합니다. 다만, HACCP 인증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중복규제인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완화해 업체들의 행정·비용부담을 좀 덜어주십시오.

- 한국급식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 (3)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 등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연4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부 제조업도 이에 해당되어 매분기 자가품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검사의뢰시 원거리를 이동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다 검사비용이 건당 78,100원으로 제조하는 품목이 10가지만 되어도 검사비로만 년 3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영세업체에는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두부제조업의 검사항목은 대장균, 타르정도뿐이고 검사결과도 부적격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또 지방의 영세 두부제조업체의 주 생산품은 비포장두부입니다. 만들어서 바로 팔기 때문에 즉석판매 제조업자와 다를 바가 없는거죠. 그런데 즉석판매업자는 9개월에 1회인데 반해 두부제조업은 3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죠.

두부는 우리 고유의 오랜 전통식품으로 웰빙 건강 장수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품입니다. 대기업과의 무한경쟁에서 영세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검사기간을 완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두부류 제조업체, 매출액 43억, 종업원 15명, 충남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원재료 비율 등이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하며, 외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 (전국 62개 기관에서 위탁수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에 따라 3개월 마다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식품제조업의 성분 함량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변화가 없음에도 분기별 1회로 검사횟수가 과도하며, 분기별 1회 검사 외에도 연 1회 검사를 추가로 받는 등 검사 규제가 지나침
 - 게다가 검사비용 역시 품목별로 1회 당 약 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다수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검사비용으로만 연간 수천만원 가량 소요됨
- 자가품질검사 기준상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의 검사주기도 6개월마다 1회인데, 일반 식품에 대한 검사횟수가 분기별 1회인 것은 과도한 규제임
- 특히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이미 식품안전을 검증받은 업체로, 자가품질검사는 불필요한 이중 규제에 해당함

■ 개선방안

- 식품 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횟수를 반기별 1회로 완화
-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검사 주기 3개월 → 1년으로 변경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12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중략]…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나)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현장의 목소리

그동안 위생용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화장실용 화장지, 일회용 핸드타월, 종이 냅킨** 등에도 동 법을 적용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도 받아야 하고,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또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심지어 원청업체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수시로 현장감사를 나오는 등 소규모 하청업체인 당사는 **비용부담**도 물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용품 이기에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당사는 원단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만들어진 원단을 가져와서 소분하여 제조하는 하청업체로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타사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원단 생산업체, 원청업체에서도 동법을 적용받아 위생용품 생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청업체에까지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뜰이나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중, 삼중 규제**로 느껴집니다.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체, 매출액 32억, 종업원 9명, 충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위생용품 관리법」이 '17년 4월 새롭게 제정, '18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종전보다 더욱 확대되어 기존에는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았던 화장지, 일회용 핸드타월·종이냅킨 등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며 동 법을 적용하면서 과도한 관리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원청업체 등에서 현장감사를 수시로 나오는 등 소규모인 하청업체의 경우 비용부담과 더불어 전담 인력 또한 부족하므로 일일이 대응하기가 버거운 상황
- 또한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적합규격의 경우, 화장실용 화장지 및 일회용 핸드 타월·종이냅킨 등은 포름알데히드(mg/L) 4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로 정해져 있는데, 원단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만들어진 원단을 구매·소분하여 제조하는 소규모 하청업체도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이미 위생용품 원단 생산업체와 원청업체도 동 법을 적용하여 위생용품 생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청업체에까지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이며, 중소기업에 비용부담, 업무 가중 등을 유발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기타 위생용품 중 자가품질검사 적합규격이 비교적 낮은 화장실용 화장지, 일회용 핸드타월 등에 대해서는 원단 생산업체 및 해당 위생용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원청업체에만 동 법을 적용하고, 만들어진 원단을 구매·소분하여 생산한 위생용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교육 및 검사의 완화를 요청

■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라. 기타 위생용품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에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현장의 목소리

제주 석제품은 자연에서 채취한 원석을 단순 절단으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조달품질원에서의 원석의 본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전문기관 검사지정 제외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2010년 제주도지사 건의, 2015년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지정해제를 했으나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업계 종사 경험과 상식으로는 단순절단으로 석재의 원석 본성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문기관검사가 있을 경우 검사기간과 물품납품변동사항 고려 시 납품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며 비용부담도 상당합니다.

또한, 매년 조달청 중간점검을 통해 전문기관에 시험하고 있고 단체표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별도의 품질검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어 검사가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와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생각하여 전문기관검사 지정을 제외해주시고, 제외가 어렵다면 타 시도와 같이 제주소재 업체는 도내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석제품 제조업체, 매출액 11억, 종업원 13명, 제주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제주 석제품은 자연에서 생성된 천연의 암석(원석)을 재료 혼합이나 변형없이 단순절단으로 생산하는 제품임
 - 제품에 사용되는 원석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수시로 시험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체표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별도의 품질검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음
- 그간, 제주 석제품은 조달청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원석의 본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대상물품에 포함됨
 - 하지만 석재가 단순 절단으로 본성에 변화가 생긴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또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불량률이 없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국석재도감에 따르면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등에 대한 국내 석재의 품질은 매우 우수함

- 석제품의 경우 주로 도로와 광장, 건물 등 공공건설분야에 소요되며 공사 특성상 공사과정 중의 설계 변경으로 정확한 수량이 산출되기 어렵고 공사현장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촉박하게 가공납품되어야 하지만 전문기관검사를 시행 시 적기 납품이 어려움
 - 제주의 경우 도서지역 특성상 검사기간이 더 소요되고 이로 인해 적기 생산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더불어 최근 원자재가격, 물가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에 따른 비용증가가 예상되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임

■ 개선방안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제외 또는 수요기관 자체검사 선택이 가능토록 조치 요망
 - 도내 건설품질시험·검사기관에서도 품질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서 자체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 제고



Ⅳ. 신고·표시

1 소비기한 표시제도 계도기간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의 목소리 (1)

식약처에서 마련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을 보면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하며 차질 없이 준비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이 계도기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말 계도기간이 되려면 지금부터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행해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가지고 있는 포장재도 다 활용해 자원 낭비도 줄이고, 새로 포장재 발주할 때 소비기한 표기를 해서 만드는 등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당사는 평소처럼 가동하다가 소비기한 적용했을 때, 주력제품 포장재만 5천만원 어치를 버려야합니다. 납품물량이 기계처럼 딱 1월 1일에 맞춰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포장재를 충분히 준비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발주물량이 있어서 평소처럼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스티커를 부착해 기존 포장재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수십만장이나 되는 포장재에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스티커를 붙일 인력도 없거니와 인건비 부담도 커서 차라리 포장재를 폐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냉장보관품목의 경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식품제조업체는 괜히 **소비기한 변경했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험부담은 다 업체 책임이라는 생각에 소비기한 도입 자체도 꺼려집니다.**

소비자의 권리도 좋지만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 제조업체들은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생산업체들에게도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합니다.

- 식품제조업체, 매출액 44억원, 경기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내년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세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과도기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영세제조업체의 특성상 한번 주문 시 3-4년 정도 사용할 주문하는데, 올해가 지나면 **이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남은 포장재 폐기에 따라 기업에는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2년 정도의 계도기간 부여를 부탁드립니다.

- 두부류 제조업체, 매출액 14억, 종업원 11명, 대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토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현행 표기되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수준에서 설정된 날짜 표시이며 소비기한은 80~90% 앞선 날짜 표시
- 소비자·제조업체의 계도를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의 혼용기간이 필요하나 2022년 9월 중 세부지침 발표 예정이며 아직까지 계도기간 부재
 -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의 유통기한 표기 제품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기된 제품이 일괄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비현실적임
 - 9월에 세부지침 발표된다고 해도 시행일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은 너무 촉박함
- 영세업체의 경우 소비기한 변경으로 기존 포장재 전량폐기에 대한 부담 가중
 - 포장재 발주 시 발주가능 최소수량(예 : 10만장)이 있고 대량으로 생산할수록 저렴해지기 때문에 영세업체는 한번 포장재를 발주하여 2~3년간 활용
 - 식약처에서는 기존 포장재에 스티커를 부착해 연장 활용토록 권고하나 수십만장에 스티커를 붙일 인력도 없고 인건비 부담이 심함
- 유통·보관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된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위해로 작용할 수 있음
 - 냉장보관기준개선 필요품목(예: 우유)에만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시행일을 2031년까지 늦추는 일부 개정령(안)은 불공평

■ 개선방안

- 소비기한·유통기한을 혼용해 표기할 수 있는 계도기간 2년 부여
 - 보유한 포장재 물량 소진 후 소비기한 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

■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장의 목소리

80-90년대에는 식품의 표시기준의 변경이 중대하고, 실제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었으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도입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와 크게 관련이 없는 표시기준 변경지침은 업계에는 답답한 규제**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유형” 분류기준인 ‘류’를 빼 고형차류 -> 고형차 이렇게 표시하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평·자간을 맞추거나, 표로 기입한다든지 단락을 바꾸는 등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표시기준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품목당 1년에 한두번 변경되는데 품목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몇 년간 폐기한 포장재가 수 억장은 될 겁니다. 이러면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낭비 아닙니까. 스티커 부착으로 연장사용을 허용해 준다고, 납품처 측에서 스티커 부착을 싫어합니다. 스티커는 소비자가 떼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품의 신뢰도도 떨어질 우려가 있고요.

사실 포장재를 너무 많이 버려 비용 부담도 있지만 매일 고시가 변경된 내용이 없나 찾아보고 품목별로 체크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식품안전나라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품목별로 변경된 고시를 확인하는 건 저희 몫이거든요. 식약처에서 매일 올리지 않아도 저희 입장에선 놓치면 제재이기 때문에 그런 소모적인 시간이 참 피곤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표기사항 바꿀게 있으면 몇 년에 한번씩 바꾸고 기존에 발주한 포장재의 자원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예기간도 2년 정도는 줘야합니다.

- 식품제조업체, 매출액 43억, 경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식약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표시방법, 식품유형,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을 수시 개정, 고시하고 있으며 잦은 변경으로 인한 업계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 운영
 - 글자 장평·자간 설정, 단락 변경 등과 같은 ‘표시방법’ 변경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포함한 표시기준 변경지침이 연 1회 이상 개정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를 운영하나 개정고시부터 시행일까지의 짧은 유예기간, 업체의 정보습득 시차 등으로 제조업체의 체감 계도기간은 1년이 채 안 돼 통합운영제의 효과 미미

- 생산 품목과 관련된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품목별 지침을 일일이 확인 후 기존의 포장재는 폐기하고 새로 발주 넣어 비용·인력 소모 극심
 - 발주 가능한 최소수량[(예) 10만장]이 있어 영세업체는 1회 발주 시 2-3년 활용
 - 그러나 일부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 포장지를 전량 폐기한 후 신규로 발주해야 해 비용부담이 큼
 - 식품제조업체는 납품처의 요구, 마케팅 등의 이유로 비주력 제품이라도 생산이 필요하나 포장재 낭비 부담이 점점 커져 신제품 생산에 소극적이게 됨
- 포장재 연장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연장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영세업체는 포장재에 스티커를 붙일 인건비용이 부족해 차라리 포장재를 폐기
 - 또한 납품처(마트 등)에서는 부착된 스티커는 소비자가 임의로 제거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제조업체는 납품처와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스티커 연장사용 고려치 않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영세업체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행일 통합운영제」 실효성 제고
 - 개정일부터 시행일까지의 유예기간 현행 '1년 이상' → '2년 이상' 부여

■ 관련법령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수입산 원료콩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의 목소리

콩나물 재배를 하는 작은 소상공인에게 원산지 표시만큼 부담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데 수입산 표시 방법은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를 표시할 때 수입산은 중국 몇%, 미국 몇%, 캐나다 몇% 이런 식으로 표시 하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산 콩을 보호하자란 취지는 백번 이해한다 쳐도 수입 국가별로 비율을 적으라 하니, 이러면 부담을 안 느낄 기업이 있겠습니까?

특히 콩나물이나 두부 업종은 대표 포함해서 2~3명 수준이 대부분인데 수입산 콩을 들여올 때마다 국가별로 비율을 확인하고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입니다.

국내산을 보호할 거면 간단하게 '국내산/수입산'으로 간단히 표기하면 될 일을 비율까지 표시하자는 정부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농식품 재배업체, 매출액 8억, 종업원 5명, 경북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은 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수입산 표기와 관련해 원산지가 다른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 5인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두부, 콩나물 등)은 수입산의 국가별 비중을 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으로 볼 수 있음
- 구분 표시의 취지가 국내산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아닌 '수입산' 혹은 '국가명'으로 표기하는 방향이 적절함

■ 개선방안

-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 (당초) '국가별 비율' → (개선) '수입산' 통일

* 관련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조(원산지 표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

-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현장의 목소리

식품산업(특히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활력도가 낮습니다. 식품산업은 국가 성장 동력의 한축으로 발전 가능한 전도유망한 분야로 향후 내수에만 머물지 않고 K컬처와 더불어 수출을 통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규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거나 까다로워 관련 산업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개선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현재 캡슐이나 정제 등 일부 제형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생산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식품도 캡슐이나 정제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생산할 수 있게 하며 제조업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훌륭한 성분이나 제품을 개발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정제나 캡슐로 만들고 싶어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도 제형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시 법에 정해진 내용 외에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생산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내용 외 나머지 사항은 사전 표시광고 심의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회사(제조/판매사)에서 과학적인 검증, 논문, 인증 등의 충분한 사유와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높아진 국민의 교육수준과 정보화 시대와 걸맞은 제도 규정이 뒷받침 된다면 국민건강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282억, 종업원 82명, 경기 성남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공전 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는 과자, 캔디류 등을 제외한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식품 개발 및 제형의 다양화에 한계 존재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시 법적인 내용 외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 해당 규정으로 인해 제조사의 특성, 제품의 차별성에 대한 광고표시를 하지 못해 시장에 각종 유사 제품들이 범람하는 상황

■ 개선방안

-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캡슐, 정제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식품공전 개정
 - 식품공전 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 제조업자는 과학적인 검증, 논문, 인증 등 데이터 및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승인된 경우 자율심의 받지 않고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도록 개정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

■ 관련법령

-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2. 제도가공기준

11)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과자,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과채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식용유지류는 캡슐형태로 제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 하여야 한다.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 략)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중 략)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의 목소리 (1)

불투명한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공급 내역 보고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품목이 많은 2등급과 1등급 의료기기까지 보고하면서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기기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은 3, 4등급 기기들입니다. 2등급 기기는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들도 전자기기라고 생각할 만큼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체온계와 콘택트렌즈 같은 소포장 품목이 대부분인데 이를 팔 때마다 하나씩 다 공급자 정보와 거래처, 제품 품목과 모델명, 공급한 일시와 수량, 단가까지 하나씩 입력해야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의료기기 판매업체, 서울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그 판매 업체는 어느 병원에 어떤 제품을 몇 개 납품했는지 표준 코드번호, 금액 같은 내용을 적는 게 의무입니다.

시스템에 공급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대상 품목이 처음에는 3, 4등급 의료기기 같이 위험성이 높은 제품들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대상 품목이 3, 4등급 의료기기 제품보다 위험성이 훨씬 낮은 2등급 제품까지 확대되어** 업무가 과중한 상황입니다.

1~2등급 의료기기는 안경, 렌즈, 붕대 같은 제품들이고 3, 4등급 의료기기에 비해 납품량도 훨씬 많은 편입니다.

또 같은 품목이라도 코드 번호가 다 달라서 저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공급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인력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스 단위로 판매했어도 납품처에서는 날개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서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로 인한 과태료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 품목을 축소해서 3~4등급 기기만 등록하도록 하거나 1~2등급 기기 중 보고 면제 품목을 지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기기 도매업체, 매출액 20억, 종업원 4명,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도에 정부는 불투명한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도입
 - 의료기기가 제조사부터 도매상, 간납사, 소매상, 대리점 등으로 이동 및 납품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 모든 유통 단계마다 공급 내역이 보고되면 그만큼 의료기기의 추적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회수 조치나 부작용 문제 등에 기민하게 대응 가능
-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시작해 2021년 3등급 의료기기로 확대됐으며 올해 2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를 예고한 상황(2023년에는 1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
 - 1~2등급 의료기기는 안경, 렌즈, 붕대, 체온계, 혈압계 등으로 위해성이 낮은 기기이고 납품 수량과 거래처가 3~4등급 기기보다 훨씬 많음
 - 위 품목들에 대한 공급 내역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업무량 폭증
- 특히, 기업들은 올해 2등급에 이어 내년도 1등급 의료기기까지 공급 내역 보고가 확대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
 -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감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 또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납품업체가 감당해야 하므로 경영 부담 증가

■ 개선방안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품목 축소 : 전체 등급 → 필요한 등급만 선별 적용
 - 보고에 대한 업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공급내역 보고를 전체 등급의 의료기기가 아닌 적용이 시급하게 필요한 영역 선별
- 의료기기 정보 표준화
 - 의료기기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명칭, 규격, 단위 등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공급내역 보고 시 업무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 정보 표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함

-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 이용 시 EDI코드, 용도 키워드 검색기능 추가
 - 유통기업들이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목적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을 통하여 품목검색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색 Key값으로 EDI코드, 용도 Key word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제1항 가~라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4등급 의료기기 :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 2023년 7월 1일

현장의 목소리

저희 기업은 만두, 호빵을 제조해서 마트나 쇼핑몰 등에 판매하는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 냉동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수요가 다르다보니 냉동차량을 고정적으로 두지 않고 몇 대씩 변경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상 냉동차량을 증감할 때마다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중소기업에겐 과도한 처사입니다.

영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이면 신고를 하겠지만 냉동차량 1대 추가로 구매(렌트)하여 운행했다고 매번 신고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개선해서 식품 중소기업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식품 제조·도소매업체, 매출액 80억, 종업원 20명, 경북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 제조·운반·판매·보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변경사항 역시 신고하여야 함
 - 현재 시행령 제26조의 변경사항 中 ‘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나, 단순히 차량의 수를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을 초래하는 규제로 작용
- 식품의 경우 납품처 변동, 수시 판매기획전 등 판로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많아 식품운반 차량 증감이 잦은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변경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름

■ 개선방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 제8호 삭제
 - 자가 냉장·냉동차량 증감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 삭제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8호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 12. 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 12. 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현장의 목소리

음식물처리기는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 국산화에 성공해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품목으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젠 중주국인 일본에도 역수출을 하고 있을 만큼 기술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에 사용된 용어들이 새로운 기술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숙이란 말은 쉽게 말해 썩는다는 의미인데, 발효 등 다른 용어와 뜻이 중첩되면서 혼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썩는다는 것이 곧 발효와 동일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다른 방법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Kg 이상 200Kg 미만 처리기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데, **지자체에서는 좁게 범위를 해석해, 발효 처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음식물처리기를 만드는 저희도 설명이 곤란하고, **지자체 담당자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 매출액 140억, 종업원 30명, 경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활용한 자가 처리를 통해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3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다목에 의해 기준과 방법이 규정
- ‘부숙(腐熟)’ 용어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의미가 달라 현장 혼란 가중
 - 시행령에서는 부숙의 의미에 발효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부숙과 발효를 별도의 방식으로 구분

< 폐기물법 시행령 [별표3] >	< 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5] >
3. 재활용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처리의 경우 3-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또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부숙과 발효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업계의 단체표준에는 부숙이란 용어 자체가 없는 상황

구분	< 환경부 가이드라인 >	< 단체표준 >
건조식	열풍, 히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가열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중에 포함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	전기 또는 열,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하여 퇴비 또는 사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발효식	음식물류폐기물에 수분조정제, 미생물균 등을 투입하고 주로 이러한 미생물 작용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감량화 처리하는 방식	음식물류폐기물에 수분조정제, 미생물균 등을 투입하고 이러한 미생물 작용에 의해 주로 호기성 방법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과정을 거쳐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 등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숙	기본적으로 발효방식의 원리와 유사, 설비 내에 수분조정제 등을 넣어두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일정량씩 넣어도 설비 내 내용물의 부피증가가 거의 없이 매일 투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분해되도록 하는 방식	정의 없음

*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20.3)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단체표준('19.10)

- 부숙과 발효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규칙상의 협소한 해석을 적용하는 상황
-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100kg 이상 200kg 미만 음식물류처리에 법률상의 부숙시설만을 포함, 발효·발효건조 음식물처리기는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

■ 개선방안

○ 부숙시설 방식 완화 및 건조추가

- ‘발효’ 등 방식을 부숙시설의 정의에 포함하고 누락된 건조방식을 추가

< (현행) 폐기물법 시행령 [별표3] >	< (개정) 폐기물법 시행령 [별표3] >
3. 재활용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가.).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3. 재활용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가.). 건조, 부숙(발효, 발효건조 등을 포함)시설 (단,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시설은 제외)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백운석을 채광하는 업체입니다. 백운석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품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산물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광산 내에 따로 선별하여 일정 공간에 야적 후 구적측량을 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로 가공하여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산 내 부산물 야적 공간 확보와 측량비, 차량 이중 운반비용 발생 등으로 광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석회석 비료 제조업체, 매출액 50억, 종업원 14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백운석 채광 과정에서 품위 기준에 미달하는 부산물을 반출하는 경우, 선별 후 일정 공간에 야적해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로 가공해서 반출
 - 광산 내 야적공간 확보, 측량비, 이중 운반비용 등으로 부담 증가

■ 개선방안

- 광업법에 의해 산림 허가를 얻었으므로, 부산물의 반출 허가를 신고로 완화

■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V. 总结

현장의 목소리

협동조합에서 공동판매 사업을 하려면 조합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제품 규격별로 세부적으로 가격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브랜드 제품인 경우 대외신인도를 위해 가격대가 유사해야 하고, 동일한 단체 표준, 동일 규격인 상품이라 사실상 제품가격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구요.

그런데 현재 중기부 고시에서는 조합이 수매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조합의 가격결정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수매하여 판매하는 것이 좀 더 경쟁력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겠지만, 조합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창고·물류센터·배송 등 시설을 갖추고 인력이 다 있는 상황인데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영자금도 빠듯한 조합이 공동 판매 사업을 위해 제품을 수매해서 진행하는 것에 이렇다 할 필요성과 경쟁력도 없구요.

현실적으로 조합의 공동 판매사업을 위해서는 수매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품가격 결정·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경쟁자가 넘치는 시장인데, 조합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할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조합한테 물건을 사겠습니까. 시장에서 결정될 부분을 제도로 옥죄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쟁력 열위에 있는 조합원간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법인으로, 공동 생산·구매·수주·판매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이처럼 조합 본연의 목적인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단서 규정으로 인해 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이 제한받는 상황임
- 소비자 정의 부재로 법에서 말하는 소비자가 최종소비자인지 대기업등 구매 기업도 소비자에 포함되는 지 불분명하고, 소비자 이익침해 판단기준인 중기부 고시는 조합 권장가격 판매* 불인정 등 조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조합의 공동판매 사업 관련 가격을 인상·인하·결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부당성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소비자 이익 침해라고 간주

-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인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간 거래는 시장경제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부분으로, 대기업등이 잠식하는 시장에서 조합의 공동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 및 이익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간 힘의 불균형 완화 및 수평적 거래관계 지원을 위해 오히려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조직화 및 공동사업 촉진 등 규제완화 필요

■ 개선방안

-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단서 관련, 소비자 기준 명확화
- 부당성 및 소비자 이익침해 판단기준인 중기부 고시 개정

■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4조(부당한 가격결정) ①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판매·구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3.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
 4. 인상을, 할인을, 할증율, 이윤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자재·원부자재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
 3.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 또는 용역을 수매하여 단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2 낙찰하한을 도입 및 상향조정

[기획재정부]

현장의 목소리

저희 회사는 공공조달에만 납품을 하고 있어요. 민수시장에서 대기업하고 경쟁하기에는 마케팅이나 영업역량이 부족하고, 저가 중국산 제품 때문에 가격에서도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안정적 납품처가 있어서 좋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물론 대금지급도 제 때 안해주는 민수시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공공조달 납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인증도 많이 따야 하지만 결국에는 가격싸움이거든요. **예정가격이라는게 기존에 거래실례가를 중심으로 측정되는데 가격을 가장 많이 보장해 준다는 적격심사제도 80%정도만 보장이 돼요.** 2단계경쟁입찰 같은 건 **낙찰하한율이 없어서 그냥 싸게 들어가는 사람이 먹는거구요. 적절한 낙찰하한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업체들끼리 누가 먼저 죽나 싸울 수밖에 없어요.**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 관련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었으나,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에 있어 일정 통과점수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저가로 투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제조' 물품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15년) / 물품 '구매'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18년)

[※참고] 주요 낙찰제도의 낙찰하한율 현황

구 분	주요 특징	낙찰하한율	계약비중*
적격심사제	- 계약이행능력 심사 - 일정평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	80.495% 또는 84.245%	79.8%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력 필요시 다수의 입찰자 제안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 선정 및 협상	60% 또는 80%	1.5%
종합낙찰제	- 입찰가격 외 품질 등 종합 고려하여 낙찰자 선정	X	1.4%
2단계 경쟁입찰 등	[2단계 입찰] - (1단계) 규격입찰서로 적격자 판단 - (2단계)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 결정 [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X	17.2%

* 2019년 물품계약내역 중 총액·경쟁계약 계약비중 분석 (KBIZ중소기업연구소, 20년)

-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낙찰자결정방법인 ‘적격심사제’는 도입 당시, 시설공사의 가격산정 결정기준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물품분야 제조 및 구매업체 등의 적정비용 확보에 애로
 - (시설공사) 적격 통과점수를 다섯 차례에 걸쳐 변경·운영해오고 있으며, 낙찰하한율도 세 차례에 걸쳐 변경
 - (물품) 적격 통과점수(85점) 변화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낙찰하한율도 17년 5월 고시금액 미만이 기존 80.495% → 84.245%로 변경된 것이 유일

구분	시설공사	물품구매
적격 통과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 70점 이상 균일 • '97년 75점 이상 균일 • '99년 85점 이상 균일 • '00년 이후 규모별 85, 90, 95점으로 차등 부여 • '06년 이후 규모별 92, 95점으로 이원화 • '20년 이후 95점 이상 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관계없이 85점 균일
규모별 낙찰 하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 이후 규모별 4개 구간 73~85%로 차등 운영 • '00년 이후 금액구간도 6개 구간으로 확대하고 73~87.745%까지 낙찰하한율 조정 • '06년 이후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300억원 이상 적격심사가 폐지되면서 금액구간이 4개 구간으로 축소되고 79.995~87.745%로 낙찰하한율 조정 • '20년 이후 간이중심제 도입으로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폐지로 금액구간이 3개 구간으로 축소되고 85.495~87.745%로 낙찰하한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관계없이 80.495%로 '17년 5월까지 균일하게 운영 • '17년 5월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가격배수 변경에 의해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의 경우 80.495%→ 84.245%로 변경된 것이 유일

- 최근 원자재 가격 지속 인상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중소기업 제조 원가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행 제도는 '95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현실 단가와 큰 괴리 존재

《원자재 가격 동향》 *자료 : Bloomberg, 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2년 주요 원자재 상승률

- 구리 81%, 알루미늄 114%, 아연 95%, 주석 180% 상승

◇ 국제유가(US달러/배럴) : ('21.3월) 62 → ('22.3월) 102 * 1년간 65% 상승, 두바이유기준

《중소기업 적자 납품 사례》

◇ 도로교통시설물 납품 S사

- 원자재 인상률: 파이프(100%) 판재(60%) 도금(40%) 도장(40%) 인건비(50%) * 최근 2년

- 순제조비용 인상률을 반영한 납품단가가 지속 오르는 상황이나 공공조달 납품 시 반영안되는 현실 → **적자납품 누적되고 있음**

-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중소기업 대상 입찰임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과 차이가 있어 조정 필요
 -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 84.245%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낙찰하한율 : 87.995%

■ 개선방안

- 낙찰하한율 도입 및 상향조정

- ①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84.2/80.5 → 86%)

현 행		
구분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 공통)	고시금액 이상 (제조·구매 공통)
낙찰하한율	84.2%(84.245)	80.5%(80.495)

▼

개 정 안	
낙찰하한율	88%(87.995)

* 관련규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별표)

- 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60/80 → 80%)

현재	변경 안
*SW사업 외 60%(59.995)	*전체 80%(79.995)
*SW사업 80%(79.995)	

* 관련규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 ③ [종합낙찰제/2단계경쟁입찰] 낙찰하한율 도입 (없음 → 80%)

현재	변경 안
*낙찰하한율 없음	*낙찰하한율 80%(79.995)

* 관련규정 : (종합낙찰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별표)
(2단계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③항 및 기관별 집행기준

3 불합리한 예정가격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현장의 목소리

공공조달 입찰하는데 예정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 같은 거거든요.

이게 보통 계약담당자들이 정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시장을 충분히 조사해서 정해야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거래실례가 가지고 돌리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원자재, 전기료, 최저임금 등 안 오르게 없는 상황에서 예전 거래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기업입장에서도 예정가격 정할 때 이런 거 참고해라. 지금 업계상황이 이렇다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지금은 그런 루트조차 없어요. 어떻게 산정 되는지 기업들은 알지도 못하구요. **깜깜이로 결정되는 지금의 예정가격 결정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예정가격 결정 시, 거래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 재량에 의존하며 계약상대자인 기업의 참여 배제
 - 예산절감 중심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초금액에 맞춰 투찰하는 기업은 최소한의 이윤도 고려하기 어려운 현실로 대등한 관계의 거래 불가
 - *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돼야 함
- 과거 시점 중심의 가격 결정
 - 최근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반영이 미흡해 적정성이 떨어지며 각 시점에 맞는 적절한 가격 책정이 필요

※ 해외 사례(영국)

◇ 물품·용역공사 등의 예정가격 산정 시 발주기관 내부의 비용전문가와 민간전문가*가 참여, 각종 거래가격과 시장상황, 상용발간 자료 등이 활용되어 그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음

* QS(Quantity Surveyor) : 비용계산을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를 뜻하며, 영국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활동함

· (주요역할) 자본과 비용에 대한 기획 및 적산, 자산 전주기 비용 분석 및 운영, 투자평가, 가치분석 등

■ 개선방안

① 예정가격 결정 시 기업 참여 방안 마련

- 구매규격 및 추정가격 사전공개 시 가격관련 이의제기 및 기업이 제출한 가격 증빙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매출원장 사본 등

- 법령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③항 개정

현재	변경 안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 및 입찰 예정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p>

② 예정가격 적정조정기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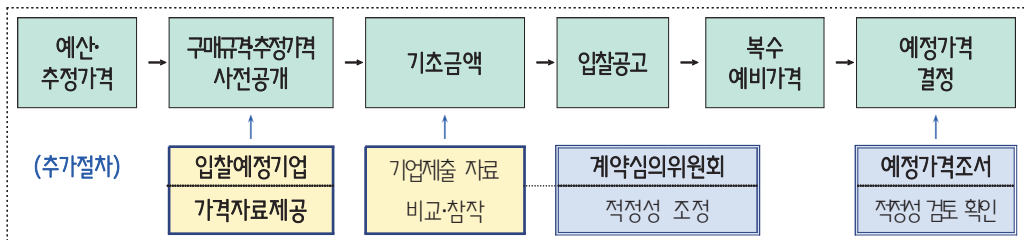
- 계약담당공무원 작성 예정가격과 기업제출 가격 차 현저할 때,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가격 조정

《가격 적정성 검토 기능 갖춘 유사사례 : 국내 공사 발주》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 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 기준 심의
 - 위원회 아래 분과별로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가 있음
 -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함

⇒ 반면, 물품 발주는 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토 제도 부재

- 개선 절차



- 법령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5조③항 신설

현재	변경 안
<p>③ <신설></p>	<p>③ 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당초의 예정 가격과 입찰예정자가 제출한 가격 간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예정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계약 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해 조정하여야 한다.</p>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③항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5조③항 (관련규정 신설필요)

4 MAS 2단계 경쟁기준 완화

[기획재정부/조달청]

현장의 목소리 (1)

MAS같은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조항이 있어서 민간시장에 판매하는 금액보다 무조건 낮게 제품을 공급해야 해요. 게다가 일정금액이 넘으면 2단계 경쟁을 해야해서 가격 할인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요새 같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단가 인상도 쉽지 않은데다가 2단계 경쟁까지 겹쳐버리면 아주 죽을 맛입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그나마 하한이라도 있지만 일반 제품은 그런 것도 없어서 더 힘들어집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단가 안 맞으면 납품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MAS는 계약실적이 없으면 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납품 실적은 있어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납품하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소액수의계약 한도도 두 배로 올렸는데, **MAS 2단계 경쟁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 정도는 상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현장의 목소리 (2)

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대부분 조달청 MAS를 통해 계약됩니다. 그런데 이 MAS라는 것이 1억원 넘는 경우 2단계 경쟁으로 5개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보내게 되며, 이때 90%까지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을 10% 깎는다는 거죠

문제는 MAS에 등록된 가격 역시 겨우 이익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10% 할인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받을 수가 없고, 더 문제되는 것은 90% 제안요청을 불수용 시 수요기관에서도 추후 선택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에서도 2단계 경쟁제도를 조사하여 업체 간 담합으로 처분하는 등 사실상 90%로 팔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무리하게 낙찰 받으면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납품하게 되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콘크리트 제품의 **2단계 경쟁금액과 최저 제안율을 상향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제조업체, 매출액 46억, 종업원 12명, 충남 소재

현장의 목소리 (3)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MAS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을 선정하여 구매를 할 경우, 조달우수제품(구매 금액 한도 없음)과 다수공급자계약제품(1억원 이내)을 동일한 업체에 분리 발주가 가능하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1개의 업체에 손쉽게 일괄 발주가 가능한데, MAS는 물건가격이 1억원이 넘어가면 2단계 경쟁으로 가야하는데 분리발주도 못하고, 업무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조달우수제품이 없는 지역 업체들은 입지가 좁아져 조달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이 2억 이상이 되면 지역 업체 제품들의 판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조합추천수의계약이나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달계약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MAS 2단계 경쟁금액 상향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체, 매출액 7억, 종업원 8명, 부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은 다수공급자(이하 “MAS”)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할 경우, 추가로 2단계 경쟁 시행
 -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실시함으로써 저가경쟁 심화
 - 최초 단가계약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추가적인 가격경쟁으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 저가·출혈경쟁으로 실제 납품 시, 낮은 품질 납품 유도
- 「경쟁제품」은 계약단가 대비 90%의 가격제한 하한율이 있으나, 수주를 위해 하한율인 90%로 제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수정계약을 통해 최초 계약단가를 내릴 수 있어, 최저가로 단가를 낮춘 등록 업체의 낙찰을 유도하는 결과 초래
- 「일반제품」은 2단계 경쟁에서 가격제한 하한 자체가 없음

- 최소한의 기업운영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MAS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2단계 경쟁 참여
 - * 납품실적 전무한 품목은 차기계약에서 배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2배 상향된 만큼 MAS 2단계경쟁 기준 금액 상향 필요

■ 개선방안

- MAS계약 2단계경쟁 ‘적용기준 금액’ 상향
 - [중기간 경쟁제품] 1 → 2억원
 - [일반제품] 0.5 → 1억원
- MAS계약 2단계경쟁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 [중기간 경쟁제품] 90 → 95%
 - [일반제품] 없음 → 90%(가격제안 하한율 도입)

■ 관련법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 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제10조(가격제안) ①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품목 수시추가 허용

[조달청]

현장의 목소리

요즘은 워낙 시장의 변화가 빠르지만, 특히 IT쪽 시장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제품은 부품별 신제품 출시가 빈번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CPU, RAM 등의 제품 출시 주기(사이클)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다수공급자계약 후에 품목, 규격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50일이 경과하여야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부품은 중앙처리장치(CPU), 기억유닛(RAM), 저장장치(SSD, HDD), 그래픽어댑터(VGA) 등 워낙 다양한데, 부품마다 신제품 출시 시기가 각각 다르며 용량도 다양하고 같은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품 중에 하나의 부품만 바뀌어도 그 제품은 다른 제품이 되므로 새로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품목 추가가 가능한 기한은 50일 이후라고 되어있지만, 품목 추가를 신청한 후에 30~60일 정도 소요되어서 업계 체감 실제 등록 주기는 80~110일 정도 입니다. 즉, 1년에 3번정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지요. 품목을 적기에 등록하지 못하면 업체에는 재고가 쌓이고, 수요기관도 원하는 신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며 제품 교체 주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장과 수요기관의 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톱 컴퓨터 부품은 5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시추가 품목 허용이 필요합니다.

- 컴퓨터 제조업체, 비공개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추가 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 품목추가 가능
- 다만, 품목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 체결 가능 *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 명시 필요
- 데스크톱컴퓨터의 경우 부품이 다양*하고, 부품별 신제품 출시가 빈번하며 수요기관의 최신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품목으로 수정계약 기간 예외적용이 필요

* 중앙처리장치(CPU), 기억유닛(RAM), SSD저장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그래픽어댑터(VGA) 등

- 현재 데스크톱컴퓨터는 품목 추가 예외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등록까지 50일 경과에 더하여 수정계약 신청·등록 절차를 포함하면 약 90~110일이 소요되어 원활한 신제품 공급 애로 발생
- 부품별로 상이한 신제품 출시기한 등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 수시 추가 허용 필요
- o 또한, 업체별 계약규격 100개(중앙처리장치 제조사별 80개)까지만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가능하여 제품등록 시기가 누적 지연되어 적기 납품 애로 및 구형 제품 재고 소진 곤란

■ 개선방안

- o 데스크톱컴퓨터(컴퓨터 부품)의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수시추가 허용

■ 관련법령

- o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제28조(계약품목 추가)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격서, 제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17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저희 회사에서는 탈취기를 제조하는데요, 열심히 경영활동 하면서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도 받았고, 나라장터 쇼핑물에도 자사 제품도 등록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정 직후 코로나19가 터지고, 그 때문에 경영활동에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인증시한 3년은 도래해 가는데, **원자재와 인건비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당초 MAS에 등록했었던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물론 MAS 가격에 대한 계약단가 조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제조업체 내에서 MAS 단가로 경쟁하는 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단적으로 단가인상을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과 같은 경우 제품을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인건비와 같은 공통적인 경비도 올랐는데, 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인증시한은 도래하는데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 탈취기 제조업체, 매출액 20억, 종업원 5명, 서울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인건비, 자재비 등 공통경비 부담이 최근 1~2년사이에 급증함에 따라, MAS 계약단가 상으로 납품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 급증
- 다만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특성상 나라장터 쇼핑물에 등록되어 있는 자사 이외 타 기업과의 경쟁구도로 인해, 단가 인상요청에 소극적
 - 개별기업이 단가 인상 성공하면 오히려 타 기업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 계약률이 낮아짐을 우려

개선방안

- 제품특성과 관계없는 제조 관련 공통경비(인건비, 원자재매입단가 등)인상에 따른 MAS 단가인상 요청시, 계약중인 제품 전체에 일률 적용할 수 있는 부칙 신설
- MAS 쇼핑물 등록제품에 대한 단가인상에 대하여 해당제품 관련 협동조합의 단가조정 요청시, MAS 등록제품 전체에 대한 단가조정 검토

관련법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2항

제8조(계약단가 조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7 가구류 MAS 계약단가 조정 관련 추가세부지침 개선

[조달청]

현장의 목소리

물가가 올랐는데 수정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정계약을 하려면 원가산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실험대만 하더라도 품목수가 300개도 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원가산출에 필요한 자료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업체가 다 작성해서 준비하고, 원가산출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비용 부담도 과다하고, 신청부터 조정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적자 상품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체, 매출액 7억, 종업원 8명, 부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및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및 국가유가 급등으로 제조원가 급격히 증가
- 급격한 제조환경 변화로 대표적인 공공조달 제도인 MAS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도 경영위기 직면
- 조달청에서는 '21년, 두 차례 계약금액 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했으나 실효성 부족
 - 특히 가구는 각 품목별 재료(자재)의 비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인상 계약함에 있어서 '대표품목'을 지정하여 원가계산 진행이 어려워, 모든 품목에 원가계산 진행이 필요
 - 업체 입장에서는 '대표품목'을 설정하여 단가조정 신청은 까다로우며,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진행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가구의 특성에 맞도록 원자재 비율을 감안한 비례 적용 허용범위 명시 등 MAS 단가조정 추가세부지침 개선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단가 조정 관련 추가세부지침 >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계약 세부품명 내 다수 품목(모델) 중 동일한 재질·모양·형태·용도의 품목(모델)에 대해서는 유사한 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품목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품목(1개 이상)'으로 설정 후 '대표품목'의 원가계산 등 가격산정결과를 나머지 유사품목에 일괄 적용 하거나, 원자재 비율을 감안한 비례 적용 등 허용 - 다만, 계약상대자가 생각하는 '대표품목'과 계약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대표품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 등 가격산정 전 협의하여 '대표품목'을 확정 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계약 세부품명 내 다수 품목(모델) 중 동일한 재질·용도의 품목(모델)에 대해서는 유사한 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품목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품목(1개 이상)'으로 설정 후 '대표품목'의 원가계산 등 가격산정결과를 나머지 유사품목에 일괄 적용 하거나, 원자재 비율을 감안한 비례 적용 등 허용 (가구류의 경우 규격을 감안한 원자재 비율 범위를 계약담당자가 산출하여 유사품목으로 인정) - 다만, 계약상대자가 생각하는 '대표품목'과 계약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대표품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 등 가격산정 전 협의하여 '대표품목'을 확정 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 관련법령

- MAS,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
-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단가 조정 관련 추가세부지침

8 조합 MAS계약 이행실적의 개별업체 이관

[조달청]

현장의 목소리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제3자 단가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조달청에서는 MAS 업체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점수별로 등급화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으로 MAS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추후 개별업체 자격으로 MAS 참여시 조합 MAS 계약실적이 이관되지 않아, MAS 2단계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MAS 에서 개별업체로 MAS 참여한 경우 조합 MAS 계약실적을 이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전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조합으로 계약했던 조합원사가 계약 종료 후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사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조합원사의 조합 MAS계약 이행실적이 이관되지 않음
- 계약이행실적 평가등급은 MAS 2단계 경쟁의 사후관리 평가항목으로 활용되며 계약이행실적이 이관되지 않은 조합원사는 평가 결과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2단계 경쟁에서 불리하게 됨

■ 개선방안

- 조합 MAS계약 했던 조합원사가 계약 종료 후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 계약이행실적이 조합원사로 이관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 신구조문 대비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현 행	개 정
<p>제49조(평가결과의 이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변경된 계약상대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49조(평가결과의 이관) ①----- -----<u>조합계약</u> 등----- ----- ----- ----- ----- 1. ~ 3. (현행과 같음)</p>
<p><제4호 신설></p>	<p>4. 조합 MAS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후 개별업체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에게 기존 조합 MAS계약의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p>

9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항목 개선

[조달청]

현장의 목소리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 '2단계 경쟁제도'란 수요기관이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5개사 이상을 제안요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조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중, 일부 업체의 제품 검사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조합으로 계약한 다른 모든 업체의 정상 제품(품명이 다른 제품도 포함)에 대해서도 MAS 2단계 경쟁 시 동일한 검사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으로 계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연좌제 형식의 억울한 처벌로 생각되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전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MAS 2단계경쟁 기본 평가항목인 품질관리 평가는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한 검사(조달청, 전문기관,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다수의 조합원이 조합으로 계약한 경우, 일부 조합원사 제품 검사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검사 결과에 따른 배점이 결함이 없는 정상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2단계 경쟁에서 불이익 발생(사실상 2단계 경쟁을 통한 수주 불가능)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합으로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품질 관련 문제가 없는 정상 업체의 제품까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연좌제 형식의 처벌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해당사례 예시>

- 조합원 A,B,C가 조합으로 계약한 경우 A업체의 배수로 품목에서 결함 발생시 나머지 업체의 모든 계약물품에 해당 결함에 따른 배점 적용

	조합원	계약물품	품질점검 등 검사결과	2단계경쟁 품질관리평가
조합계약	A	콘크리트블록	결함없음	조합으로 계약한 전체 업체 계약물품에 대하여 중결함에 해당 하는 배점 적용
		배수로	중결함	
	B	콘크리트블록	결함없음	
		배수로	결함없음	
		맨홀박스	결함없음	
	C	배수로	결함없음	
맨홀박스		결함없음		

10 MAS 조달등록 기준 완화

[조달청]

현장의 목소리 (1)

현재 MAS 조달등록 기준은 완화될 필요 있습니다. 기존에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라 해도 갱신 기간에 계약상대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어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납품기업은 판매가 지연되니 피해를 보고, 수요처는 업체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현장의 목소리 (2)

관공서 및 산하기관에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제품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거나 다수공급자 물품등록 공고를 기다려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공급자 물품등록 공고를 요청하려면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는 3개회사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각각 다른 3개 회사가 함께 공고요청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조사별로 기능이나 효능이 다른 물품은 개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목재 가공품 제조업체, 매출액 70억, 종업원 27명, 전북 군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계약을 한 후,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쇼핑몰에 등록 가능
- 기존에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었던 제품도, 갱신 기간에 계약상대자가 3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이 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해당 기간 동안 기존에 종합쇼핑몰을 통해 거래하던 수요처에 납품이 불가하여 기업과 수요처에 모두 피해 발생
 - 특히 기업에게는 정기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던 수요처와 거래선이 끊기는 계기가 되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기도 함

* (사례) 가정용 홈 사우나처럼, 특정 업체가 특정제품을 국내 전량 생산하며 제품별로 기능 등이 다른 경우 3개사 이상이 공동등록 요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 계약당사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
 - 재계약 체결 시 기업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계약업체가 1개가 된 경우, 기존에 종합 쇼핑몰을 통한 납품실적이 있으면 판매 지속
 - 제조사별로 기능이나 효능 다른 경우 개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22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가 3인 이상(단,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한다. 이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또는 새로이 진행하려고 할 때,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원자재 수급이나 갖가지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단 며칠간의 기다림도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 2개월에서 4개월을 예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제도적으로 연 3~4회 추가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2회 밖에 추진하지 못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을 만들고, 추가요청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서 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금속유타리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및 추가 조달등록 진행 시 처리기한이 없고, 조달등록 60일후 추가 물품등재
 - 실질적으로 종합쇼핑몰 등재 소요기간은 조달청(본청)기준 최소 2개월~4개월 이상 소요
 - 제도적으로 연 3~4회 추가계약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연 1회~2회 정도만 계약 추진할 수 있는 상황
 - 조달업체의 적기납품에 많은 차질이 발생, 경영난 심화로 연결

■ 개선방안

- 조달업체 등록 접수 후 처리기간 지정함으로써 경영 원활화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추가 요청기한 단축 : 60일 → 30일
-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을 지방조달청에 이관하여 지역별로 등록

12 조합추천수의계약 명칭변경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조합추천 수의계약이 판로지원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수요기관들은 이 제도를 거의 활용 안하려고 해요. **제도 취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의계약이라는 명칭 때문에 감사부담이 있어서 쓰기 싫대요.**

다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같은건 수의계약이어도 잘만 활용하고 있으면서, 조합추천수의계약은 활용 못하겠다고 하니 답답하죠. 제도이름에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게 조합추천수의계약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름만이라도 수의계약을 빼주면 수요기관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해 오고 있음
 - * 공공기관은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수의계약 가능(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하지만 2017년 이후 제도활용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법령에서 보장된 제도이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명칭으로 수요기관의 감사부담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 존재

< 조합추천수의계약 실적 >

구 분	추천 건수	활용 실적	활용 조합
21년	382	141억*	52
'20년	362	112억*	49
'19년	327	87억	37
'18년	424	107억원	69
'17년	638	167억원	88
'16년	1,381	447억원	103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조달청 대행범위 변경으로 '20년 이후 실적 소폭 상승

- (20년)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0.5→1억원) / (21년)조달청구매대행 품목확대(30→159개)

- 현재 ‘조합추천수의계약’은 공공계약제도 가운데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제도이며, ‘수의계약’ 명칭 때문에 과거 ‘단체수의계약’과 유사제도라는 오해 발생
- 또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조합 및 수요기관 의견조사 결과, 제도 활성화와 감사부담 우려해소를 위해 명칭변경 필요 응답

* 조달연구원, 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 개선연구(21년)
 - [협동조합] 조합추천수의계약 명칭변경 필요(74.4%)
 - [수요기관] 수의계약은 감사대상 1순위라 부담, 공정성 관련 민원발생 우려 등

현재	변경 안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⑤ 항 생략	제8조((가칭)조합 추천 소액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⑤ 항 생략

■ 개선방안

- 제도활용도 제고를 위한 명칭변경 추진 (*가칭) 조합추천소액계약제도

■ 관련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3 일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상향

[행정안전부]

현장의 목소리

최근 인건비 상승, 유가급등, 물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물품 및 공사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과거 2천만원일 때 할 수 있는 사업량과 현재의 2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차이가 나서 사업량을 줄여 발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5년 이후로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동결상태이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상향**한다면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뤄질 뿐 아니라 공사품질 까지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기타 콘크리트제조업체, 매출액 38억, 종업원 7명, 전북 남원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은 지자체의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 과거부터 현재까지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지만 정작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해당 목을 2천만원 이하에서 20%~25% 인상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2천5백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이에 준하는 법령조항을 2천만원 한도에서 2천5백만원 한도로 개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 1항 제5호 나. 추정가격이 <u>2천만원</u>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 1항 5호 나. 추정가격이 2천5백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4 인증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중복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따는 여러 인증들 중 일부는 사실상 직접생산확인 기준만큼이나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단체표준의 경우 일부 품목의 주요 공정을 보면, 직접생산확인의 필수공정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단체표준 심사기준을 통과한 기업에게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체표준을 받을 때도 현장실태조사를 거치거든요. 두 번 조사받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이런건 업체들이 또 현장조사를 위해 준비하고, 서류준비하고 하는 이중적으로 행정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에서도 일부 품목에 한정해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가 생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표준이나 어느정도 실태조사의 효과를 가지는 인증이나 허가 신고를 가지면 서류만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해서 많은 업체들에게 비용을 줄여주고 공공판로를 열어주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발급시 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 서류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인정 가능
 - 발급 비용이 저렴하며, 실태조사 생략으로 발급기간 단축 가능 장점

제품 유형	발급 비용	발급 소요 기간
실태조사 대상제품	18만원+5만원x(1개 초과 제품수)	평균 12일
실태조사 생략제품	제품당 5만원	평균 5일

-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타 인증심사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중복으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행정적 효율성 제고 절실

- 그러나,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중기간 경쟁제품 총 632개 품목 중 39개 품목에 불과

* (생략제품 현황) 단체표준(주철맨홀뚜껑), 측량업등록증(측량용역), 영업허가증(시설물) 등

■ 개선방안

- 중소기업자의 비용 절감 및 서류 간소화 위해 단체표준 등 인가·허가·신고·인증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생략제품 확대 적용
- 장기적으로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생략 명문화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29조(확인방법)

②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다만 제35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 서류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현장의 목소리 (1)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하거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제품의 일시적인 수요증가로 납기일 이내에 생산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업체입장에서는 일부제품을 하청생산해서라도 납품을 해야하며 이 경우 불가피하게 직접생산을 위반하게 됩니다.**

물론 위반자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위반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취소되어 기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및 판로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제품의 일시적 수요증가 등 **불가피한 직접생산위반의 경우 업체의 모든 품목이 아닌 위반품목만 직접생산을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현장의 목소리 (2)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수요기관이 특정한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요기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제도 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모든 입찰참가 가 제한**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요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직접생산확인 위반이 아닌 줄 알고 납품했으며, 나쁜 의도로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처분을 받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또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받게 되면, 이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법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수요기관의 잘못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땀 흘려 일군 업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은 너무 나도 과분한 처분**입니다.

- 비공개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 시 직접생산을 위반할 경우, 위반제품 여부, 위반 경중여부 등에 관계없이 외에도 위반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

〈 직접생산확인 취소규정 개요 〉

제재사유	제재기간	제재대상
거짓 부정 하청생산, 타사 완제품 납품 등	1년	모든 제품
조사거부 기준 미충족	6개월	
제9조 5항 각호	3개월 이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

* (제9조5항 사유) 대표자변경, 공장이전 등 경미한 사유 발생 후 재신청 미이행 시

〈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 현황 〉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년 평균	비고
직생취소	131건	82건	45건	31건	72건	* '22년 현재 7건

* 출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 하지만 △일시적인 수요증가(계약물량증가 등) △일부부품의 단종 등 불가피한 상황발생 시 납품미이행에 따른 처벌은 온전히 업체가 감당해야 하며,
 - 납품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부정당업자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품의 일부 수량을 하청생산*하는 등 직접생산 위반행위 발생 가능
- *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일시적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수용능력(CAPACITY)한계 등과 관련한 일부제품
- 특히,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도 수요기관의 승인에 의하거나 악의가 아닌 경우까지 예외 없이 직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
 - 수요기관의 특정 성능 요청에 의한 하청, 일시적 수요증가에 의한 인력 하청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위반 고려 필요
- 아울러 하청생산 등에 따른 취소는 해당 위반 제품만이 아닌 업체가 승인받은 모든 제품이 취소되기에 경미한 위반에도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가 차단되어 비례 원칙에 어긋남

■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경영 및 판로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생산 위반업체의 취소범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 필요

〈 직접생산확인 취소 개선(안) 〉

위반의 경중에 따른 분류	제제대상	제제기간
고의적 위반	현행 동일(기속적 처분)	
고의적 위반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및 단순과실 등	해당제품	6개월 이내(재량적 감경)
제9조 5항등 위반 시	경고 조치	

* (제9조5항 사유) 대표자변경, 공장이전 등 경미한 사유 발생 후 재신청 미이행 시

- 과징금(제11조의2) 규정 활성화로 위반 사유가 경미할 경우, 위반 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는 등 제재 수단 다양화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현장의 목소리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와 전광판은 시스템의 설계, 주요부품, 제작, 설치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거의 똑같은 생산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설치되며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두 품목이 다른 제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생산공정, 생산제품이나 다른 제품군으로 생산공장, 생산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여 중소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인력의 경우 각각 3명씩 6명이 기본적으로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또한, 전광판의 기준과 교통안전표지의 기준을 비교했을 때 교통안전표지의 기준이 너무 과도합니다.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기준에 따르면 발급 받기 위해, 실제로 사용 빈도도 낮은 검사장비 같은 것은 대여해야 하며 이 때문에 설비사용계약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말입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준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강화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납품 전에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 직접생산과 더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불어,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직접생산확인을 발급받으려면, 시험성적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낙찰 이후에 대부분 수요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 시 했던 검사보다 더욱 직접생산과 연관된 준공시험이 이루어지며, 시험성적서의 경우 최종 준공 제품과 다른 소형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이러한 **시험성적서 발급에 비용이 들고, 기간이 소요되어 업체에 행정적인 부담이 되기에 시험성적서는 발급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교통안전표지 제조업체, 비공개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사실상 생산과정이 유사한 전광판과 교통안전표지의 제품군이 상이하여, 생산공장의 면적·보유 생산시설·생산인력의 공유가 불가하기에 업체의 부담 큼

제품군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	비고
전자·정보통신	신호표지(1)	갈매기표지판,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도로표지판
인쇄, 광고물 등	표식장비(1)	안내전광판, 기상전광판, 교통정보전광판	전광판

- 교통안전표지 직접생산확인 생산시설 기준이 과중하여 업체 진입 규제로 작용
 - 현행 기준상 직접생산확인 발급을 위해 실제 사용 빈도가 낮은 검사설비·외부 위탁이 가능한 설비 등 필수 보유 필요
 - 또한, 제조시설 면적 100㎡는 생산과정이 유사한 표식장비(전광판) 기준대비 과도

- 직접생산확인 신호표지(1) 제품 중 교통안전표지의 경우, 발급을 위해 유효기간 1년 내의 공인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필요
 - 그러나, 해당 시험성적서의 경우 실제 납품 제품과 상이한 소형제품에 대한 시험으로, 납품의 직접생산과 크게 연관 없으며 발급에 비용과 행정부담 수반

■ 개선방안

- 직접생산확인 발급기준상 교통안전표지를 표식장비(1)에 통합 운영 및 가변형 교통안전표지의 공인시험성적서 확인 삭제

■ 관련법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제15조(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명 신청시의 기준 적용)

2. 신청한 세부품명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생산공장이 구분되어 있는지와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2-23호) 경쟁제품 표식장비(1) 및 신호표지(1)

	교통안전표지	안내전광판, 기상전광판, 교통정보전광판
생산 시설	조명식·발광식·가변형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②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또는 롤커팅플로터(폭1.2m 이상) 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또는 라미네이팅기(폭1.2m 이상) - 강압(로라)압착기의 경우 교통안전표지, 갈매 기표지판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④ CNC 또는 레이저커팅기 또는 합성수지재단기 ⑤ 밧데리 충전기 ⑥ 온도조절전기인두기	① 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 인두기 및 납제거기 ③ 절단기(니퍼) ④ 와이어스트리퍼 ⑤ 작업대 ⑥ CAD프로그램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향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⑤ 조도기 또는 컨델라 측정 ⑥ AC/DC 테스터기 ⑦ 휘도계(가변형에 한함) ※ ②,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검사설비> ① 휘도계 ② 오실로스코프 ③ 멀티미터 ④ 절연저항계

17 가드레일 직접생산제도 보완 및 완화

[조달청]

현장의 목소리

가드레일은 파이프를 가공하여 제작됩니다. 이때 6M 파이프를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가공하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만, 이것이 2M로 절단된 파이프를 구매하면 직접생산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정을 줄일 수 있는데, 직접생산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절단하는 공정을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높아지고 이윤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직접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OEM 방식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드레일처럼 소수 품목의 경우 산업이나 품목의 특성이 기준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업계 공청회를 통해 현실성있는 기준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금속유타리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품목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소수 품목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직접생산기준 때문에 생산시설 추가 구매 등 불필요한 공정이 추가되기도 함
 - 생산원가 상승하여 기업이윤이 하락하는 원인이 됨

* 사례 : 가드레일 지주파이프(조관)

- ① 6M 지주파이프 구매 : 직접생산으로 인증
- ② 6M 지주파이프를 2M로 절단한 파이프 구매 : 직접생산 위반

■ 개선방안

- 필수 조건 외 외부공정 OEM 제작 방식 확대
- 해당 품목별 업계 공청회 통해 직접생산제도 기준 수립

18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잉제재 개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어쨌든 납품과정에서 업체가 잘못을 했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잘못이라는 것도 ‘경중’ 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담합같은 큰 잘못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불량이 발생한 것과는 **잘못의 경중이 다른데 똑같이 부정당업자로 결론 내리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부정당업자가 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그 수요기관과 제품만 제한되는게 아니에요. **부정당업자가 되면 그 업체의 모든 품목, 모든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막말로 부정당업자 되면 문을 닫아야 해요.** 큰 잘못을 저지르면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잘못은 과징금 같은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 행동의 경중에 따라 처벌기준도 다르게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계약법(제27조)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11개, 일부를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위임 11개, 총 22개의 사유를 규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나라장터”(정보시스템) 등재를 통해 전체기관에 통보되며, 다른기관은 해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규정

< 부정당 제재 개요 >

제재사유	제재(발주)기관	제재유형	효력범위	효력대상
22개의 기속행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기업	입찰제한	전체 기관	해당 기업의 전체 제품
일부 경미한 경우	행정기관	과징금	-	-

- 하지만 제재 사유의 단순 나열 및 성격이나 효력 상 차별 없이 획일적 재재로 기업활동에 애로
 - 제재사유 해당 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 부과하고 (기속행위), 재량권 행사를 통한 면책 결정 불가능
 - 특히, 단순 “계약불이행”의 경우, 손해보전*이 가능함에도 행정제재(입찰제한·과징금)를 하는 것은 과잉 제재 * 손해배상 및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몰수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실상 기업 활동의 기본인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비례원칙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함
 - 제재 시 모든 공공부문 입찰·수의계약 불가능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제재 필요성을 부정한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누25561)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

■ 개선방안

①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임의적 사유로 구분

- (현행) 획일적 기속행위 → (개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사유 구분*
 - * (필요적 사유) 기속행위 *금품수수, 담합 주도 등 / (임의적 사유) 재량행위 * 책임이 경미한 경우
-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재 사유에서 삭제
- 제한 사유에 따른 효력 범위를 구분 적용
 - 필요적 사유 : 전체 발주기관, 해당제품만 입찰 제한
 - 임의적 사유 : 해당 발주기관, 해당제품만 입찰 제한

제재사유	제재기관	제재유형	제재 내용
필요적 사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기업	입찰제한	범위 : 전체 기관 대상 : 해당 제품
임의적 사유		입찰제한	범위 : 해당 기관 대상 : 해당 제품
단순 불이행	-	해당 내용 삭제	-

② 행정제재 수단의 다양화

-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경고, 자율시정, 면제, 조건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운영하여 공공계약 윤리성 제고

- **자율시정제도** : 손해보상 완수, 조달기관에 적극적 협력, 손해 등의 사실관계 인정 및 예방조치 이행시 입찰제한 면제
- **행정협약** : 일정기간 정부계약에서 특정인의 배제, 행정기관 개입, 준법 및 윤리 프로그램 실시, 정기적인 행정기관 보고 등
- **경고제도** : 1차 경고, 2차 제재
- **제재조건부 불제재** : 준법경영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면제
- **조건부과** : 경미한 경우 제재 대신 특정기간 계약보증금 증액 납부 조건 부과

③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규정 일원화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대해 지방계약법도 국가계약법과 일치시켜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후, 2019. 9. 17.]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항 1호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항 1호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삭 제>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삭 제>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삭 제>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9 입찰참가 제한 이중제재 개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공공기관에 중기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문제를 일으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희가 중기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니까 판로 지원법에 따라 중기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정지 받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위반사항에 똑같이 6개월 참가제한을 받아도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처벌하면 공공기관과 중기부가 인지하는 시점이 달라 적용시점이 달라져 실제로는 6개월 이상을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업체가 잘못해 제재를 받는거야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인데, 헌법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번 죄값을 치렀으면 같은 건으로 추가로 벌 받는 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방계약법, 담합 등 위반행위 발생 시 최대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판로지원법」에서 ‘중기간 경쟁입찰 참가 제한’ 별도 적용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시점에 따라 제재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발생
 - 과징금 부과 및 기관별 처분시점 상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불확실성 등 이중 규제에 예측 가능한 기업 활동 곤란

* (사례) ○○조합, 20**년 담합행위 적발
·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확정** 부과
· 조달청, ‘국가계약법’ 근거로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21.2~8월)
· 중기부, ‘판로지원법’ 근거로 중기간경쟁 입찰참가자격 **3개월 자격취소** 처분(’21.11~’22.1월)
↳ 실질적으로 9개월 **이중 제재** 효과

■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판로지원법 상의 입찰제한 처분 기간 감면

■ 관련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관련규정 신설필요)

현장의 목소리

입찰담합 발생 시 공정위에서 독점규제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을 심사·결정하고 이에 따른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있지만, 발주기관은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사안의 위반사항을 공정위, 조달청, 중기부 등에서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제재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 관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 지침」에 의거,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발주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고 있음
 - *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점
- 한편 국가계약법에서는 ‘담합’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규정
 - * △담합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 공정위에서 이미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있지만, 발주기관은 신문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위의 단순 시정명령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또한, 판로지원법에서도 입찰담합에 따른 중기간 경쟁입찰 참가 제한이 별도로 적용되는 등 동일 위반행위(담합)에 대해 이중적인 제재 발생 가능

■ 개선방안

-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조치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9.생략

21 공공기관 발주 시 제안규정 완화

[각 공공기관]

현장의 목소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제안 설명회를 참석하라고 할 때 30분 이내 짧은 설명회를 하는데도 지방으로 출장비용도 들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설명회 참여한 업체만 제안에 참여하게끔 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재직증명서도 요청하는 기업이 있어 왜 이런 불필요한 요건을 만드는지 모르겠고, 행정낭비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 제안서 작성 시 많은 노력과 준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안서 제출 시 불필요한 것들(제본, 서류, 문서, 증명서, 자격증)은 줄일 필요**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런 비용과 시간을 감내하고 제안을 해야 하고, **제안 발표시간이 15~20분 이내인데도 제안 내에 볼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소프트웨어솔루션체, 매출액 100억, 종업원 110명, 서울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참여 IT 제안요청의 경우, 통합발주와 분리발주가 있는데 통합 발주일 경우 주 참여업체 자격증만 인정되는 상황
 - 하드웨어 구매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면허(2,000만원)가 필요하나, 소프트웨어 사업 주관사가 하드웨어자격증이 없어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사업 제안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안요청에 하도급이나 컨소시엄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업체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솔루션 공급만 하게 되어 제안 경쟁력이 떨어짐
- 또한 요즘 시대는 디지털전환, Paperless, 친환경 시대로 제안서나 각종 프린트물을 디지털 매체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음
 - 사기업은 USB제출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도 CD, 제안서 출력본을 10매씩 제출해야 하며, 심지어 심사위원 블라인드 테스트를 위해 제안서 원본과 사본을 분리시켜 똑같은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있음
(원본은 회사명 표기, 사본은 회사명 제외)

- 준비하는 업체로서는 제안서 내 이미지에 회사명이나 제품명들을 숨겨야 하는 등 너무 많은 문서 작업이 업무 제안내용보다 더 들어 가는 상황
- 사기업 제안처럼 발표본, 제안서 이렇게만 준비하고 회사이름을 밝히고 오직 제안 내용의 참신함과 경제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함
- 공공기관만의 제안요청서의 요구하는 특수한 자격증, 인증서 및 서류가 너무 까다로워 기술력과 제품이 조건에 해당 됨에도 자격증과 서류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쉽게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 공공기관의 제안요청서에 스펙이나 조건, 독소 조항을 제시, 그 해당 제품만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 다른 우수한 업체인데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생김

■ 개선방안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IT 제안요청 시 통합 발주일 경우, 주 참여업체 자격증뿐만 아니라 타 참여 협력사 자격증도 통합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
- 제안 접수 시 불필요한 제안서 제본요구 지양
 - 공공기관의 제안 접수 시 불필요하게 제안서 원본, 사본을 수십 부 제본하게 하여 불필요한 제본 비용 소요되므로, 불필요한 제안서 제본 지양
- 제안 발표 시, 대면발표가 아닌 화상발표 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현장의 목소리

제조업체는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부자재 결함으로 생긴 불가항력적인 사안까지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술개발에 집중 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이 납품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품질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방식이 제조업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입장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조달기업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까지 평가해서 산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중소제조업체는 여건상 모든 원부자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원부자재 결함으로 생긴 납품에 대해 감점을 부과하면 수년간 공들여온 우수제품 지정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입찰시 낙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분야에서 판매가 힘든 상황입니다. 관급 입찰에 목매달고 있는 상황인데 불가항력적인 사안까지 평가해서 감점을 부여하니 미칠 지경입니다.

- 가구제조업체, 매출액 45억, 종업원 16명, 인천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업체의 경우 통상 원부자재를 납품을 받아 제품을 조립, 생산하여 납품을 하고 있으며, 모든 원부자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체의 현실
- 원부자재에 대한 결함을 모르고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품질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 시 결함이 발생 되었을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조업체가 고스란히 부담
-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평가 감점을 부과함에 따라, 조달업체는 우수제품 지정 및 2단계 경쟁에 악영향 초래

개선방안

- 조립 및 생산 불량에 아니고, 원부자재 결함으로 품질검사에서 확인 되었을 경우, 제조업체에게 일괄적으로 감점을 부여하던 기존 평가방법 개선 요망

■ 관련법령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등	-0.5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23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입찰 제도 개선

[정부(국방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

대다수 폐기물처리용역 공공입찰의 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만 제한되어 있어 폐기물 재활용(중간·최종·종합)업체에는 입찰에 참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실정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포함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처리용역 공고에는 재활용업체도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 시켜 달라고 어렵게 업무담당자를 설득해도,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입찰 참여의 제한이 폐기물 재활용업계에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재활용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시행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관련 협동조합, 대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제3조의2제6항) 및 자원순환기본법(제3조제3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국방부, 조달청 등),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은 업무 편이성 위주로 대부분 입찰참가자격을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
-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중간가공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 등으로 생산하여 시멘트소성로, 제지업체 등의 재활용업체로 판매하여 에너지로 재활용 할 수 있으나
 - 입찰참가 기회가 없어 단순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음
- 일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은 폐기물 소각업체와 재활용업체 모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나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입찰참가 자격이 다시 축소됨

< 입찰공고 전환 사례 >

▶ 국토교통부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참가 자격

(조달청 공고 제20200637906-00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 6786]

나. 폐기물 수잡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 개선방안

- 폐기물처리용역의 입찰공고 입찰참가 자격을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에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및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 확대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상 재활용 우선원칙의 목적과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소관부처에서 공공기관 등에 공문 시행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제6항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제3호 가·나목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3.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현장의 목소리 (1)

'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어요. 저희는 1년 정도는 지속되는 원재료 상승 속에서도 적자 상태는 아니었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성실히 납품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원재료가격이 두 배가 오르고 제조원가가 너무 올라 등록단가로 납품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와서 '21년 8월 조달청에 단가 인상 요청을 했습니다. **품목별 원가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연구소에 1,4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서 3개월 동안 원가 증빙 서류를 준비했는데,** 당시 다수 품목 단가 인상률을 유사품목에 일괄 적용하는 지침이 나오기 전이어서 단가 인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또다시 원재료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납품을 포기할 수도 없고 가격 인상을 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올며 겨자 먹기식'의 납품은 계속 되었습니다.

저희는 조달청으로부터 원가계산서류를 지침에 맞게 준비하면 인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업체들을 모집해서 조달청 담당자를 모시고 '22.3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준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이번에는 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 단체가 대표로 조달청 지침에 맞게 원가계산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 데 3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약 1,5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계약단가 조정을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조달청 요구사항대로 일을 진행했는데 '22.6월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 중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준 시점을 변경한 원가계산 자료를 재요청해 또다시 원가계산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2~3배 오른 것은 각종 뉴스, 기관 공시 자료 등을 통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환율, 유가, 금리, 인건비, 관리비 등등 안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동안 저희 중소기업들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이미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들도 있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가계산 증빙을 어디까지 맞춰줘야 우리 중소기업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법적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동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중소기업은 정말 숨이 넘어갑니다.**

- 협동조합, 비공개 요청

현장의 목소리 (2)

단가를 내릴 때는 원가계산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올리는 것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건가요? 한번 원가계산을 맡길 때 여러 업체들이 함께 해서 가격을 낮춰도 원가계산업체에 250만원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단가 인상을 요청하더라도 검토하는 기간에도 원가가 계속 올라 손해가 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같이 세상에서 물가 인상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 중소기업들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청마다 물가상승 반영해주는 기준이 다른 건지 어디는 원가계산서 작성 없이도 반영이 되고, 어디는 그냥 원자재 구매내역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철강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0%는 올랐는데, 한번 올릴 때마다 20~30%밖에 못 올린다고 답변을 하니 이걸 팔아도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원가가 오를 때마다 단가조정을 하기 위해 계속 비용을 들여야 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범위 내에선 비용과 시간 들이지 않고도 인상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시오.

- 용접철망 제조업, 비공개 요청

현장의 목소리 (3)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각종 품목, 비목의 가격 상승시 즉시 계약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체의 손실이 큼니다.

高(고)물가 시 물가변동 요인을 현실에 맞게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후 가격이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조달청은 계약단가 조정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단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본청, 지방청 등) 별 업무 처리 방식 달라 처리기간 및 인상률 등이 상이함
- 조달청이 요구하는 원가계산서를 준비하는 데 품목이 많은 업종은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서류 준비 기간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은 또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

- 비용, 시간을 들여 서류를 준비했는데도 단가 조정이 안되는 사례 발생
- 담당 공무원은 감사 부담 때문에 쉽게 조정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
- 공공조달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납품하는 상황 발생
 - 적자를 보면서 왜 납품하냐고 반문하지만 현금 흐름, 재고 처리 등 우선 공장이 돌아가야 문을 닫지 않기 때문에 적자로 납품을 함

■ 개선방안

- 원가계산 증빙자료에 치우쳐 있는 현행 단가조정 방식을 간소화
 -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침 마련 등 필요
 -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생산자물가지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를 계약 금액의 산출내역에 바로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감사부담으로 단가 인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가조정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시적 예외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2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무목표비율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공공기관들이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려고, 중복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달 계약 물품만 구매하다보니 모든 조건에 다 해당되는 중소기업제품은 의무구매목표 비율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관련부처에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지원 하려고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0%에 다른 구매비율을 중복합산 하냐고 물어봐도 아무런 답도 못합니다.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중복 합산 하지 않는다면,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는데, 관련부처도 현실을 잘 알면서도 아직 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제품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이 규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구매목표비율제도가 있음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종류 >

구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총 구매액의 50%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물품구매총액의 5% 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총 구매액의 1%	총 구매액의 8%

- 적용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으로 법령 상 규정
-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복으로 반영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다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중소기업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구매목표비율과 거리가 있음

■ 개선방안

- 구매목표비율제도 관련, 현재 중복 합산 가능한 것을 1개 항목에만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아스팔트, 시멘트, 레미콘 등의 검사설비 시험 및 측정기기를 개발, 제조 및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생산품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B2B가 주요매출처이며, 지역별 협동조합 혹은 건설 자재 납품 중견,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과 규격이 달라져 이에 따라 측정기기도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공서 수요에 따라 도장측정이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납품 하려는 과정에서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해야 함에 따라 등록을 시도하였지만, **복잡한 절차와 직접생산 확인까지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 동안 등록이 가능 할지 걱정**입니다.

이번에 개발·생산한 제품은 한번 납품하면 추가 수요가 없어 나라장터 물품 등록 하더라도 활용은 일회성에 그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제품을 개발·생산 시 다시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관공서 수요에 따라 개발된 제품은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공서 업무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기 제조업체, 매출액 48억, 종업원 20명, 경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조달물품 등록을 위해서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 제조업체 등록,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조물품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중기간 경쟁제품 : 직접생산확인증명-조달청 제조물품등록-나라장터물품등록
 - 일반제품 : 조달청 제조물품 승인요청-직접생산증빙서류 제출-조달청승인·등록
- 그러나 측정기기의 경우 발주기관의 측정규격에 맞추어 개발됨에 따라 물품등록을 하더라도 제품규격과 가격이 매번 달라짐
- 이에 따라 신규 제품등록이 필요하나 복잡한 절차와 기간소요로 번거로운 행정 절차 발생

■ 개선방안

- 일회성 납품 제품의 나라장터 등록 절차 간소화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등록신청서
 - 나. 관련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 ①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현재 쇼핑몰상의 제품 검색시, 기술인증정보와 기업의 행정관련 보유 인증도 함께 표시되어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의 신인도 평가 항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를 최종선정하기 위해서, 1단계 선정과정에서 각종 인증자료를 참고하여, 신인도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을 후보로 넣는 거죠. 현행 제품 기술 인증정보는 그대로 현행대로 공개하되, 제품력과 무관한 행정 인증정보는 조달 경쟁업체와 수요기관에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월드케미칼, 강원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상의 제품 검색 시, 제품에 부여받은 인증정보(예 : 품질·기술·특허 등) 외에 기업의 행정관련 보유 인증(예 : G-PASS기업·일자리 으뜸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도 함께 표시하고 있음
- 기업이 보유한 인증이 공개됨으로써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신인도 평가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이하 '해당업체')의 최종선정을 위해, 1단계 선정 과정에서 해당업체보다 신인도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을 해당업체와 함께 2단계 경쟁 심사 업체로 선정
 - 유사사례로 과거 우수제품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신인도 점수를 사전 공개하였으나 불공정 행위 등으로 여겨질 수 있어, 현재는 신인도 점수를 비공개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기술 인증정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 보유 행정 인증 정보는 조달 경쟁업체와 수요기관에 모두 비공개하도록 변경(우선 구매 대상, 의무 구매 대상 제외)
-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시에 기업인증 자료를 첨부하도록 변경

■ 관련법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 제6조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및 판매중지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 제공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된 상품정보가 기재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정보의 변경사항 중 '상품일반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2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현장의 목소리

공공조달에 납품을 하려면 원가계산을 해서 가격제안을 해야 하는데 자동제어시스템은 구성부품이 다양해서 원가계산을 하려면 일일이 수작업이 필요하고, 아무리 숙련인력이라 해도 일주일 이상은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한 15년 정도 전쯤에 시스템장비 같은 복합적 구성품들의 가격을 자동산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업체를 통해 개발 했는데. 이게 조달참여를 위해 가격을 산출하는 업체도, 검증하는 조달청도 개인 PC에 설치가 돼야 하는 32비트짜리 전용 프로그램이거든요.

15년 전에는 대부분의 PC가 32비트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PC는 다 64비트로 나오다보니,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체도 조달청도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32비트짜리 구형PC를 별도로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최신 PC에서 구동이 안돼서 구형 PC를 별도로 구비해야하는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 구매업무 능력 및 구매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스템장비 등* 복합적 구성품의 구매가격 산출방식 표준화를 위해 「자동구성 및 가격산출 프로그램」 구축·운영 中

* △자동제어(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전력) △수배전반 △CCTV △무대장치 등

- 수요기관이 원하는 규격에 따라 구매물품 구성이 가능하고 규격과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산출

- ‘자동제어’의 경우 32비트 전용 CS방식*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특성상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업체의 제안가격을 검증해야 하는 조달청도 개인 PC에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64비트에서는 프로그램 작동이 불가

* CS방식(Clinet&Server) : 구조가 간단하여 속도가 좋으나 확장성은 떨어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PC에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운 존재

- 하지만 최근 PC들은 대부분 64비트로 출시되는 만큼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32비트짜리 구형 PC를 추가로 구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신규자재, 표준품셈, 노임품명 등의 변경사항도 미반영 되어있어 활용에 애로

■ 개선방안

- 조달청의 '자동제어' 관련 「자동구성 및 가격산출 프로그램」 업데이트 개발
 - 윈도우 64비트 및 WEB방식*으로 개발,
 - * WEB방식 : OS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동작 가능, 수정사항 쉽게 배포 가능
 - 신규 자재에 따른 산출식, 표준품셈, 노임품명 등 변경사항 실시간 반영

현장의 목소리

콘크리트 제품은 건설자재로 국가 정책에 따라 물량이 수주됩니다. 매년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충남도 농어촌 공사 등 수요기관에서 콘크리트 **각 현장별 물량을 모아서 일괄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기관 입장에서야 모아서 일괄발주하면 1억원이 넘을 경우 MAS 2단계 경쟁으로 가격도 9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발주할 수 있으니 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게 아닙니다.

우선, **과당경쟁이 유발**됩니다. 현장별로 발주하면 여러 업체가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일괄발주하면 1개 업체가 독점하게 됩니다. 낙찰 받은 업체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수로제품의 경우 농수로자재로 봄철 모심기전에 집중되는데 일부업체로 물량이 집중되면 납품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품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하청납품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 지는 거죠.

또, **물류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콘크리트는 고 중량의 제품을 납품하기에 물류비용이 큰 업종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장 인근의 콘크리트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현장별 물량을 모아서 일괄발주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동거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 먼 곳이라도 납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거죠.

현장별로 각각 발주하려면 수요기관에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별로라도 나눠서 발주해 주면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 콘크리트 제조업체, 매출액 57억, 종업원 18명, 충남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콘크리트제품은 특정시기 물량이 집중되는 계절적·지역적 중량제품으로 수요기관의 일괄발주 풍토는 1개업체 독식구조를 고착화하여 업체 간 과당경쟁을 조장하고 일부업체로의 물량 집중은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 우려와 더불어 하청납품 등 불법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납품거리 증가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고유가 시대에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황

■ 개선방안

- 수요기관에서 납품현장별로 나누어서 콘크리트 제품 발주 요망

현장의 목소리

최고가를 넣은 수거업체가 낮은 가격을 넣은 업체보다 적격심사 종합점수가 모자라 입찰에 떨어지고, **적격심사표준평가표의 각 배점규정을 잘 갖춘 대형업체만 낙찰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테면 **배점항목 중 70점을 차지하는 관리능력**은 재활용수거업무와 사실상 무관한데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신생업체나 군소 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업체들은 심사 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지입차를 인수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을 등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순노동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 매출액 19억, 종업원 11명,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적격심사제는 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구나 용역·서비스업체 등 선정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 받은 후 부실공사나 부실운영 등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업체를 사전 심사하는 낙찰방법임
- 그러나 적격심사제를 아파트 재활용품을 최고가로 매수·수거하는 단순 노동의 업체선정 입찰에 적용함으로써 대다수 재활용품수거업체들이 입찰에 참여·경쟁하지 못하고, 대형업체만 낙찰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재활용품 판매낙찰 규정이 「적격심사제(최고낙찰제)」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아파트마다 낙찰방법이 달라 업계 혼선 초래

■ 개선방안

- 재활용품 판매 낙찰방법을 적격심사제(최고낙찰제)에서 최고낙찰제로 변경

■ 관련법령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2. 사 업 자	가. 공사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장기수선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일반보수	-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나. 용역	- 전기안전관리		경쟁입찰 (용역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정화조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경쟁입찰 (용역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다. 물품	구입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경쟁입찰 (구입가격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매각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경쟁입찰 (매각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라. 기타	잡수입	- 광고게재 등	경쟁입찰 (수입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현장의 목소리

조달우수제품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활용 실적 저조로 가점부여 실효성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PIN-UP상 신인도 가점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고생으로 특허와 기술개발을 준비하여 온 **영세업체들에게는 신인도 가점 1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구제품은 평가 배점(100점) 중에서 디자인 평가 점수가 20점으로 우수제품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디자인 수상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 때 심사원들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자인상을 삭제한다는 것은 PIN-UP상을 받은 가구업체들의 우수제품 지정에의 접근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삭제할 것이 아니라, 부활시켜 가구업체들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가구 제조업체, 김해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상 신인도 가점 항목 중 과거에는 “핀업 (PIN-UP)상”이 있었으나 '19년 개정 시 가점 항목에서 삭제

※ 핀업(PIN-UP)상

- 주최/후원 : (사)한국산업디자인협회 / 산업통상자원부 *매년 시상
- 자격대상 : 국내외 기업의 디자인

- 핀업상은 '97년부터 시행되어 국내 우수디자인 개발 촉진 및 디자인 업계 공공 조달 확대 등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옴
 - 과거 수상 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1점) 혜택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회 확대가 가능 → 공공조달 제품 디자인 품질 제고
- 현재는 수상 기업의 우수조달제품 등록 관련 혜택이 없어 시상 저명성 및 기업의 출품 의욕 저하 우려

■ 개선방안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상 PIN-UP상 가점 대상으로 재포함
 - “PIN-UP상” 수상 제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사)한국산업디자인협회와 한국디자인협동조합*이 공동주최하도록 하여 공공조달물품의 품질향상을 도모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

■ 관련법령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1호의 16]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별지 제1호의 17]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서

[별지 제1호의 16서식(제4조제2항)] 신인도 자기평가표

Ⅰ. 가점항목		
①~② (생략)		
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하나만 인정)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행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5년)	(1점)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삭제>, <삭제>, <삭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1점)	

[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서 (표 상동)

Ⅰ. 가점항목		
①~② (생략)		
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하나만 인정)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행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5년)	(1점)	
우수발명품, PIN-UP상(한국산업디자인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2점)	

현장의 목소리

누구나 집에서 빚어 마실 수 있던 술은, 1909년 허가받은 양조장에서만 술을 빚을 수 있도록 규제하면서 **주류업계는 최신 양조기술과 시설을 갖춘 대기업 독점의 희석식 소주와 맥주시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2016년, 세법 개정으로 1KL이상 5KL미만 저장용기를 구비한 경우 막걸리 양조장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희석식 소주와 맥주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막걸리 성장세는 회복될 수 있었고, 지역별 수제맥주 브랜드들이 등장하며 주류업계에 건강한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대기업과 다르게 우리 소규모주류제조업자들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동시에, 마케팅 역량 등 대기업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도 주류의 통신판매를 법으로 막아놓고 있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역 특산주 면허의 경우 전통주 활성화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유명인들의 지역 특산주 면허를 통한 주류업계 진출로 소규모주류제조업자들의 살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소규모주류제조업자들 또한 각 지역 특색을 살려 주류업계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육성이 필요한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국민건강침해, 청소년 보호 측면만 고려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도 배달로 직접 수령하는 요즘, 주류업만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해 시장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규모주류제조업 또한 전통주와 같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되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완책을 마련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규모주류제조업체, 강원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위임을 받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주류 통신판매자의 범위와 수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전통주*를 제외하고,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

* 전통주 또한 우체국, 상업 온라인쇼핑몰 등 정해진 수단에 한해 제한적 허용 중

- 특히, 가정 내에서의 주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 변화 속에서 주류의 통신판매 금지는 국내주류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됨
 - 비대면소비 증가에 따라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점자 또한 통신판매 가능토록 법개정(2020.7.1.)되었으나, 소규모주류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신판매 금지
- 특히 사회 유명인들의 전통주 면허 발급을 통한 주류업계 진출사례(통신판매)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소규모주류제조업자 또한 전통주제조업자와 같이 주류업계 활성화를 위한 보호·육성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류제조업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현재 유럽의 주요 10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와인, 맥주, 증류주의 통신 판매 허용중

■ 개선방안

- 소규모주류제조업에 통신판매 제한적 허용

■ 관련법령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14호)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점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0.7.1. 개정)
 2. <삭제, 2021.5.14.>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현장의 목소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 종류를 정비업소가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제조품은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재제조품이 품질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재생품과 차별화되는 제품인데도 재생품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비업소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재제조품을 사용하도록 설명하는 경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설명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대기업이 부품 시장까지 장악한 독과점 구조 속에서, 재제조품 이용 활성화는 이른바 애프터마켓 시장의 문을 중소기업들에게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행 자동차 부품 의무 공급 기간은 단종 시점으로부터 8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완성차 대기업의 협력업체 입장에서 신부품을 재제조품으로 대체하면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재제조품 제조업체,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재제조품은 이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해 분해·세척·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 수준으로 만든 것으로,
 - 전국 약 1,400개 업체가 자동차 재제조품 제조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
- 재제조품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절약, 원자재 절감 등에 기여
-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수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자동차 수리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재제조품을 알고 있는 비율은 26.2%(131명), 재제조품을 이용한 비율은 2.4%(12명)에 그침('20.6월 조사)
- 단순히 세척해 잔존 수명만큼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중고품이나 외형이 손상된 부품을 보수해 재사용하는 재생품과는 다른데도, 오히려 품질이 불확실한 재생품 등이 자동차 정비 시 의뢰자 고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제조품은 누락된 상황

-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와 순정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수요처인 정비업소가 정비를 의뢰한 소비자에게 재제조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
- 상기 조사에서 정비사업자로부터 교체 수리 부품 선택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84명(36.8%)에 불과했으며, 서울 소재 정비사업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부품 선호도 조사에서 거의 모든 정비사업자(58명, 96.7%)가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응답

■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법 관련 조항(제58조제4항제2호)의 내용에 재제조품을 추가
 - (현 행)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
 - (개 선) 신부품(新部品), 재제조품, 중고품… (이하 동일)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2호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현장의 목소리

지방에서 소규모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년 전 쯤에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수요가 적어 재고가 쌓인 상태입니다. **재고처리를 위하여 가격할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퍼센트만 할인이 가능하여 도서 재고 처리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하여는 할인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2014년 11월 21일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등을 제외하고는 가격할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래된 도서의 효율적인 처리로 서점 경영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도서 구매자의 구입부담 완화로 도서 구매율 향상에 따른 책 읽는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 가격할인을 할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서점 운영업체, 매출액 2억, 종업원수 1명, 전북 완주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 제22조에 따라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음
- 당초*에는 발간된 지 1년 반이 지난 도서에 대하여는 할인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 2014년 5월 20일 공포(2014년 11월 21일 시행)된 출판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을 제외하고 가격할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

* 당초 할인 가능 간행물[출판법(법률 제11229호, 2012. 1. 26.)]

-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보다 도서에 대한 수요가 적거나, 기술의 발전이나 연구의 성과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서적 등 재고가 쌓이게 되면 가격 할인 등의 방법으로 재고처리를 하고자 하여도, ‘도서정가제’로 인해 불가능하며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폐지로 처분할 수밖에 없음
- 물론 출판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출판사의 재량으로 정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판매자인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재고처리 비용 절감에 크게 효용이 없음
- 도서정가제는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유럽에서는 2년 이상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할인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정가제 대한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음

■ 개선방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7항 개정
 -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한 가격할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4. 5. 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 5. 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⑧ (생략)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⑧ (생략)

현장의 목소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하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경우 완성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의 주문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해도 납품단가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철강류 자재를 가공하여 부품을 제조하는 **우리 회사의 경우 부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만, 납품하고 받는 대금은 그대로인 상황이라 영업손실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복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대기업과의 격차를 점점 벌어지게** 합니다.

현재 납품단가 조정협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단가 현실화 이야기만 해도 이후 거래물량 취소, 계약연장 거부 등 기업의 목숨줄이 달린 무언의 협박**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단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대기업의 완성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납품 단가만 기존 가격 그대로 유지하다니요. **중소기업이 더 이득을 취하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이익 배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장되어야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근로자의 임금·복지 보장 등을 위한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납품단가 연동이 의무화되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이익 보장과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 정밀금형 제조업체, 매출액 117억, 종업원 71명, 경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납품단가연동제는 2008년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시장원리 훼손, 중기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문제로 납품단가 조정협약만 의무화
 - 납품단가 조정협약의 요건이 까다롭고,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상황
- 원자재 가격이 2020년 대비 51.2% 상승한 상황에서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

- 납품단가 연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장 필요
- 중기부는 납품단가연동제 표준약정서 마련(7월말) 및 시범사업 운영(8월) 예정

■ 개선방안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및 보복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 ①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지자체 위생과에서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의 요식도매 조합원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기타식품판매업)이라 규정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의 운영주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와 이해증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가권자 등으로부터 회계, 조합 운영 등에 대해 관리 감독(감사 등)을 받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식품판매업 규제대상 영업장(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이 아니며 출자를 한 조합원(슈퍼마켓, 요식업 도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상품을 공급(공동 구판매 사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조합원(슈퍼마켓, 요식업도매사업자 등)에 제공하는 식자재는 조합원 업체를 방문하는 최종소비자에 판매목적으로 제공되는 중간재임이 명백하므로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의 중간재 제공행위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 진주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중기부는 골목상권인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에 의해 전국에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 32개를(협동조합을 통해) 설립 운영 중
 - 경남지역은 3개의 협동조합(경남거제슈퍼마켓(조), 경남창원생활용품유통(사), 경남진주 슈퍼마켓(조))이 각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 운영 중
 - 각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는 고유목적사업인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슈퍼마켓사업자, 요식업도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식자재 등을 공급(공동구매) 하고 있음
 - 공동구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여 물가안정과 조합원 경쟁력 제고
- 지자체(거제시, 진주시)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의 공동사업(공동구매)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등에 따라 기타식품판매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영업신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영업신고 미신고로 거제시는 경남거제수퍼마켓(조)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주시는 경남진주수퍼마켓(조)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

■ 개선방안

-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의 공동구판매사업이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공동사업 활성화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

제36조(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 나. 식품판매업
 - 6)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Ⅵ. 신산업

1 규제 샌드박스로 법제화된 산업에 대한 책임보험료 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의 목소리

공유주방은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입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선 보험에 가입을 해왔는데 이번에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총보상 한도가 무제한이어서 여전히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영역에서도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간이음식 포장판매업체, 매출액 169억, 종업원 134명, 경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규제 샌드박스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개별 사고당 보상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총 보상한도는 무제한인 것이 특징

- 개별 사고시 사망의 경우 보상한도가 1.5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총보상한도는 제한이 없어 관련 사고가 수십건 발생해도 모두 보상해줘야 하므로 보험료가 높음*

*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평균보험료가 200만원이나, 규제 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평균보험료는 650만원

○ 공유주방도* 식품위생법상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6월부터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에 사업자들은 규제 샌드박스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했음

* 공유주방 :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 공유주방의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 이에 2021년 12월 30일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받았음

- 개정된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사업자들은 여전히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이때 책임보험의 총 보상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가입업체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
- 이미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정식허가가 난 신사업 분야의 책임보험임에도,
 - 규제 샌드박스 당시의 무제한의 총보상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해당분야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무겁게 함

■ 개선방안

- 규제샌드박스로 법제화된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보험의 연간 총 보상한도 규정 → 보험료 수준 완화
 - 시행령 또는 내부 고시 등에 총보상한도 규정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의 2

제44조의2(보험 가입)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현장의 목소리

국가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한다고 얘기는 많은데, 체감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중국산 드론의 가격과 기술력에 치여 사업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국내 드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드론의 개발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특히, **국내 드론 제조사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시로 테스트 비행을** 해야 하지만 이것부터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수도권 전역이 비행금지 구역 또는 **관할기관의 비행승인**이 있어야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고, **드론 제조사**도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비행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며칠이나 걸리는 일입니다. 상시로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광나루 드론공원 등이 있지만 **테스트마다 비행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테스트비행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우수한 인재 확보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드론 산업, 특히 국내 드론 제조업을 육성하려면 가장 먼저 드론 제조사가 신속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드론 제조사가 별도의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신제품을 테스트 비행**을 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드론 제조업체, 종업원 12명, 경기 하남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전역은 드론의 비행이 제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국내 드론 제조사에서 수시로 해야 하는 신제품의 테스트 비행의 경우에도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비행승인이 필요하여 신제품 개발에 애로
 - 드론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H/W, S/W를 수시로 변경해 가며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서울 광나루 등 수도권 일대에 드론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드론공원이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량이 제한적이며, 테스트마다 드론공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비효율적
- 원활한 테스트 비행을 위해 사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우수 인재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음

■ 개선방안

- 국내 드론 제조사가 수도권 내에서도 별도의 비행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테스트 비행을 할 수 있는 특례(공간) 설정
 - 이를 통해, 국내 드론 제조사의 신제품 개발 환경 개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도모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구역·통제구역·주의구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내 드론제조사의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 확인 수수료 인하

[산업통상자원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현장의 목소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는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 확인'을 통해 수입시 관세감면을 지원하고 있는데, 드론의 제조를 위해 부품의 일부를 수입해야 하는 국내 드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관세가 감면된다면 가격경쟁력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세 감면은 좋지만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내야 하는 건별 수수료가 3만원으로 너무 비쌉니다.** 주로 작은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드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이 협회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상쇄**되어 가격경쟁력 확보 효과가 없어지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례로, **10만 원짜리 부품을 수입해오는데 3만원 수수료를 부담**하며, **추가로 전자문서 사용료도 3천 원**이 붙기도 했습니다.

주로 작은 부품을 수입하는 드론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국내 드론 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해주면 좋겠습니다.

- 국내 드론 제조업체, 종업원 12명, 경기 하남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드론의 부분품 중 일부는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 확인'을 통해 수입
 - 협회의 승인시 탄력 양허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감면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드론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 기대
 - 협회 내규에 의해 수입승인의 수수료는 1불당 0.4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협회는 별도로 최저수수료를 3만원, 최고수수료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주로 작은 부분품을 수입하는 국내 드론 제조사의 경우, 대체로 수입하는 부분품의 가격과 규모가 작아 건건이 최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예컨대, 10만원짜리 부품을 수입해오는데 3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므로 관세 감면을 통한 비용절감을 기대하기는커녕 수수료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개선방안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최저수수료 조항 삭제 또는 수수료 인하
 - 만약, 전면 삭제 또는 인하가 어려울 경우, 국내 드론 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드론 제조사에 한해서라도 최저수수료 조항 삭제

■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6조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별표3에 계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 「항공기 및 수입품 수입승인요령(협회 내규)」 제14조

제14조(수수료)①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1불당 0.4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본회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기초지자체]

현장의 목소리

태양광 발전시설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당연 이격거리입니다.

간혹 근거도 없는 오해(빛 반사, 중금속 검출, 효율성 문제 등)로 무작정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오해라면 이미 과학적으로 해소되었으니 설득할 자신은 있습니다. 실례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차장은 자연환경 훼손여지도 없고 에너지효율화도 되는데다가 고객편의(그늘)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격거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심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을 비롯해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태양광 시설의 최대 장점인데, **시·군·구별로 도로나 주택이나 무슨 건물만 있으면 수백 미터씩 이격거리를 두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과도한 이격거리는 그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마라는 것과 같아요. 효율적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이 실생활에 폭 넓게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태양광 발전시설 제조업체, 매출액 50억, 종업원 27명, 경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도 주요 자원으로 주목받음
 - 태양광 시설은 산지(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 유휴부지(지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활용 가능, 즉 효율성 높음
 -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기초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 (태양광은 면적확보가 중요)
 - 기초지자체별로 도시·군계획 조례에 이격거리(안전을 위해 띄우는 거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도로, 주택과 태양광 발전소 간 거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추가적인 태양광 시설 설치에 애로로 작용
- *사례) 구미시(500m) / 경산시(300~500m) / 김천시(500m) / 문경시(500m) / 봉화군(300~500m) / 안동시(300~1,000m) / 영천시(500m) / 청송군(1,000m)
- 타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태양광 관련 법인을 구성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수익사업도 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이격거리 제한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가로막고 있음

- 특히 도로·주택·관광단지로부터 500m 정도의 강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역은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이 1% 미만으로,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됨

■ 개선방안

- (1안) 도시·군계획 조례의 이격거리 제한 폐지 혹은 최소화 (100m 이내)
- (2안) 조례의 이격거리 사항을 삭제하고, 국토계획법으로 전국에 공통 적용될 최소한의 이격거리 기준 별도 마련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 제2호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초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5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현대화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도로를 지나다보면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꼭 친환경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는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되고 있고 그런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장비 역시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쓰이지도 않는 '회전반경측정기'나 '토인측정기' 같은 수동기기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등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정비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현실성 있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개정으로 차량정비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정비업체, 대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의 장비기준은 변동 없이 고착화, 친환경자동차 등 첨단화된 자동차 정비 곤란(면적만 변동)
- 차량정비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신뢰 확보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공급에 따른 정비 수요 대응 필요

■ 개선방안

- 제작사 정비매뉴얼을 기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11조의2 정비업 등록기준에 현실성 있는 주요 정비용 장비 도입 법제화
- 친환경전기자동차 정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정비안전사고 방지
- 자동차 제작기술 첨단화에 맞는 정비장비 현대화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2) 체인부록(1톤 이상)	-	-	-	○
	3)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 검사기구	1) 제동시험기	○	○	-	-
	2) 전조등시험기	○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4) 속도계시험기	○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2) 압력측정기	○	○	-	○
	3) 회전반경측정기	○	○	○	-
	4) 휠밸런스	○	○	○	-
	5) 토인측정기	○	○	○	-
	6)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7) 엔진종합시험기	-	-	-	○
	8)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
	3)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	-	-	○
	4) 밸브시트카터	-	-	-	○
	5) 크랭크연마기	-	-	-	○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2006년부터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이 아무런 조치 없이 1년 이상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것에서 착안, 범죄에 사용된 연락처, 계좌번호에 대한 사전조치를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2012년 당사는 금융사기방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법인 설립 후 통신사, 금융사 등과 사기예방 서비스 제공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2015년 국내 대형은행과의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사기방지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예방의 급박성을 인정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범죄 혐의자의 동의를 받아 사기피해를 예방해야한다는 현실적이 않은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은 당사가 협업을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예방의 급박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민간기업이 **범죄예방을 하는 것은 급박함이 인정되지 않고, 경찰청이 범죄예방을 하는 것은 급박함을 인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법해석**입니다.

당사는 17년 동안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분야에서 최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의 운영 노하우 등으로 분야를 선도해 왔으나, 일관되지 않은 법령해석에 따라 존폐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전히 당사는 금융사기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당시의 모델을 폐기하고, 새로운 모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당시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은행과 출시를 앞두었던 서비스가 무산되고, 이후 인터넷사기피해 등의 피해가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급증하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일관성 없고 보수적인 법령해석의 관행을 벗어나, 민간의 참여를 통해 범죄예방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에 대한 개인정보의 활용폭을 넓혀, 국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온라인정보제공업체, 매출액 11억, 종업원 16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보수적인 법령해석에 의한 범죄 행위 방임
 - 사이버범죄 용의자에게 개인정보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성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상에 존재하는 내용조차도 보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 현실을 반영한 법해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경찰청의 부족한 데이터 품질
 - 민원 접수 3건 이상이면 사실 확인 없이 정보가 공개되어, 잘못된 정보가 노출됨
 - 민간 서비스는 사실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범죄 예방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용 허용 필요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현장의 목소리

현재 직업소개소 인허가 요건에 따르면 사무실 평수기준이 10㎡, 즉 3평 정도를 갖추도록 되어있는데 직업소개사업은 인적자본이 중요한 업종이고 근무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최소 몇 평 이상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포털이 헤드헌팅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들도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면적 기준이라는 진입장벽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급인력알선업체, 매출액 3억, 종업원 5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직업소개사업, 특히 헤드헌팅 분야는 전문인력 중심의 서비스업종으로 커뮤니케이션, 미팅, 출장, 자료작성 등의 업무 위주이고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 특히 창업 초기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큰 상황임
- 코로나 등 외부환경 변화 및 기술혁신으로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사무실을 두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헤드헌팅 분야에서 1인 기업도 쉽게 창업하고 경쟁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시기 바람

■ 개선방안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요건 폐지
 - 최소 법인 외 개인사업자만이라도 시설요건 미적용
 - 직업소개사업종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상 어렵다면 헤드헌팅 분야에만 한정 해서라도 시설요건 제외 요청

■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 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8 P2E 게임 국내 서비스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 to Earn), M2E(Move to Earn) 등 X2E(X to Earn)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많은 **게임사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P2E를 적극 차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P2E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이를 준비 중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P2E게임을 가상자산 현금화와 관련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금지**하는 실정으로, 많은 **게임플랫폼 개발 중소기업사들은 해외로 사업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과 연관 산업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해당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게임 및 블록체인 연관 사업이 국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P2E게임의 국내 서비스 출시 및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청 드립니다.

-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 (2)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 대형 게임업체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일 만큼 전 세계적인 신산업이지만 국내에선 출시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행성과 환금성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내 P2E(Play-to-Earn, 게임을 즐기고 돈도 버는 게임) 허용에 대해 매우 어중간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국내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P2E로 글로벌 진출을 선언한 국내 중소 게임사들은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한 채 반쪽 게임에 머무르거나, 해외 게임으로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업계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 중소 게임개발 업체, 매출액 1,000억, 종업원 30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체육관광부는 P2E 게임이 신기술, 사행성 등 양면성이 있어 종합적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블록체인 활용한 게임개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심각
 - 국내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연결된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역시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
- 정부 기관별로 규제와 진흥이라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움.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의 사행성 측면을 엄격하게 통제,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이 우려된다고 제재하고 있음
 - 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 콘텐츠 개발에 신규 예산을 배정하고,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으로 분류

■ 개선방안

- P2E게임의 등급분류 기준 마련 등 국내 서비스 허용
-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가운데 사행성 규제 조항 개선 절실

■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9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상품 품질저하와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점 사업자당 판매가능 상품 수를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자는 사업 영역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등록할 때 주소지 등록기준이 모호합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한 주소지당 한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하냐는 게 세무서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오피스나 오피스텔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 인정이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공유 오피스의 공간을 최대한 쪼개어 임차하거나, 심지어 1.5m²만 임대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임대 하는 것은 비상주 형태이다 보니 실제로 임대받은 공간을 보러 가면 제 자리는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갑니다. 재고를 보관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트북만 있으면 사업이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은 같은 주소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혼란이 있습니다. 모호한 사업자 등록 주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꼭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 해외구매대행업체, 매출액 8억, 종업원 5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유통의 경우 임대료 및 재고비용 부담이 적은 구매대행,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매칭 등 다양한 방식의 창업이 활성화되었으며 판매망 운영, 고객 서비스(CS) 등 사업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진행
-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무분별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상품 품질저하와 그에 따른 고객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점 사업자당 판매 가능 물품 개수를 제한
 - 이에 입점 사업자는 추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판매망을 확대
- 현행 부가가치세법(제8조)상 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지와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나, 구체적인 주소지 등록기준 미비로 세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대한 사업자 추가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짐

- 동일 주소지라 하더라도 사업자 추가 등록이 가능하거나 공유오피스, 오피스텔 등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별도의 주소지로 인정되며, 반대의 경우도 있음
- 동일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 등록이 안 될 경우 지자체를 옮겨 다니며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공유오피스의 상주 불가능한 최소면적(1.5m²)을 임대하는 등 비정상적 사무공간 임대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 개선방안

- 온라인 유통사업자 등록시 주소지 기준 개선(동일 주소지에 대한 추가 사업자 등록 허용)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주택가, 공공기관 등지의 혼잡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 2단 주차장치를 개발 했습니다. 이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검사를 받기위해 관련부처에 문의한 결과 현행 주차장치 법규정을 따르게 되면 그 어디에도 새롭게 개발한 기계식 2단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안전도 검사팀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설치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라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인증 승인을 득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조례에 따르면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대행업체를 찾아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나, 과거 법규에 따른 부수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검사를 받은 기업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 설치할 수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 안전도 검사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근무자들의 복지부동, 법규제에 막혀 제품을 개발하고도 시장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금형사출 제조업체,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49명, 경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규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가미된 주차장치를 개발하더라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종교시설 등의 장소에 1대의 주차공간에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차장치 설치가 불가능함

〈현행법상 문제점〉

- (1) 주차기 외곽 사면으로 1.6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해야 하는 조건
- (2) 주차기 전면 8.0M 길이 통로 확보해야 하는 조건
- (3) 전면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

개선방안

- 도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의 주차면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안전도 검사 기준의 재정립 및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 지방자치 단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 필요

■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의 규정
-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주차장 조례 및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참고자료 : 업체의 추진상황]

※ New Concept 2단 주차 장치 개발 배경

아래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산업단지 내 주차장 사용 실태를 오랜기간 관찰하면서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인하여 새로운 개념의 2단 주차 장치 개발에 착수

※ 주차상황 사례

〈부천시 소재 기업의 주차 상황〉



〈복잡한 도심 주택가 주차 상황〉



※ 기존 2단 주차 장치의 문제점(사용자 관점)

기존에 2단 주차 장치는 2층 주차 차량 출차 할 경우 반드시 1층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한 이후 차량을 출차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편의성이 전혀 없으므로 인하여 주차 장치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당사가 개발한 New Concept 2단 주차 장치의 효용성 및 장점

당사가 개발 착수한 2단 주차 장치는 1층에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2층의 차량을 마음대로 주차, 출차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에서 주차 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효용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기대 효과

차량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같은 면적에 14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주변에 불편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차량 입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현장의 목소리

원주는 2019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수도권 기업들이 꾸준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주 지역 대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다보니 신산업 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의료기기 특성상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최근 유럽에서 새로운 인증제도가 신설되면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구를 만들고 나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원주시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다수의 기업들이 이전함에 따라 전문 인력 수요 증가
 - 원주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타지역 취업으로 인력채용에 애로 발생, 원주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해외 인증 취득 시 소요기간 길고 비용도 높아 영세기업에 애로 발생
 - 2021년 5월 유럽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의료기기관리제도(MDR)가 시행되면서 인증난이도 또한 대폭 상향, 이는 유럽시장 수출여부와 직결
-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해서는 해외전시회 지속 참여 필요한 상황으로, 참여비용 충당에 어려움 존재
 - 해외전시회 참여비용 지원 및 규제자유특구 내 홍보사설 설치 필요

■ 개선방안

- 원주소재 대학에 계약학과 등 특화과정 개설(품질관리, 디자인, R&D, 인허가 등)
-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1,2층 상설전시장을 홍보관으로 활용

12 원격의료 제도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현장의 목소리

격오지 거주 주민, 취약계층은 병원 내원이 어렵습니다. 이 분들에 한정해서라도 비대면 원격의료 행위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현황 및 문제점

- 격오지 거주 취약계층은 자가 건강관리가 취약하며, 코로나19로 병원방문도 어려움
→ 디지털기반 비대면 원격 의료의 제도 변경이 필요
- 원격의료를 이미 시행중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관련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발전 미비

■ 개선방안

- 원격의료 제도 도입
 - 비대면으로 환자를 원격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의사의 판단하에 진찰 권장*, 내원 안내, 원격상담, 원격 처방 제공 등
- * 진료과 선택 등 최저한의 의학적 판단 제공 등

■ 관련법령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3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 완화

[행정안전부]

현장의 목소리

'자전거는 사람이 이동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국내 및 수출시장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디젤화물트럭 도심 진입규제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자전거는 개인용보다 말단 물류에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주행을 위해 차체무게가 30kg을 넘어서는 안 되며 전체 폭은 700m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화물전기자전거는 무게와 크기 제한이 없어 자전거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화물전기자전거를 물류에 활용함으로써 물류운영 사업장에서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목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자전거 규제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만을 생각하던 과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화물운송용 전기자전거까지 검토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민, 쿠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말단 물류 및 배송시장의 성장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화물전기자전거는 새로운 배송수단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세계 시장에서 앞서 갈수 있도록 빠른 규제개선이 필요합니다.

- 전기자전거 제조 스타트업, 매출액 5억, 종업원 10명, 서울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자전거 시장은 대부분 중국OEM 제품 판매 형태로 자체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제조, 인증 등 기반이 약한 실정임
- 특히 자전거 관련 법률 및 규정은 과거 사용자 안전을 위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차체무게 30KG 미만 등 규제사항 존재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중이며, 특히 독일 등 유럽에서는 디젤화물트럭 도심 진입규제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말단물류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무게와 크기 제한이 없고 자전거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임

- 현재 말단물류는 화물트럭이나 오토바이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친환경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화물전기자전거 단계를 거쳐 초소형 모빌리티 개념으로 확장·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차체무게 및 크기 제한 완화
-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

■ 관련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다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Ⅶ. 창업 · 벤처

1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스타트업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규모에서부터 회사를 키워온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를 하면 창업주의 지분이 줄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역량이 창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아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도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합니다.

- IT 업체,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투자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게임체인저 역할
 - 국내 유니콘 기업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의 유니콘 기업수는 더 빠르게 증가
 - *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개) : ('18) 6 → ('19) 10 → ('20) 13 → ('21.9월) 15
 - ** 주요국 유니콘 기업 수(CBInsights, '21.9. 개) : (미) 419, (중) 165, (인) 40, (영) 34, (독) 19, (이스) 18, (프) 17, (캐) 16, (싱, 브) 13, (한) 11개(11위)
 - '21.1~7 신규 유니콘 : (미) 169, (중) 26, (인도) 12, (영) 7, (이스라엘) 12
- 유니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시 창업주의 지분 희석과 이에 대한 우려가 투자 및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대두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희석 사례〉

기업 (설립일)	'20년 매출액	총 투자유치금액	창업주 지분 변동
A사('99.5월)	247억	104억	85% → 29%
B사('16.9월)	363억	162억	60.9% → 27.75%
C사('15.11월)	13억	146억	54.34% → 26.44%

- 이에 따라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추진

* 제2벤처법 확산전략('19.3.6), K-유니콘 프로젝트('20.4.9),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20.10.16)

- 스타트업, 벤처, 테크기업이 발달하고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들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헝가리,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허용하고 있음
 - 최근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18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

〈아시아 주요국가 복수의결권주식 현황〉

구분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상장 허용시기	'18.4월	'18.6월	'18.9월	'19.6월
대상기업(상장시)	혁신적기업	주식회사	과학기술기업	기술혁신기업
의결권수	10:1	10:1	10:1	10:1

- 복수의결권은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

〈주요국가의 차등의결권 비교〉

구분	국가	비고
회사법 불허 /상장 불허	한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독일 : 부분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회사법 허용 /상장 불허	이스라엘, 호주	-이스라엘: '90년부터 상장기업 차등의결권 발행 금지 -호주: '93년부터 차등의결권 구조기업의 상장 금지
회사법 허용 /상장 허용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 테뉴어보팅 채택 -일본 : 단원주 제도를 통해 상장 허용 -홍콩, 싱가포르 : '18년도부터 상장 허용 -중국 : '19년부터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허용

※ 자료 : 차등의결권 논쟁의 주요 흐름과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이슈보고서 19-07)

■ 개선방안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 (발행요건) 창업주에 한정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
 - (발행한도) 1주당 의결권은 10개 한도로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발행절차) 가중된 특별결의(총주식수의 3/4)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 발행
 - (보통주식 전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3년

유예),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남용을 방지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내에서 유효

- (복수의결권 행사) 소수주주 보호, 대주주 견제 등을 위해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제한 (1주당 1의결권 행사)

*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 이사의 보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 (발행보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행내역의 공시 및 관보고시로 투명성 확보

-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중기부에 신고하고 중기부는 직권으로 조사. 보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규정 신설

** 위반행위 인자·신고, 허위발행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5년 전에 창업한 제조업체입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연구시설을 확보하려 했는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다 보니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75%는 매우 큰 감면 혜택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리를 잡고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기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체, 대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에 의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짐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해서 감면혜택(75%) 있음
 - 그러나, 대다수 창업기업은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함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기술 및 제품개발에 평균 2년 소요되며
 - 제품/기술의 시장 출시 후 매출액과 이익금으로 부동산(생산시설, 연구시설 확보) 취득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취득세 경감 요건(창업 후 4년 이내)은 창업 기업 현실에 부합하지 못함

■ 개선방안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의 완화
 - ‘현행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에서 5년으로 기간 연장

현행	개정안
<p>『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p> <p>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p> <p>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p>	<p>『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p> <p>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산업에 맞춰 발전하므로, 신기술이 나올 때 마다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술발전을 사전 예측해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산업이 나왔을 때 규제가 속도감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들은 진입규제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기업은 기존에 없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만큼, 기존 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령체계와는 필연적으로 충돌
 - 특히 신산업 영역의 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는 ‘진입규제’로, 사업모델이 있어도 아예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
 -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합의와 기존 산업의 소프트 랜딩도 중요하나, 미국이나 중국 등 창업 생태계가 발전한 곳에 비해 아쉬움이 많은 상황
 - 보다 속도감 있는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

■ 개선방안

- ① 개인정보 및 클라우드 규제 완화
 -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
- ② 예측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 구축
 - 규제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니라 제도와 법령에 따라 운영해야 함
- ③ 산업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동반, 이에 사고 등 위험 관리가 핵심
 - 선진국은 위험에 대한 공포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위해성 분석(risk analysis) 기법을 위험관리 전반에 적용함

※ 출처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실현을 위한 혁신·벤처 정책제안

현장의 목소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면서 플랫폼이 법률, 의료같은 전문서비스 영역에 진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편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디만, 플랫폼의 등장이 기존 시장영역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전문직역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민적 편익을 고려해서라도 플랫폼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 기득권 세력의 전방위적인 견제는 새로운 모델의 서비스를 시도하는 초기 벤처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전통적인 요소로,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달하며 기득권이 국가제도로 유지되는 전문직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 (대표적 갈등 사례) 로톡(LawTalk)-대한변호사협회, 강남언니-대한의사협회, 삼짚삼-한국세무사회 등 간의 갈등이 대표적임
- 현재 전문직역 단체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뛰어넘어 규제를 일삼고 있고, 각 직역의 이익만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서비스도 자의적으로 금지·규제하는 상황
 -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음
 - * (예시) 법률 플랫폼 로톡은 ①수사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②법무부도 여러 차례 합법이라고 유권해석 했음. 그러나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플랫폼 이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어길 시 징계하겠다고 정함
 - ** 로톡 변호사 수는 6개월만에 52%(21'3·⇒21'9), 매출은 67.4%(21'4⇒21'8) 감소
- 국내 벤처기업은 성장초기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기득권 세력의 고소·고발전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음
 - 반면 중국의 경우 신사업 등장 시 5~10년이 지난 후의 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여 초기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함
 - 이와 같은 규제 무풍지대, 즉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는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글로벌 유니콘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함

- 우리나라 벤처기업 시장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음
 -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관련 단체들은 공급자의 지위에서 시장의 규칙을 정함
 - 국민과 전체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개선방안

- 기득권의 세력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 강화
 - 전문직역 단체가 부당하거나 법을 뛰어넘은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담당 소관부처에서 지휘 감독 실시
 - 전문직역 단체가 법률로부터 일부 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해도, 모법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 규제는 자제해야 함
 - 건전한 시장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한국형 규제 무풍지대 제도 도입
 - 한국형 규제 무풍지대(K-화이트 스페이스) 제도를 도입
 -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담당
 - 합법 판정을 받은 서비스는 지속 가능하도록 적극 보호해야 함
- 기대효과
 - (신성장동력 창출) 전문직역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다수 출현해 ‘제2 벤처붐’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은 국가적 보호가 있어야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방지 가능
 - (비대칭성 완화) 법률·의료* 등 전문직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벤처·스타트업의 발전으로 소비자의 편익 증대 가능

* 대표적인 레몬마켓(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

※ 출처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실현을 위한 혁신·벤처 정책제안

5 데이터산업 진흥 저해 법 규정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의 목소리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형 자산 즉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맞춤형, 개인화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소비자의 만족이 극대화되고,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3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각종 개념이 모호하여 기업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기준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높아지다 보니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어도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특정 목적으로는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의료 분야를 규율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의 '익명정보'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두 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른 것입니다.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게끔 **통일성 있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점1)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자본, 노동과 같은 기존 생산 요소를 능가하는 미래 경제의 원천
 - 이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을 위해 데이터3법 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되었으나,
 - 여전히 각종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 부담 가중
- (문제점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21.1.)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
 - * 가명정보 처리, 주민등록번호 분실 등 경우를 제외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1년 1월 입법예고안, 개인정보위) 제64조의2
 -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 불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개선되지 않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면 국내 데이터 산업 전반을 크게 위축 시킬 수 있음

■ 개선방안

- 과징금 조항을 기존처럼 ‘관련 매출액’ 3% 이하로 수정
 - 중소기업 매출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매출액 3% 과징금은 국내 데이터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익명처리, 익명정보의 정의 규정 신설
 -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이라고 정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상 익명화*의 정의를 개인 정보보호법과 통일되도록 규정
 - * 익명화 :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
 - 생명윤리법 상 ‘익명화’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처리’와 의미가 상이한 바, 생명윤리법 상 ‘익명화’의 정의를 ‘익명화’ 와 ‘가명화’로 분리하여 각각 정의해야 함

※ 출처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실현을 위한 혁신·벤처 정책제안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근처 대학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세부용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제조회사들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체,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상 제19조제4항제2호의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분류되어,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 (용도) 운수,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 자원순환 관련, 묘지 관련, 장례시설 등의 용도(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2호)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군에서만 가능한 업종(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창업기업의 허가 및 운영 불가한 문제 발생
 - 창업보육센터 내 창업기업은 다양한 시설군에서도 경쟁력 높을 수 있음에도 업종이 사전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불합리함

■ 개선방안

- 현 조항 삭제 또는 근린생활시설군을 포함하도록 넓게 규정
 -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업이 시설군에 대한 규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시설군 분류 관련 규제가 필요한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현재	개선안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③ (생략)「건축법」 제19조제4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 「건축법」 제19조제4항 7호 : 근린생활시설군

7 여성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확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중에 여성기업의 수는 40%를 넘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한 창업기업 중에 여성기업 비중은 10%가 되지 못합니다. '모태펀드 확대를 위한 여성창업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국여성벤처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21년 기준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중 여성기업 비중은 41.4%에 달하지만, 투자유치 창업기업 중 여성기업 비중은 9.5%에 불과함

< 최근 3년간 여성 스타트업 투자유치 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전 체	615	39692.7	816	41186.6	1,272	120286.4
여 성	62	3038.7	51	3313.0	121	9147.0
비 중	10.1	7.7	6.6	8.0	9.5	7.6

* 자료 : 스타트업 투자리포트(스타트업레시피)

- 정부는 여성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여성 스타트업의 투자수요 대비 지원 부족

- 최근 5년간 1,120억원(모태펀드 출자액 600억원) 규모로 펀드 결성

* 여성벤처펀드 결성액(억원) : ('18)100 → ('19)220 → ('20)400 → ('21)200 → ('22)200

(자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시스템)

■ 개선방안

- 여성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여성전용 벤처펀드 확대 조성
 - '모태펀드 확대를 위한 여성창업지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조속한 추진 필요
- 여성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인프라 향상 등 정책적 지원 병행

* 여성중점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현장의 목소리

측광안료를 사용해서 지하철, 지하건물의 석재바닥이나 벽면에 안전지시 등을 표시하는 새로운 기술을 국가R&D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했는데,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려 하니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자연석경계석'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해서 알아봤는데 공장등록도 해야 하고 구축해야하는 직생설비가 **어림잡아도 20억원은 나와서... 사실 저희같이 창업한지 얼마 안 된 기업은 그렇게 자본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저희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없으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사용 자재직접구매품목 대상금액 미만인 공사에만 포함되어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들의 하도를 받아서 시공을 해야합니다.

국가R&D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기술을 인정해준 셈인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 하더라도 국가R&D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 초기 스타트업기업들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체, 경남 창원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중소 제조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품목별 필요한 공장·설비·필수공정·인력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납품이 가능
- 하지만 기술력은 있어도 자본력에 한계가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게 일반 제조기업 수준의 직생기준 충족은 부담으로 작용

< [중기간경쟁제품] 자연석경계석 직접생산 확인기준 >

생산공장	생산설비	필수공정	생산인력
공장등록	절삭기(2대이상) 폭절삭기(2대이상) 길이절삭기	원석절삭→2차절삭	상시근로자 2인 이상 (대표 제외)

- 현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에 한해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협업체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시 제품개발 업체도 직접생산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협업체의 기술공유 요청 등 불합리한 요구조건으로 관련 제도활용에 애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19조

■ 개선방안

- 국가 R&D연구개발 등 기술력을 공인받은 초기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 ① 영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현장의 목소리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받은 기업들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연고자 대상으로는 투자자 수 50인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여기에서도 제외되다 보니 기업들의 부담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정부대책으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제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라도 신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법 상 10억원 이상의 증권을 모집·매출(=공모)하는 경우 발행인은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의무
- 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개별 투자자로 산출, 투자받은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제출 부담
 -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은 코넥스, KOTC 소속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시행령 § 118의17)

(예 시) A투자조합(출자자 20인), B투자조합(출자자 30인), C투자조합(출자자 3인)이 공동으로 “가”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총 투자자가 53인이 되어 “가”기업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업당 투자금액의 증가, 개인의 출자 확대에 따른 조합당 출자자 수 증가 등으로 신고 대상 증가
- 투자자 수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전문가, 연고자)에 투자조합은 불포함
 - 신기술금융회사와 집합투자기구는 ‘전문투자자’의 자격으로, 창투사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 제외에 포함

☞ **전문가:** 전문투자자(신기술금융사 등 40여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연고자:** 주주, 임원 등

■ 개선방안

-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이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이 되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문가 중 전문투자자로 인정
 - 창투자, 신기술사 등 벤처투자회사뿐 아니라, 이들이 운영하는 투자조합도 전문투자자로 인정
 - *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사) 및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 전체
 -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유사한 성격의 조합은 모두 전문투자자로 인정
- 투자조합을 창투사와 같이 전문투자자 외의 전문가로 인정
 -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전문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유사조합들까지 확대
-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이 정부대책으로 발표되었으나, 제도가 개정되지 않고 있음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 '21.8. 관계부처 합동

- 기업이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무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펀드는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로 인정(금융위, '21)
 -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매출)하는 경우
 -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 3항 16호) 등



VIII. 통상·승계

1 제재 국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 시 제재 문구 변경 필요

[금융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당사는 러시아 등 해외로 원자력 기계 부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하면서 해외 수주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저희 제품이 對러시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인 해외영업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제재(Sanction)문구**를 넣은 보증서를 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구를 삽입한 보증서를 러시아 바이어가 수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증서 발행이 중단되어** 계약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국', '특정 기업' 등에 대한 제재(Sanction)문구를 기입하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계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러시아 기업이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당연히 퇴출되기 때문에 제재 문구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행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능하다면, **보증계약시 제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기보다는 국제상업회의소 청구 보증통일규칙** 등에 대한 면책조항인 **ICC URDG 758을 준용**한다 등의 문구로 갈음하여 보증서를 발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자력발전부품 제조업체, 매출액 500억, 종업원 113명, 서울(본사)/전북 군산(공장)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사회 합의 등으로 인한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대한 제재 시, 非제재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등 보증서 발급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이 중단되는 상황이 존재
- 국내 금융기관에서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제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보증서상 제재(Sanction)에 대한 면책조항을 직접 기재하는 경우, 해외바이어는 보증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해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를 수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해외 수주를 하는 중소기업은 애로를 겪고 있음

■ 개선방안

- 국내 금융기관에서 제재 대상국의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선급금 보증 등 발행 필요 시, 면책조항 직접 기재 보다는 ‘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ICC URDG 758) 등을 준용한다’ 정도의 면책 문구를 기재하여 보증단계에서 계약의 중단 등을 방지할 필요 존재

<(기존) 국내 금융기관의 제재 문구에 대한 예시>

(산업은행)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E APPLICABLE ICC RULES OR IN THIS LETTER OF CREDIT, WE DISCLAIM LIABILITY FOR DELAY, NON-RETURN OF DOCUMENTS, NON-PAYMENT, OR OTHER ACTION OR INACTION COMPELLED BY RESTRICTIVE MEASURES, COUNTER-MEASURES OR SANCTIONS LAWS OR REGULATIONS THAT APPLICABLE TO US OR SUBJECT TO A REASONABLE RISK OF SANCTION OR TO OUR CORRESPONDENT BANKS IN THE RELEVANT TRANSACTION.

(서울보증보험) If the Guarantor, having justified reasons including Sanction imposed to the country, Beneficiary or the product, disagrees with the Beneficiary's payment claim under the guarantee, the Guarantor shall submit to the Beneficiary a reasoned refusal, also within five (5) business days. Therefore, the Guarantor will be exempted from obligation under the guarantee.

<(개선방향) 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면책조항 (UGDR 758) 준용>

The guarantee is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758.

현장의 목소리

똑같은 스위스산 정품 시계를 수입해도 제조사의 한국지사 등 대형 수입상은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 병행수입업체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내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나빠지고, 일부 업체는 병행수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1995년 도입된 병행수입제도는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업체의 승인 없이 제3자가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수입시장의 경쟁을 일으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죠. 이게 결국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가격 인하를 위해 가장 필요한 특혜관세 적용이 현재 원산지 검증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시계는 스위스 본사에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공해줘야 스위스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저희 병행수입업체는 실제 스위스산 시계라고 해도 해당 자료를 수취할 수 없는 겁니다.

병행수입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병행수입품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 시계 소매업체, 매출액 400억, 종업원 50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병행수입제도는 독과점적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여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됨
 - 이에 따라, 중소 병행수입업체는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정식업체의 수입 경로와는 다른 별개의 유통경로를 통해 유명 브랜드 시계를 수입하고 있음
- 한편, 저율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원산지가 FTA 체약상대국임을 제조사 협조를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조사는 브랜드 관리 등을 이유로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병행수입업체에는 협조하지 않음
- 결국 중소 수입업체가 정식 수입업체와 같은 제품을 취급하더라도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여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할 수밖에 없어 중소 병행수입업체의 가격 경쟁력 악화

■ 개선방안

- 정식수입업체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병행수입제품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3 야생동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환경부]

현장의 목소리

우리 모피업계에서는 약 400여개 업체가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원자재는 크게 **박피하여 건조된 원자재(HS 4301류)**와 **가공된 원자재(드레스 작업, HS 4302류)**, 그리고 **모피 완제품(HS 4303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환경부에서 밍크를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원자재(HS 4301류) 수입중단 및 수입 신고제를 시행**하였고, 11월에는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한 (HS 4302류), (HS 4303류)까지 수입신고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업계는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여 1) 밍크원자재가 북미 및 북유럽 농장에서 가공되는 과정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점과 2) 박피 후 저온창고에 보관하여 공급하는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피원자재를 통하여 감염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피원자재 (HS 4301류)에 대한 수입 금지는 철회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조건으로 수입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공된 원자재(HS 4302류)와 모피 완제품(HS 4303류)의 경우, **코로나19와 무관한 원자재임에도 여전히 수입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어, 원자재(HS 4301류)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만 관세청에서 통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신고 관련 행정비용과 처리기간(7일) 동안의 창고료 등 부대비용 증가**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을 제한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 6개월 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생모피(HS 4301류) 수입 제한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조건으로 제한적 수입 허용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 그러나 코로나19와 관계없는 가공된 원자재(HS 4302류) 및 모피 완제품(HS 4303류)도 수입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업계 어려움 가중

- 감염병 매개와 무관한 원자재 및 완제품 대상 조건부 수입 허용은 현실과 맞지 않음

■ 개선방안

- 밍크 수입 허가 제한 조치 철폐

■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20. 5. 2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28조(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7. 11. 30., 2020. 11. 27.>

4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1940년부터 유리 등의 가공품을 제조해 왔습니다. 유리 제조에 그치지 않고, 창호 시공 등의 건축공사업도 함께 하게 되었고, 공사매출이 제조매출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보다는 공사의 매출이 훨씬 크고, 유리 제조로만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우리 업종에서는 공사까지 해서 사업을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선정하고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45년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업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업(F)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만 같은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동일 업종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한업종에 해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명문장수기업'에 반하는 일일까요? 80년 넘게 같은 업계에서 기업이 이어가며 만드는 유리를 설치까지 했다고 제한업종이 된다니요.

건설업(F)에 대한 업종제한과 동일업종 유지 요건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리 제조업체, 매출액 200억, 종업원 47명, 충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의 업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됨
 -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활한 기술융합을 위하여 부동산업·임대업 등 업종규제를 삭제(유흥·사행성 업종에 대해 일부 배제)
 - 국내 100년 기업 10개社 중 2개社 금융업 영위
 - * 두산, 동화약품, 신한은행,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 조선호텔, 성장, KR모터스, 경방
 -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가 많음. 유리뿐만 아니라 승강기나 프레임 등의 실내 장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도 동시에 설치 및 공사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건설업(F)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이어야 업력이 인정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국내 100년 기업의 대부분은 업종 및 주요 제품 등의 변경 有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은 제품 다각화, 사업 다각화 통해 경쟁력 확보
- * 지난 정부, 원자력 관련 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국내의 약 2천개 업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산자부에서는 이들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사업을 지원

■ 개선방안

- 업종제한 삭제 (단, 유흥·사행성 업종 배제)
- 동일업종 유지 요건 완화

■ 관련법령

-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F)
2. 부동산업(L68)
3. 금융업(K64)
4. 보험 및 연금업(K65)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5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현장의 목소리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15년째 근무 중입니다. 첫 3, 4개월 차에는 사표를 써야하나 고민도 많이 했죠. 기존에 다녔던 기업에서는 MD, 세일즈 업무를 했는데, 여기서는 도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니 점차 적응하며 어느덧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가 상장하면서 우리사주 배정 물량이 생겼고,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들 잘 되게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추산하는 날짜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단 하루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 3개월 뒤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한편으로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단일화된 기준을 복수의 비교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주가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작기계 제조업체, 매출액 1,126억, 종업원 277명, 대구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조치와 더불어 주요국 성장둔화,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물경기도 둔화 추세
- 기업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창구인 공모주(IPO) 시장에서 최근 코스닥 상장 후 높은 변동성으로 주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음
- 주가변동성이 높은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위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식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IPO 시장의 기준주가 산출시에도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5영업일 전을 평가 기준일로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을 산정한 후 이들을 평가 기준일 최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주가를 활용해 기준가격을 산출함

■ 개선방안

-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IPO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선순환을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보완
 - 가업승계에 따른 주식 장기보유 관점에서 ①기한을 정해 실현손익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설정, 또는 ②주가 기준일을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서 연기 또는 복수의 평가 기준일을 설정해 낮은 주가를 활용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및 3항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IX. 인력

1 주52시간제 유연화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1)

지금 조선업은 극심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만 해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력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업종 특성상 여전히 작업의 80% 이상을 사람 손으로 해야 해서 자동화나 기계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가뜰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란 제한까지 받아 초과근로도 할 수 없다면 **도저히 납기를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용도 시도해봤습니다만, 근로자들 반발이 큼니다. 저희는 도장이 주된 업무인데, **오전에 선박의 녹을 다 벗겨두고, 원청에게 검사를 받고, 다시 오후에 도장 작업을 들어가야 해서 연장근로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오후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라고 했더니, 생활 리듬은 다 망가지는데 연장수당은 못 받아 간다고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든 연장수당만큼 더 벌기 위해 퇴근 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아침이면 피곤한 상태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근로자들 피로도가 높다 보니, **산재 발생 위험이 커질까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발주처는 납기를 준수해달라고 독촉하는데, 일할 인력은 부족하고, 유연근무제나 자동화로 대응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지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보고 범법자 되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 종업원 138명, 거제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금형은 이론과 현장기술이 복합된 현장지향형의 암묵지 기술로 공산품의 80% 이상은 금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금형을 개발할 때는 보통 20일에서 45일 가량 걸리는데, 고객사의 설계 변경이나 금형 수정 등으로 납기가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52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면 계획된 일정보다 1주일 이상 지연되다 보니, 52시간을 초과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금형사출 제조업체,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49명, 경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조선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불규칙한 발주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작업의 80% 이상이 옥외작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작업 지연 수시로 발생
 - 이에 납기 준수를 위해서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나, 국내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신규채용도 어렵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근로일정으로 유연근무제 활용도 사실상 불가능
- 금형업도 특정기간에 발주가 집중될 경우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경우가 많아, 주52시간 제도 준수에 애로 발생
-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특근수당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투잡 생활을 하는 실정
 - *주52시간제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임금 감소 91.8%
(감소량) 월평균 65.8만원 / (대응책) 소득 보전 위해 투잡 생활 40.8%
(자료 :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2021.10월)
 - 투잡을 뛰는 근로자들은 피로가 누적된 채 사업장으로 출근해, 산재 발생 위험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 개선방안

- 노사가 합의하면 주52시간 초과근로 가능토록 제도 유연화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1주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유연화
 - 특별연장근로 인가절차 간소화 및 인가기간 확대
 - 절차 : (현행) 사태 급박 시 사후 인가 가능
(개선) 사후인가에 대해 근로자 동의 시 요건 충족으로 간주
 - 기간 : (현행) 제3호(돌발적 상황), 4호(업무량 급증) 사유의 경우 연 90일
(개선) 연 180일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③ <생략>
-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중대재해가 났을 때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에 3~4척 정도를 동시에 건조하는데 도크(Dock) 중 한군데에서 사고가 나면 도크 전체를 작업 중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관계없는 나머지 배들도 건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협력업체도 힘들어지고 근로자들도 일을 못하니까 소득이 줄게 되어 생계 어려움이 커집니다.

사고가 났으면 해당 구역만 조사하고 앞으로의 대책 세우는 것이 맞는데 작업 중지명령 나올 때는 도크 전체가 대상이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경남 거제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작업중지명령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이나 이와 동일한 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가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전면작업중지’로 규정
- 작업중지로 생산활동이 중단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조선소 등과 같이 사업장 규모가 크고 다수의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업종은 장기간 휴업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악화와 폐업 등 막대한 손해 발생
 - 전면작업중지는 물론이고 부분작업중지 경우에도 일부 작업 중단에 따라 모든 공정이 멈추기도 함
 - 협력업체의 근로자 입장에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만 받거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현장에서는 재발방지 등 필요성은 인정하나 협력업체 경영과 근로자 생계를 감안하여 작업중지명령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청

■ 개선방안

- 기업과 근로자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작업중지명령 범위 최소화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3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실화

[교육부]

현장의 목소리

'18년 이후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고, 숙련공 직원을 붙여서 교육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잘 준수해야겠지만, 기업이 교육기관이 아닌데 학생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말고 교육만 시키라는 것은 특히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고등학생들은 상당수가 생산직인데, 본인 업무도 바쁜 숙련공이 붙어서 어떤 실습을 시켜야 할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학생들 중 상당수가 졸업하고 나면 대학 진학, 군 복무 때문에 떠납니다. 업무를 시키지도 못하고, 3개월 후면 떠날 학생에게 수당도 주고, 직원까지 붙여서 교육만 시키라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일과 학습을 균형 있게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 충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하고, 실습 학생에 대한 모든 업무지시를 금지
 - 반면에 기업은 ①현장실습 수당 지급(최저임금의 40%), ②담당자의 상시적인 동행 및 관찰(1:1 지도 원칙), ③실습시간 최소 30% 이상 입문교육 실시, ④안전 장비 등 제공, ⑤학교의 순회지도, 노무사의 기업코칭, 교육부의 지도·점검, 고용부의 근로감독 등에 협조 등 필요
- 그럼에도 실질적인 안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업무금지 및 각종 지도 점검 등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기업 수가 감소하고, 직업계고 취업난 가중
 -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교육부는 현장실습제도를 학습중심형으로 변경하였으나, 안전은 강화되지 않은 반면 근로자 신분 배제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이 저하”되었다고 지적

< 2017~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수 및 취업률 >

(단위 : 개,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참여기업 수	31,404	19,707	9,527	12,318	11,737	-
취업률	48.5	52.4	44.3	34.3	28.3	29.2

(자료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개선방안

- 안전 확인된 업무에 대한 업무지시 허용
 - 유해위험 업무가 아니고* 학생 전공과 일치하며, 학생·학교 등과 사전협약이 된 업무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교육을 마친 이후 등에는 업무지시 허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안전 컨설팅 및 안전장비 등 비용 지원 확대
 -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우선 지원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참여 시 기업부담 완화(기존 30~50% → 10~30%)

■ 관련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5인 미만 중소기업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소규모 업체가 코로나 19로 더 타격을 받았고 정부지원이 더 절실한데 소규모 기업이라고 청년인력 채용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에 엄청 화가 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은 물론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는 5인 기업에게 한정되고 5인 미만 기업은 벤처 등 일부 업종 기업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일반기업은 기업도 아닌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 자격요건도 허점이 많습니다. 대상 청년 요건을 실직기간 6개월 이상으로 한정하다 보니 3개월 실직한 청년이 일부러 재취업을 하지 않다가, 3개월 이후에 취업하겠다고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국가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형평성, 효율성을 생각해서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산업용품 도매업체, 매출액 9억, 종업원 3명, 인천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적립하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서 미취업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

* (2년형) 청년근로자 납입액 : 300만 원 / 최종 적립액 : 1,200만원

- 다만 해당제도는 5인 이상 기업에 한정되고 5인 미만 기업은 벤처, 지식서비스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하여 실제 청년 고용에 지원이 필요한 영세 기업은 소외되는 문제점 야기
- 청년 요건이 경직되어 다수 청년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 발생
 - 청년 가입요건 중에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에게만 허용되어, 실직 후 빠르게 재취업 취업한 청년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 청년고용 지원 대상 기업을 업종 불문하고 5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 청년층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완화
(현행: 실직기간 6개월 이상 → 실직기간 3개월 이상)

■ 관련법령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 대상 청년 요건 (①~③ 모두 포함)

-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취업 청년(만15세~34세 이하)
- ②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청년
-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대상 업체 요건 (① 또는 ②)

- ① 5인 이상 중소기업
- ② 5인 미만 기업 허용 업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업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

5 동일법인 내 여러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기능요원 배정 실시

[병무청]

현장의 목소리

조명업체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법인에 여러 병역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회사에 여러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1개 공장만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대체복무제도 정원이 줄어들면서 각 업체에 줄 수 있는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는 인력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기능요원 배정이 한정적으로 되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공장의 경우, 동일법인 내에 다른 지역에 소재한 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인원배정을 받지 못해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제품에 대한 인증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생산 공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도 법인에 관계없이 생산 공장별 인원 확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은 동일 법인이면 한 명만 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한국전등기구엘이디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각 공장별로 신청조건을 갖추어 심사를 받아도 인력 배정은 한 해에 법인 내에 한 공장만 신청이 가능함
- 한 법인 내에 공장이 동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공장인데도 인원 배정이 되지 않아 지방에 위치한 공장은 인력 확보가 어려움

■ 개선방안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에 대해서는 동일법인 내 사업장 여러 곳에 대해서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실시

■ 관련법령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8조(기능요원 배정) 제1항 단서

제18조(기능요원 배정) ① 인원배정은 병역지정업체별로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제조·생산직 종업원수, 매출실적 또는 수출실적,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만 배정한다.

현장의 목소리

1998년에 시행된 근로자파견은 제한된 규제 하에서 외환위기 당시 기업 고용유연성 확보와 국민 고용안정에 기여했고 현재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년 간 변함없는 근로자파견 규제로는 한계에 다다른 고용과 경제, 특히 작금의 국내외 경기 하락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에 다른 나라와 같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기간 제한 폐지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근로자파견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법적으로 파견대상업무가 32개로 제한되어 있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해 제 역할(고용유연성·고용안정성)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나라 및 지역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거나 제한을 단계적으로 모두 철폐해, 기업은 고용유연성으로 생산성 강화를, 근로자는 일자리를 통한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 24년 동안 파견대상업무와 파견사용기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시 위태로운 유사파견·불법도급의 줄타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 기업과 근로자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파견 및 도급 사용업체와 공급업체 모두가 법적 규제 속에 잠재적인 위·불법 상황 하에 놓여 있고, 종사 근로자들도 상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기구가 인정한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다른 선진 외국과 같이 합리적 제도 하에 기업 고용유연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사용기간 제한을 전격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 도급 · 근로자파견업체, 매출액 1,050억원, 종업원 5,100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파견은 불법 근로자공급시장의 근절과 종사 근로자 보호, 1997년 외환위기사 방만한 사업경영 체질과 경직된 고용환경 극복을 위해 1998년 시행
 - 그러나 파견대상업무 및 기간 제한은 산업경제 발전 및 고용시장 안정을 저해
-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파견대상업무 및 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과 달리,
 - 우리나라는 32개 대상 업무와 2년 기간 제한을 두어 유사파견·불법도급이 확산

〈 각국의 근로자파견제도 비교 〉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허용 업종 범위	32개 업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 주1)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금지업무 외 전 업종 허용)
금지 업종	건설, 하역, 선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의료, 여객·화물 운전	간호사 등 전문직 제외	노동분쟁 시에 대체파견, 노동부장관령 에 금지된 업무	건설 업무	특별히 규제가 없으나 주마다 다른 규제 적용	항만운송, 거설업무, 의료관계업무, 파견 부적합 업무, 관리건축사
파견 기간	2년	제한 없음	18개월, 단 일정 휴지기간 지난 후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년 (반복연장 가능)

* 주1) 일시적·공석에 의한 대체, 일시적 기업활동의 증가, 본래 일시적 업무, 고용정책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특별한 사유

** 출처 : 근로자견대상업 조정·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2011. 국회입법조사처) / 파견근로 유럽연합지침과 유럽연합
주요회원국의 파견법제 및 그변화 (2011. 노사정위원회) 세계고용연맹

■ 개선방안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사용기간 제한 폐지

■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 6. 18., 2019. 10. 29.>
-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 제6조(파견기간)
-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5. 26.>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근로자파견법 위반 행정처분 완화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다른 사업과 달리 근로자파견은 높은 수준의 행정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저해함은 물론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31일부터 강화된 파견사업자 대상 행정처분 규정은 법규 위반 시 시정지시 등의 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경고 → 영업정지 → 허가취소'에 이르는 강한 행정처분으로 파견사업자의 경우 단 한번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고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안정성까지 상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 정부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보다 관리감독과 단속이 덜한 용역사업자, 도급사업자로 전환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기마다 정부 사업보고 및 관리감독을 받는 합법적 근로자파견 시장이 축소되고 불법도급, 무허가파견의 확산으로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권익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법률 위반으로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수많은 근로자가 길거리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적법 사업자 확산과 불법·무허가 방지, 종사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맞춰 행정조치 시 일정 시정기회를 부여 하는 등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가 필요합니다.

- 도급·근로자파견업체, 매출액 1,050억원, 종업원 5,100명, 서울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파견사업자 대상 행정처분 규정은 시정지시 등의 개선기회 없이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에 이르는 강한 행정처분으로 구성
- 또한 행정처벌이 운영 중인 사업자의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적법 파견사업자 및 근로자파견 시장은 정체·축소되고
 - 감독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무허가 사용 및 사업자는 증가하는 역효과 발생
- 적발되어 처분을 받으면 원청에서 재계약 기피하는 등, 파견 사업주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며,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
- 강한 행정조치는 불법·무허가 고용시장을 성장시켜, 상대적으로 임금과 근로안정성이 높은 파견근로자를 용역·도급 및 불법·무허가 고용시장으로 내몰고 있음

■ 개선방안

① 근로자파견업 허가취소 규정 완화

- 사업주에게는 한 번의 실수로 사업체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부담 유발

〈 근로자파견법 제12조 개정(안)〉

현행	개정
제12조(허가 취소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12조(허가 취소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② 근로자파견업 행정처분 및 파견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사용사업주에게는 시정지시하는 반면, 파견사업주에게는 순차적으로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의 행정처분 병과

〈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

현행				개정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가)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 하게 된 때	허가 취소			(가)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 하게 된 때	허가 취소		
(나)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경고	허가 취소		(나)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경고	영업정지 3개월	허가 취소

- 기타 고용노동 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상)에서는, 법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지시(7일, 14일, 25일 등) 후 사법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
- 아울러, 행정처분이 파견업체의 거래처(사업장)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파견업체가 아닌 개별 거래처(사업장) 기준으로 행정조치 실시

■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 별표

현장의 목소리 (1)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잔업을 통해 확보되던 노동력은 줄어들고, 몇 개월간 구인광고를 올려도 근로자 지원서는 들어오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기존에 있던 생산량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원 확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타 사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 분야로 이직한 근로자가 많이 있어 구멍이 크게 생겼다고 아우성이고, 신문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국인 기피업종인 3D 업종에 보다 많은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한도나 제한 규모를 허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물제품 제조업체, 종업원 18명, 경북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기계부품 제조분야에서는 그래도 저희 기업이 경쟁력도 있는 편인데, 여전히 국내인력 채용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외국인 총 쿼터가 너무 작다 보니 애로가 많습니다.

솔직히 국내인력보다 외국인력한테 급여를 더 줍니다. 월급에 식비에 기숙사 비용에 혹여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까봐 급여는 무조건 높게 보장을 해줍니다.

오죽 내국인 채용이 어려우면 저렇게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 **배정기간에 5명을 신청해도 선정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게 외국인력은 기업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외국인 총 도입 인원도 과감하게 늘리고 기업별 고용인원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 기계부품 제조업체, 매출액 340억, 종업원 140명, 대구 소재

현장의 목소리 (3)

생산직 인력난으로 주문 물량대비 축소 생산이 불가피하고 납기 및 물량 미 준수로 인한 기업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도 **생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213억, 종업원 84명, 경기 소재

현장의 목소리 (4)

당사는 통신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사무직 직원을 포함해 내국인 근로자는 11명, 생산직 외국인근로자는 6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중 80% 이상이 외국인근로자인데, 생산직 채용공고를 낼 때마다 내국인 지원자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별 최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와 1년에 신청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장별로 고용 제한을 두는 취지는 이해하나,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취업하려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옥아매는 규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통신케이블 제조업체, 매출액 222억, 종업원 17명, 충북 소재

현장의 목소리 (5)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연천, 포천, 동두천 등은 내국인 채용이 상당히 어렵고, 생산직에는 내국인이 아예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연간쿼터나 사업장별로 고용한도를 모두 정해 놓으니 필요한 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고, 외국인근로자 요구사항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된 임금인상, 숙식비 제공, 사업장 변경 요구 등 **모든 애로 사항은 연간 입국쿼터 제한과 사업장별 고용한도 제한 등 공급을 규제하는 문제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액체 여과기 제조업체, 매출액 37억, 종업원 14명, 포천 소재

현장의 목소리 (6)

얼마 전에 **철도 차량을 만드는 대기업으로부터 기차 바퀴를 받쳐주는 주물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했습니다.** 철도 관련 핵심소재다 보니 밤을 새워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하던데 중소기업 현장은 일할 사람도 없고, 주52시간제로 인해 철야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세계 위상은 8위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도 일손은 부족합니다. 사업장별로 고용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필요한 만큼 채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해서 산업현장이 제대로 굴러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물업체, 경기 소재

현장의 목소리 (7)

우리 조선업계는 인력난으로 아우성입니다.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일감이 줄어들자 숙련공들이 줄지어 떠났고, **지난 3년 간 코로나로 외국인력 공급까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특근수당이 줄어들자 몇 안 남은 인력들마저 배달 업계 등으로 유출되면서, **인력 공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40%가 넘게 인상되면서, 이것만도 감당하기에도 벅차서, **고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은 거의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고숙련 근로자와 단순 인력 간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도 더 많은 근로자가 다른 업계로 떠나고 있어, 올해 가을부터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최근 수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수주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숙련 근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려 시도하고 있으나, 임금을 더 줄 여력이 없어서 한계가 큼니다.

시급한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쿼터를 폐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사업장별 고용한도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인력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용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상향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 종업원 150명, 거제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
 - 부족인원은 59만 8천명으로 전년동기(38만 1천명) 대비 56.9%(21만 7천명) 증가
 - 적극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6만 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1.3% 증가
 - *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노동부, 2022년
-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외국인력 입국이 중단되어 2019년말(276,755명) 대비 2022년 6월말(225,516명) E-9 외국인근로자 국내 체류인원 51,239명 감소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근무제가 개편(맞교대→3교대) 되는 등 추가 인력 수요는 증가되는 추세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 통계청은 2020년(3,738만명) 대비 2030년(3,381만명) 생산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개선방안

- 외국인력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경기여건에 맞게 도입인원 결정
 -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50% 이상 확대), 현장의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 필요

〈 참고 : 중소기업 규모별 고용한도 〉

내국인 고용규모	고용총한도	신규한도	내국인 고용규모	고용총한도	신규한도
1~5명	5명	3명	51~100명	15명	5명
6~10명	7명		101~150명	20명	
11~30명	10명	4명	151~200명	25명	6명
31~50명	12명		201~300명	30명	

(50인 미만 중소기업, 뿌리기업, 지방소재기업, 인력부족업종 등에는 20% 한도 상향)

■ 관련법령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4. 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1)

9년 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컨테이너를 제공했는데, 집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사업장을 옮기면서 **건물을 지어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 3명 모두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어 **숙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신청하는데, 제공 중인 시설의 용도가 기숙사로 되어있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 쉽게 되지는 않으니, 4월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포기하고 설계사무소를 통해 용도 변경을 의뢰 해봤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방을 나누는 칸막이 벽체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방을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등등 구조상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건물의 용도는 숙소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을 새로 짓자니 최소 6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방을 구해서 월세로 제공을 해주자니 인근지역에 숙소가 없어서 멀리 나가야 하는데, 숙소가 멀리 있으면 출퇴근을 못하고,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7월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했는데, 이 근로자가 입국할 때가 걱정입니다. **바뀐 규정에 맞춰 숙소를 제공하려면 다시 컨테이너를 제작 해서 숙소로 제공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 섬유제품 제조업체, 종업원 11명, 충남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일손을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를 열심히 올려도 연락오는 곳이 손에 꼽을뿐더러 전화만 오고 정작 사무실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나마 외국인근로자라도 채용할 수 있으니 다행인데 이게 참 골치덩어리입니다.

1~2년 전만해도 숙소를 제공하면 제공한다고 표시만 하면 됐지, **이제는 주거시설표 제출해라, 증빙자료 제출해라, 사진도 12가지나 내라고 하더군요.** 현장에 사람도 없는데 외국인근로자 신청하려면 숙소에 가서 사진 찍고 하려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에 번듯한 숙소를 만들어 봤는데도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고 다른 주택을 임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주거시설보다도 좋게 만들어 봤는데도 건축물대장상에 1,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공장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용도변경이 말이 쉽죠? **신청하려면 건축사무실에 설계 맡겨야 되고 또 현장조사도 해야되고** 시간, 돈,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 기계설비 및 덕트 제조업체, 종업원 6명, 제주 소재

현장의 목소리 (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구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기숙사로 공장의 3층을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고, 2020년에는 지자체의 기숙사 시설개선사업에 신청하여 자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도 마무리 했습니다. (지원금 4천만원, 자체자금 5백만원)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여야만하는 조치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2022년 4월에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기숙사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숙사 미제공 조건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 받았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되면 기존 기숙사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개별로 숙소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을 위해 구청 및 건축사 사무소등과 협의 중이나 **건물이 국가소유라서 법령상 갖춰야 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건축물대장 용도 제한은 열악한 시설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처럼 시설개선은 제대로 되어있으나 국유시설물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사유로 활용할 수 없게 된 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금속 가구 제조업체, 매출액 21억, 종업원 22명,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대다수의 중소 제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제공되는 숙소의 74.4%는 사업장 건물, 3.5%는 임시주거시설(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 * 2021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2021.1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사업장 건물이나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용도: 기숙사)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을 제출하도록 규정
- 업계는 벽의 두께, 용적률 등의 이유로 제공 중인 사업장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불가능하여 애로 및 불만 증가
 - 숙소 미제공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거부(혹은 입국 후 숙소 요구) 우려, △미제공으로 신청 후 숙소를 제공할 경우 사업장 변경 요건으로 간주돼 외국인근로자 이직 우려

■ 개선방안

- 사업장이 숙소를 사업장 건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제공할 시, 숙소 내·외부 사진 증빙으로만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제공 요건 완화
 -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거주기능을 제공할 시 기숙사로 인정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재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해 매달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납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제도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도 이중 지급이 걱정되어 퇴직연금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서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퇴직금 산정할 때 누적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과 상계해서 차액만큼만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 해놨어요. 그런데 법률에는 출국만기보험 가입이 퇴직금 설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있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금도 지급되고, 퇴직연금도 지급되니 이중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퇴직연금이 자리 잡힌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높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임금이 최대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은 퇴직연금을 적용하는데 외국인은 퇴직연금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차별 분위기를 조장하게 만드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골판지 제조업체, 종업원 20명, 경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 월 통상임금의 8.3%를 보험료로 납입하며,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산출 시 누적된 출국만기보험금과 상계하여 차액만 지급
- 그러나 출국만기보험금 가입은 퇴직연금 설정을 인정해주지 않아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퇴직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불합리 초래
- 또한,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금으로 적용할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가 설정되나, 퇴직연금으로 적용할 경우 매년마다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가 설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적용 시 기업의 경영부담 가중

■ 개선방안

- 외국인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시 출국만기보험 가입 의무 면제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4항

제21조(출국만기보험·신탁)

-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저렴한 임금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이야기는 옛 말입니다. 지금은 내국인 근로자가 열악하다, 힘들다 이야기하면서 일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3D 업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랐고, 외국인근로자는 먼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숙소와 식사도 지원해주시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은 이미 한국인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만큼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어 시험을 합격해야 한국에 올 수 있다지만, 사실상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서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니 작업지시도 순조롭지 않고, 생산성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몸값이 금값이 됐어요.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인상분만 올릴 수 없겠냐고 물으면 설득이 됐는데, 지금은 임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겠다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태업을 합니다. 이 때문에 납품에도 문제가 생겨서 고객사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급격히 커진 상황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베어링 제조업체, 종업원 29명, 경기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현행 수습기간(3개월) 중 내국인 대비 생산성은 77.3% 수준, 1년의 업무적응기간이 경과 후 내국인 대비 90% 수준
- 더욱이 외국인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도 안되어 절반 가까운 42.3%가 이직하여* 사업장 변경 시 생산성 저하, 업무교육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낮은 생산성 대비 고임금 지급의 악순환 발생
 -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2020년
-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및 감액률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

■ 개선방안

-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 최저임금 구분적용(1년 70%, 2년 80%, 3년 100%)
-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감액률 확대(현행 3개월, 10% → 1년, 20%)

■ 관련법령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수습기간 연장 및 감액률 확대 시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제5조(최저임금액)

-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2 외국인력 특정활동(E-7) 비자 임금요건 현실화 및 대상 확대

[법무부]

현장의 목소리

우리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주가 들어와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숙련공들이 대거 이탈해, 숙련 외국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E-7 제도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E-7 제도가 바뀌면서 원래는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면 됐던 외국인 용접공에 대해서도 GNI의 80% 이상인 연 3,2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야 해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사실 외국인력을 쓰는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자칫 국내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역차별로 인한 반발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업과 관련된 E-7 비자 대상직종은 용접공 등 4개뿐인데,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발판 작업을 하는 비계공은 국내 인력이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력 활용이 더욱 절실하므로 꼭 허용직종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 종업원 80명, 거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법무부에서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개편하면서, 용접공에 대한 임금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었음
 - 기존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됐으나, 이제는 전년도 GNI의 80% 이상(연 3,219만원) 지급이 강제, 국내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까지 우려되는 상황
- 또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이 허용되는 조선업 관련 직종도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플랜트공학기술자 4개 직종으로 제한되어 확대될 필요가 큼
 - 특히 건조 작업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비계공은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직종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특정활동(E-7) 비자 대상 직종에 포함되어야 함

■ 개선방안

-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대상직종 임금요건 현실화
 - (현행)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21년 연 3,219만원) 지급 의무화
(개선)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21년 연 3,219만원) 지급 권고해, 사업장 사정에 따라 급여수준 정하도록 허용
-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대상직종 확대
 - (현행)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플랜트공학기술자 → (개선) 비계공 등 추가

■ 관련법령

- 특정활동(E-7) 비자 관련 법무부 내부 지침

13 외국인근로자 최초 입국 후 1년간 사용자 귀책 아닌 사업장변경 신청 금지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1)

외국인들은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서 일부러 사고를 치면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사용자 쪽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오려는 내국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많이 의존하는데요, 수개월 기다려 데려 왔는데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말이 막힙니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적어도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물론이고 기숙사도 준비하여 3년간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곳에 와서 처음 1년간은 사업장 변경을 아예 금지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은 일하고 다른 회사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대체할 사람을 새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직을 하면 인력 공백이 생겨서,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지원을 신청하고 기다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선택권을 많이 줘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매출액 391억, 종업원 18명, 전남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준비, 기숙사 제공, 입국 후의 2박3일 교육 수수료와 해당기간 급여 지급 등 많은 준비와 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입사 후 한 달도 안 돼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회사를 가겠다고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인력 신청시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3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통상 신청 준비부터 약 6개월 동안을 노력했고, 신규 인력도 최소 3~4개월은 기다렸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채용하기 위해 준비한 업체의 노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회사의 급여, 기숙사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 최초계약기간에 대한 의무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성접착제 제조업체, 매출액 68억, 종업원 14명, 경기 소재

현장의 목소리 (3)

외국인력이 사업장을 수시로 옮겨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임금을 주는 곳이 있으면 바로 옮겨 갑니다. 또, 코로나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면서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겨우 가르쳐서 **이제 일 좀 제대로 하겠다 싶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한 1년은 처음 근무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재입국 특례 사업장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인력 관리상 애로를 최소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 종업원 150명, 거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3년간은 3회까지, 재고용시는 10년간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됨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
 - 이에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후 1개월 내에 수도권이나, 이미 입국한 친척 및 지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사업장 또는 급여가 좋은 사업장 등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함
 - 당사자간 자율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태업·무단결근·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도 사업장변경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 (외국인고용법 제25조)
- 불성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으로 이익을 얻는 반면,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
 -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여 사업장 변경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입국진행 비용 (38만원)과 기숙사 마련 등 각종 부대비용의 손실을 보게 됨
 - 또한 대체 고용을 위해 추가로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부터 입국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등의 반복으로 인력난이 장기화됨
- 게다가 최근 코로나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면서 장기간 근로를 해 숙련도 높은 외국인력들이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을 요구해 생산 차질이 발생함

* 같은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하면 출국 후 최소 1개월 만에 재입국 할 수 있는 제도

-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업무기간이 최소 1년은 경과해야 내국인근로자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나, 22.5%는 6개월 만에 이직, 42.3%는 1년도 안 돼 이직해 중소기업은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
 - 지방 중소기업은 내국인력 고용이 갈수록 어려워져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는데, 사업장변경 등 수도권 이전으로 사업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 법무부 자료(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5월호)에 따르면, 등록외국인(110만명)의 59.7%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광주전남은 4.8%에 불과함
- 외국인근로자의 불성실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을 감안하여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상향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과하게 부여되어 있어, 미스매칭이 발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최초 입국 후 1년간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 없는 사업장 변경의 신청을 금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차단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항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① 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삭제
- ③ (생략)

○ 사업장 변경 법률 관련 세부내용

구분	사유	세분류
제25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 해지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간 자율합의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의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기타 근로자 요구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제25조 제1항 제2호	가. 휴업, 폐업 등	○장기간 휴업, 휴직, 폐업, 도산의 확정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나.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다.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입국 후 사업장배치 전 사업주 귀책 미인도
제25조 제1항 제3호	상해 등	○상해 등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등

*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사업장변경 횟수에 미산입

현장의 목소리

중소 식품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업무 강도가 높고 급여가 높지 않아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천에서 떡류, 면류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대~40대의 남자 직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2020년 법인 두 개를 통합해서 30명의 인원을 추가 채용했더니, 이제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재입국 특례 취업대상기업에서 제외돼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 사업장으로 이탈하고 있어 생산라인과 매출을 축소하고 직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추가 인원을 채용하고 싶으나 채용절차도 까다로워, 현재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인원 28명 중, 18명만이 근무 중입니다. 식품 제조업 특성 때문에 허용인원이 20%가량 올라갔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의정부고용센터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규정에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에게도 건의했으나 업종간의 형평을 살펴봐야 되고, 검토할 사항도 많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 회사는 100인 미만으로 다시금 회사를 분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222억, 종업원 165명, 포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재입국 특례취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100인 이상 제조업 업체에서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충족하고자 타 사업체로 지속 이탈
-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문화, 기술 습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년을 근무해야 생산성 유지가 가능한데, 조기 이탈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재입국 특례취업 기업 요건 중, 100인 이상 사업장 요건에 대한 예외 인정
 - 업종별 특성 및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된 사유(법인 통합) 등 반영하여 탄력적인 운영 필요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 등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제도

□ 사업목적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사업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횡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주요혜택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 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3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1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범위도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소형지게차(3톤 미만) 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 조종면허 취득 시 요건(국내1종 보통면허 필요)과 교육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 광주전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소형지게차(3톤 미만) 운전수요가 많으나, 여건상 외국인의 지게차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움

소형지게차(3톤미만) 조종면허 요건

- 1종 보통 혹은 대형면허소지 + 필수교육이수
-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약30시간, 무료) /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 : 약12시간, 30만원

- 자국면허증 소지 시 국내 2종 보통면허로 갱신해주나, 소형지게차 면허는 비해당
- 또한, 집합 및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진 필수교육과정이 연초에 수강신청이 마감됨

■ 개선방안

- 필수교육과정의 공급 확대 등 많은 인력 교육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확대 필요
 - 각 산단, 업종별 조합 등 수요 많은 현장에 직접 현장교육형태로 확대 시행
 - 국내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도 적극 참여토록 배려 필요
- 국내 1종보통에 준하는 해외면허증의 소지 시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16 외국인근로자 취업기한 연장

[법무부,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3D 업종에 속하는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근무해야하지만, 현재 기본 체류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 10개월간 근로기간 연장, 재입국 1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숙련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3년으로 되어있는 체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체류기간 연장 기간을 추가 1년 10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도금업체, 매출액 98억, 종업원 23명, 경주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300인 미만 제조업 등의 (비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고용기회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도입
- 도입 당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연장이 가능하여, 현재는 1년 10개월까지 고용 연장 가능
 - 또한, 비전문취업(E-9)비자는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재입국근로자제도 및 특별한국어시험근로자 제도를 통해 1회 연장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근속 가능
- 지방의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동일 사업장에 오래 근무한 숙련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외 모두 신규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움
-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게,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체류기간 연장 검토

개선방안

-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기간(3년) 연장 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2회)을 해소하여 근속 연수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18조의2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 략)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년) 이상인 경우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나.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17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등의 사유 발생시 고용인원한도 완화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외국인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내년 1월에 만료되어서 연장신청이 필요하고, 다른 한명은 지난 2월 29일에 신규 고용했는데, 한 달반 근무하고 산재로 다치는 바람에 5월부터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대체할 근로자를 찾지 못해 너무 어렵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한도가 2명으로 추가로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년 연장할 때 되면 근로자가 사업장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임금인상등의 조건도 맞춰 줘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심정은 돈을 더 주고라도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싶습니다.

- 철강선 제조업체, 매출액 63억, 종업원 7명, 김포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고용한도 산정시 실제 업무 투입여부가 아닌 고용계약여부를 기준으로 산정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재·휴직 등으로 실제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허용인원 한도 내에 포함되어 추가 고용이 불가
- 영세뿌리업종은 대표적인 기피업종으로 단기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휴직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활동 지속이 매우 어려움

■ 개선방안

- 산재 등 사유발생시 외국인 추가고용이 가능하도록 예비한도 부여 또는 한도 일시 확대제도 마련(고용허용인원 산정 제외)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8 수산물유통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업종 포함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

인구감소 및 고학력 등으로 인해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수산물유통업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수산물유통업은 3D업종의 제조업체처럼 내국인들이 취업을 엄청 꺼리는 업종입니다. **말만 유통업이지 실상 제조업체처럼 일이 힘들고 급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도는 인력부족 및 내국인일자리 잠식의 우려가 없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유통업은 내국인이 쉽게 취업하는 유통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산물유통업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이라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수산물유통업체, 매출액 21억, 종업원 5명, 인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유통업은 제조업 등과 비교시 급여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크며, 청년층의 고학력화 및 수산물유통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은 낮음
-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3D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및 어업 일부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어업분야는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산물유통업은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없음에도 유통업이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배제

■ 개선방안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가능 업종에 수산물유통업을 포함

* 일손이 부족한 24시간 운영 사업장만이라도 선별적 허용 요청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4. 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이하 생략

19 외국인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 규제 완화

[법무부]

현장의 목소리

외국인 계절근로 종료 후 예외 없이, 입국한 외국인을 전부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성실히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입국 기회를 보장받은 근로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재입국추천 방법보다 근무기간을 연장해 주면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시 필요한 항공료, 격리시설비 등 절감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체, 매출액 105억, 종업원 22명, 군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계절근로 종료 후 지체 없이 출국, 성실근로자는 재입국추천

< 법무부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계절근로(C-4, E-8) 자격으로 입국 후 성실근로 하여, 고용주가 재입국을 추천할 경우, 지자체는 다시 계절근로(C-4, E-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입국 유예기간, 연간 발급 횟수 제한 없음

- 성실히 근로한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국하도록 하는 규제로 인한 민원 발생, 결혼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출국하도록 규정

-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계속 고용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농가의 요구
- 재입국 기회를 보장받은 근로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출국해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항공비 등의 비용 지출 발생

■ 개선방안

-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재입국추천 방법보다 근무기간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고용주와 근로자가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필요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별표1 -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계절근로(E-8)는 제외]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별표1 -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u>삭제</u>)

현장의 목소리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장 변경 사실이 있어도 동일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마지막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본국으로 출국 후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휴·폐업 등)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아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특례자의 자격이 안 되어 본국으로 출국하게 되거나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기간 1년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해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 골판지 제조업체, 매출액 36억, 종업원 13명, 충북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재입국 특례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함

* 세부요건 : ①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②사업장의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제25조 제1항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하여 4년 10개월간 근무

- 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을 시 특례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주와 취업 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 1년 미만인 자는 개별 사례별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고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됨

* 권익보호협의회 :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 참여(외고법 제24조의2)

- 그러나 사업장의 휴·폐업, 경영상 이유 등 사용자로부터 권고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성희롱·폭행 등 부당한 처우 등과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된 경우,
 - 단순히 취업 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
 - 중소기업계 숙련 인력의 계속 고용을 통한 인력난 해소 위해 동 제도의 개선이 시급

■ 개선방안

- 취업 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자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의 목소리

근무환경이 열악한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내국인은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는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현실적으로 채용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풀이 한정적이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은 동포만 고용이 가능한 '특례고용허가제'가 적용되어 현장에는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 중에서도 건설폐기물처리업체만은 일반고용허가제가 적용되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뿐만 아니라 전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도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폐기물 관련 협동조합, 대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은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임에도 일반고용허가제를 적용받지 않고 특례고용허가제만 적용, 고질적인 인력난
 - 일반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은 일반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반면, 특례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방문취업동포(H-2)만 고용 가능
 - 국내에 체류 중인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225,516명(2022년 6월)이고, 방문취업동포(H-2)는 154,537명(2020년)
- 반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중분류, 38)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세분류, 3823)은 일반고용허가제가 적용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용이함

■ 개선방안

- 일반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을 기존 건설폐기물처리업(표준산업분류 3823)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으로 확대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22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고용노동부, 법무부]

현장의 목소리

저희 사업장은 국내인력이 기피하는 금속제련 관련 업종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입국까지 많은 절차와 비용이 소요되지만 국내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감내하고 외국인 근로자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신청을 하러갔는데 고용 허가서를 분실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접수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고용부에 허가서 재발급신청을 하고 다시 발급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때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는지 아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출력이 가능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알루미늄 제련 합금 제조업체, 종업원 3명, 경북 영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등 여러 기관에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처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개선방안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사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고용허가서) 등에 대해서, 관련정부 부처 간 자료 공유로 중복 서류제출 최소화

현장의 목소리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장 주소, 상호 등 정보 변경 신고시 사업장등록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외국인근로자 대행기관과는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대행기관이 법무부에 사증발급신청을 할 때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제출받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연락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는 기간만큼 외국인력 도입은 늦어지는 거죠.

코로나로 가뜰이나 외국인력 입국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외국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력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목재가구 제조업, 매출액 5.5억, 종업원 5명, 경기도 포천 업체

■ 현황 및 문제점

- E-9 근로자 체류인원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약 6만명이 감소하여 현장의 인력난 지속
 - 또한, 코로나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 소요(외국인력 신청 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
- 사업장이 외국인력 고용신청 대행시 대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내국인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수령 등 대행
- 그러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고용센터’)에 사업장의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 등 정보 변경 신고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대행기관과 공유되지 않아,
 - 대행기관은 사업장에 별도로 연락해서 고용센터에 既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아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시 첨부 중
 - 아울러 대행기관이 사업장 정보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후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하면 정보 불일치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반려

- 사업장에서는 동일한 서류를 고용센터와 대행기관에 중복 제출해야 하고,
 - 대행기관에서 사업장 정보 변경에 대한 인지가 뒤늦게 이루어지면, 동일한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기간만큼 업무가 지연되어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체 발생

■ 개선방안

-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정보 변경시 EPS(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필요
 - 고용센터-대행기관-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간 자료 공유 통해 ▲사업장 행정절차 간소화, ▲막힘없는 행정절차 진행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시기를 단축시켜 외국인근로자 입국기간 단축 도모

■ 관련법령

- 적극 행정 추진(규제행태 측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

현장의 목소리

현재 광산에는 안전계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계원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 있으나, 통상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광산업 실무경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산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은퇴인력 증가로 인해 새로운 안전계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안전계원을 구하지 못해, 자격증을 가진 고령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등 기업운영에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광산업의 청년층 유입부족 등 인력구조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연 1회만 시행하는 광산보안기능사 시험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보다 적게 배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 봅니다. 이에, 자격증 시험을 연 3회 정도로 확대함으로써 자격증 시도 및 취득에 대한 기회 자체를 늘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실을 알려드리면, 1996년 「광산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안전계원 수요가 줄었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10인 미만의 광산이라도 대형 장비를 사용하고, 연간 생산량이 30만톤 등 많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안전계원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 광산업체, 매출액 770억원('21), 종업원 133명('21), 제천·삼척 등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광산에서는 안전계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광산안전보안기능사 자격증 소지 및 실무경험자로 고용 중
- 현재 광산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은퇴인력 증가로 인해 새로운 안전계원 확보 어려움
 - 안전계원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자격증 소지한 고령자와 함께 안전담당 별도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등 비용부담 확대

■ 개선방안

- 광산보안기능사 시험을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안전계원 인력 확보 지원

■ 관련법령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3(안전계원 자격요건에 대한 정의)

현장의 목소리

목질바닥재, 즉 나무 마루판 생산은 다른 기업에서 합판을 구매해, 절단·가공하는 단순한 공정입니다. 시설투자비도 크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가공업에도 산림청은 큰 장치산업인 합판 제조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임산가공기능사 1명을 채용하라고 합니다. 이는 비용도 문제거니와, 단순가공만을 하는 목질바닥재 제조 중소기업의 현실의 모르는 행정입니다.

합판제조와 마루 바닥재를 일괄 생산하는 대기업들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목재의 특성을 잘 아는 기능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합판을 자르고, 흠을 파는 가공 위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과 목재특성 파악이 필요한 합판 제조업과 같은 규제를 하는거는 불합리합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의 낮은 마진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에서 기능사를 채용하라는 건 채용가능여부를 떠나, 비용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질바닥재 제조 전문 중소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규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마루바닥재 제조업체, 매출액 53억, 종업원 5명, 인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마루바닥재를 전문으로 생산(목질바닥재 생산업)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합판을 구매, 절단, 테두리가공 등 단순가공을 통해 목질바닥재를 생산
 - 공장면적도 합판 제조업(수만 평) 대비 매우 적은 편(300평 가량)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제재업을 1~4종으로 구분하며, 산림청에서는 목질바닥재 생산업을 2종으로 구분
 - 2종은 관련법에 의거 임산가공기능사 1명을 보유해야 함
- 합판 생산은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재의 특성 및 생산을 위해 임산가공기능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 그러나 목질바닥재 생산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합판 등을 구매하여, 이를 절단, 테두리 가공하는 등 단순 가공에 한정됨
 - 따라서, 합판 제조시설(대규모 시설 및 제재목의 특성 파악이 필수)과 동일하게 인력 관련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개선방안

- 목질바닥재 영위 중소기업을 1종 목재생산업으로 분류
 - 합판제조, 바닥재생산을 일괄로 하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하여, 교육 및 임산 가공기능사를 보유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
 - 합판을 구매하여, 단순가공만 하는 목질바닥재 전문 중소기업은 1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현장의 목소리

저희 기업은 소스 제조업을 하면서 더 좋은 품질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와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전담요원을 등록해야하는데 법에는 자연계나 공학계열 학위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인력 활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근무환경이 좋지 못한 곳이 다수이다 보니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사실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R&D 쪽으로 업무를 하신 전무님이 계신데 연구전담요원 등록을 하려다보니 학위가 충족되지 않아서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학벌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벌보다 정말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정작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은 학위가 규정되어 있으니, 이게 진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위에 치우진 낡은 규제는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100억, 종업원 30명, 경북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연구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중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해선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충족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 시행규칙의 자격요건은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문계열 인력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적용받기 어려움
 - 기업에서 오랜기간 연구개발 직무를 수행한 경우 외부인력보다 기업의 현실을 잘 알고 업무활용도가 높으나 학위 제한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등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문·사회계열 학위 인력(기술개발 직무수행 경험자)으로 확대

■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 ③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현장의 목소리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을 제외한 38개 곳이 추가 확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검사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높아 중소 정비사업자들은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업기사만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데 **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라면 충분히 종합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자격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는 정기검사 업무수행 가능(자동차관리법 제45조)
 - 정기검사 지정업체 검사원은 ‘기능사 + 3년의 경력’을 갖추면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과 동등한 정비책임자 직무 가능
- 반면, 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검사원으로 인정함(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별표2])
 - 최근 환경규제 강화로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이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확대
 - 지정사업자는 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검사원 고용에 어려움 발생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요구는 중소정비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준
 - 산업기사 자격 취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사 취득 이후에는 중소 정비사업장 취업을 꺼리는 경우 다수
 - 반면, 기능사 취득자가 검사원 취업을 원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 중인 종합검사 지정사업장에서는 고용할 수가 없음

■ 개선방안

- ‘기능사 +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검사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현장경험이 전문한 산업기사 소지자보다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기능사 소지자의 정비·검사 능력이 우수

■ 관련법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기술인력 기준

3. 기술인력		
가. 구분 및 자격·직무		
구분	자격	직무
종합검사 책임자	종합검사원 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검사의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종합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부터 3)까지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종합검사 업무의 총괄
종합검사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1) 정밀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2) 검사 시설 및 장비 관리

현장의 목소리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2017년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살아서 그걸 고스란히 다 지탱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대표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원들하고 어떻게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라는 거는 전무하고 오히려 페널티만 더 받고 있습니다.

뭐가 페널티냐 그러면, **고용유지를 하고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시켜놨는데, 끝나고 나니까 연체금이 더 붙습니다.** 최소한 연체금이라도 안 붙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끔 해줘야합니다.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유예를 시켜가지고 못 냈어요. 그러면 1년, 2년 동안 가산금이 매달 계속 붙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으면, 기존에 그걸 다 끌고 왔던 대표들한테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금만 더 참고 정책적으로 밀어줄 테니 같이 가자 그래야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 조선업체, 종업원 230명, 거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수주 등으로 중소조선업체들의 적자 경영이 계속되고 있음
- 조선업 사내협력사들은 적자 경영에도 고용유지를 위해 급여를 우선 지급함에 따라 4대 보험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음

* A중공업 사내협력사 체납액 160~170억원 추정

- 특히 거제 지역과 조선업은 고용위기지역이자 특별고용지원업종임에도 4대 보험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 최대 5% 연체금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도 제한되어 자금난을 타개하는 것이 힘든 실정임

- 올해 말로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 체납액을 일시납부* 해야 하고, 압류 처분까지 시행되어 경영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요건 없이 분할 납부 가능하나,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 보유소득(연 1.92억원) 및 재산 과표(5억원)가 모두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승인

■ 개선방안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연체금 징수 면제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3조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법 제5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료 시 고용·산재보험 분할납부 허용 :
(기존) 사업주 보유소득 및 재산 과표 기준액 이한 경우에만 분할 납부 허용
(개선) 요건 없이 장기 분할 납부 허용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
(기존) '22.12.31.까지 → (개선) '23.12.31.까지(1년)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행 유지 및 압류 처분 시행 보류

■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 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 업종은 고객사인 선주나 해운사의 운항 일정에 따라 해외 항구로 가서 선박을 수리해야 해 집중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선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수리가 늦어지면 손해가 시작되는데, 주52시간을 맞추려고 선주에게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순간 일감이 끊깁니다.

그렇다고 선박수리 경험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투입할 수도 없어 새로운 숙련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선주가 요구한 기간 내에 수리를 못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선박 수리 시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선박 수리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체, 매출액 200억, 종업원 45명, 부산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주52시간제가 '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구인난, 유연근무제 활용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특히 선박수리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로 대응하고 싶어도 국내 노동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들의 주문에 따라 대응하며,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 특성상 근무일정 변경이 잦은 이유로 사전근로계획 수립 등의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도 어려운 실정
 - 선박은 국제항만 사이를 이동하는 창고 및 대형공장 같은 역할을 하므로 고장이 나거나 정기 수리를 해야 할 때는 긴급히 수리를 하여 출항을 시켜야 하므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움
 - 선박수리업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과 삶의 개선보다는 경제적인 영향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희망하고 있음

- 그간 국내 선박수리업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외화수익 증대와 고용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 선박·선주들이 찾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업종으로 지정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선박수리업이 별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표상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특례준치 업종지정 요청도 어려운 상황임

■ 개선방안

- 선박수리업을 주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지정
 - 선박수리업을 대분류 코드에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으로 지정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

-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현장의 목소리 (1)

식품위생 교육은 매년 1회 각 사업장별 신규교육과 위생 보수교육으로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날마다 생존과 싸우고 있는 저희 같은 소기업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을 무조건 돈을 내고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사업장내에 위생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며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고, 40~60대 여성인력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을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진주 소재

현장의 목소리 (2)

식품위생교육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날마다 생존과 싸우고 있는 저희 같은 소기업은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교육을 무조건 돈을 내고 받아야 합니다. 1인당 온라인 교육비가 1만8천원, 오프라인 교육 2만원으로 여러 점포를 운영할 경우 교육비도 큰 부담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사업장내에 위생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며, 인터넷과 친숙하지 않은 인력이 대다수라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는 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대체 인력을 찾기는 힘들어 결국 온라인 교육으로 대표가 반복해서 듣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별 기업들도 식품 위생 안전의 중요성 및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위생과 안전은 기업 윤리와 관련된 사항이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실제 누가 받는지도, 제대로 교육받는지도 모르는 온라인 교육처럼 강제하기보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식품접객업체, 대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해당 근무자를 대체할 인력 확보가 어려움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종사자 연령대가 고령으로 수강의 현실적 어려움 상존
- 교육내용 또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낮음
- 더불어 별도의 교육비 지원이 없어 개별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개선방안

- 현재 강제 사항인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 부여
 -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별 기업들도 식품 위생·안전 및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규제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증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인해 기업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장애인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간기업도 몇 명 이상이니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규제**입니다.

저희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좋은데 근무여건을 보세요. 복잡한 기계를 만들고 제조현장을 관리하는 직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오히려 산재 등 위험한 환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무직은 이미 인력이 풍부한 상황이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와중에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수천만 원의 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는데 기업의 사정도 모르고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생각을 해야지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한테 패널티만 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꼭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기계부품 제조업체, 매출액 340억, 종업원 140명, 대구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취약한 고용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고 국민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민간기업은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함
- 의무고용비율이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적용, 채용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음
 - 의무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미달 근로자수 × 부담기초액) 역시 기업애로로 작용 중임
 - 2022년 의무고용비율은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로 미달 시 부담 기초액은 1인 기준 연 1400만원에 달해 사회적으로 비용 낭비

■ 개선방안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민간기업에 한해 현재 3.1% → 2% 이하로 하향 조정
- 장애인 고용미달과 관련한 과도한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개선
 - (현재)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 → (개선) 최저임금액의 50%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X. 금융 · 세계

현장의 목소리

1,000M 육상선수의 성적을 100M 기록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재무제표를 평가하는데 영리단체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해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양극화 해소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역할을 인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개별 중소기업의 자격을 부여(2021. 4~),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재무제표를 평가하는데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회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콘크리트 제조업체, 매출액 85억, 종업원 23명, 인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성립된 플랫폼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2021년 4월부터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시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영리기업과 동일한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조달청 MAS 2단계 경쟁 시 낙찰 가능성이 크게 저하되는 실정

■ 개선방안

- 신용평가기준을 기업회계 평가기준과 협동조합(비영리법인) 예산회계 기준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선 요청

■ 관련법령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표 1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등			-0.5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2 법인 대표자의 전자적 보증 허용

[법무부]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05년부터 이용하며, 해마다 한두 번씩 여의도 대출창구를 방문하는데 반나절이 넘게 걸렸습니다.

개인기업은 비대면으로 서류도 없이 대출 처리가 되는데 비해, 같이 부금을 납부 중인 법인기업에 대해서 대면대출만 운영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중앙회 측에서는 대출에 대한 법인대표이사의 당연보증 처리를 전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법률규정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대면대출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핀테크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면서 법인 대표자의 전자적 보증 문제 때문에 비대면화를 운영 못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하며, 향후 다양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골재채취업체, 매출액 41억, 종업원 8명, 경기도 양평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는 보증효력을 불인정[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15.2.3 신설]
 - 과거 보증계약 확립을 위해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과점주주 등 기업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보호해야 하는 보증인으로 보지 않아 전자적 형태의 보증효력이 인정되었음
- 이에 각 금융기관의 대출운영시 개인, 개인기업은 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대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전자서명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비대면대출 운영이 불가능
 - 이는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인 비대면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민법 제428조의2 개정을 통해 법인 대표이사의 전자적 보증 허용

■ 관련법령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891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마. 나로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개정민법상 전자보증 불허의 문제점 (출처 : 윤진수 서울대학교수, '15.3.23, 법률신문)

- 보증인이 보증인의 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대해 충분히 따져보았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공인전자서명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보증을 하게 되면 종이문서에 의한 보증보다 경솔하다고 할 수 없음 ⇒ “보증인의 영업이나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로 제1항 단서를 개정 필요
-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경우 보증을 하는 자의 영업, 사업 또는 직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자적 보증을 허용중
 - 민법개정('15.2.3)시 독일 민법 제766조를 인용하여 '보증의 전자적 서명 배제'를 명문화하였으나, 독일은 상법을 통해 상행위에 대해 전자서명을 허용

현장의 목소리

요즘 경영 상황도 어렵고, 대출도 이미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 말고,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설비나 채권 같은 걸로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산 담보대출이라는게 대출 기간이 5년까지 밖에 안됩니다. 법을 찾아보니 동산담보권 존속기간이 최대 5년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갱신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따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가,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영세한 업체들은 대출 금액,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 상환 기간도 매우 중요 합니다. 대출 기간이 짧으면 자금 수급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 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곳이 이걸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담보권의 기간이 좀 더 늘어야 합니다.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매출액 30억, 종업원 10명, 경기도 파주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10년에 동산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 해당 법률의 제정 후 일괄담보제, 동산금융 이용 대상 확대, 담보물 훼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4월 시행되는 등 제도 정비 노력이 있었음
 - 하지만 이 법률의 문제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담보권 존속기간은 연장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잔존함
-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10배 이상 급성장하는 등 동산 금융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만큼 담보권 존속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개선방안

- 동산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혹은 폐지

■ 관련법령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4 회생신청 후 정상화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운영 중인 당사는 2008년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자동차 부품(베어링)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등을 통해 연간 매출액이 260억을 초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서 발급 제한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 기준의 완화가 절실히 요구 됩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매출액 260억, 종업원 121명, 전복 정읍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회생 신청을 한 전력이 있는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조건으로 신용보증서를 첨부해야 함
- 기업회생 신청 후 기업경영 정상화 되었으며, 국내 및 해외시장 수출로 매출액 상승 등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용보증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음
 - 산업변화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투자를 실시하려 해도 은행대출 문제 때문에 능동적 대처에 애로

■ 개선방안

- 기업회생 전력이 있어도 매출액 증가 등 회복된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요건 완화

■ 관련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제46조(보증의 금지)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의 금지)----- ----- ----- -----
<신 설>	(단, 경영이 정상화되고 연매출액이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서 발행을 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금융권 대출이나 타 정책자금을 통해서 대출 실행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자금이라는 정책자금을 통해서 공동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협동화자금은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주로 평가하여 용자제한 조건인 부채비율 적용이 제외되는 등 사실상 협동조합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자금입니다. 타 은행 대출은 매출액 등 여러 요건으로 인해 거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협동화자금은 협동조합에게 꼭 필요한 자금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신청할 시에 3개년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회계준칙이 표준재무제표와는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무사 사무소에 표준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 기장료를 내며, 또한 시간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에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이 의문이지만, 제출을 해야 한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준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협동조합 컨설턴트

■ 현황 및 문제점

- 협동화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공동사업의 사업성을 주로 평가하여, 조합이 유일하게 신용평가등급 및 매출액 기준 등을 벗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 또한 협동조합의 경우 용자제한기업인 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을 제외 받음
- 하지만 자금 신청 시 사업성 평가와 관련성이 없는 3개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나 이는 표준재무제표와는 상이하
 - 이에 조합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해 외부 세무사무소에 위탁해야만 하며 이에 따른 시간과 기장료(자금) 소요

- 시간 소요로 인해 협업화사업을 하는 다른 중소기업들보다 접수가 늦는 경우가 발생하며, 정책자금의 경우 빠른 한도 소진으로 인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개선방안

-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준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인정 또는 표준재무제표 제출 면제

■ 관련법령

-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4호

혁신성장지원자금

□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내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협동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 융자제한기업 9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6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 수수료 인하

[법무부]

현장의 목소리

약속어음제도는 결제 기간도 긴데다 연쇄부도 위험이 높아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납품처와의 상거래 유지, 자금유동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자어음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어음결제 비중이 높는데 전자어음은 배서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심지어 지급제시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한 번 따져보니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로 연간 평균 23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액 부담이 큰 건 아니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비용 규모가 엄청납니다.**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무는 부과하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게 전자어음 사용 수수료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 플라스틱관 제조업체, 매출액 47억, 종업원 19명, 충북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3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5년에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2년 5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시행
 - *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09)외감법인 → ('14)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 ('22)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전체 법인수의 50.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며, 중소기업은 발행되는 전자어음의 76.4%를 차지하고 있음

<자산총액별 법인수> (자료:국세청)

자산총액 규모	법인수	누적비율
5억 이하	387,648	100.0%
10억 이하	113,208	50.8%
20억 이하 ~	286,582	36.4%

<전자어음 발행 추이(단위:조원, %)> (자료:금융결제원)

구분	'18	'19	'20
대기업	5.7 (5.3)	3.9 (4.8)	3.8 (5.0)
중견기업	27.1 (25.3)	16.2 (19.8)	14.6 (19.2)
중소기업	74.2 (69.3)	61.9 (75.5)	57.8 (76.4)
합계	107.0	82.0	76.2

- 더욱이, 종이어음 거래시에는 발행을 제외한 유통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전자어음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금융결제원 징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은 전자어음 발행뿐 아니라 배서·지급제시 시에도 어음 건당 5천원~6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해 금융거래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어음형태별 수수료 비교〉

구분	수 수 료		
종이어음	종이어음 용지구입 1,200원 (발행·배서·지급제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전자어음	발행	배서·보증	지급제시
	1,000원 / 건	1,500원 / 건	2,500원 / 건

- 개별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적을 수 있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업체가 40만여 개에 달하며, 전자어음 결제 건수도 연 162만 건으로 총 금융거래비용은 상당함

* 전자어음 지급결제 추이 : ('19)190만건 → ('20)178만건 → ('21)162만건 (자료 : 통계청)

- 전자어음 시스템 운영 비용을 감안 하더라도, 전자어음 사용 확대로 실물어음 관리에 수반되던 비용이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에 따른 사용자 증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기업에게만 부담시키는 수수료 구조는 개선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 관련법령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약관의 명시·통지 등)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 ③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 금융결제원 전자어음이용약관 제15조

제15조(이용수수료)

- ① 이용자는 관리기관 또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전자어음의 반환, 수령거부시에도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③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우산은 비오는 날에 필요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화재보험이 절실한 재활용업체에게 보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화재보험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재활용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입니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활용산업은 반드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주 답답합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연발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업체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업체로까지 쉽게 불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업체에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에 폐업은 물론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무서우리만큼 냉정합니다. 일부 분야의 재활용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재활용업체는 화재가 많다는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소화설비를 철저히 갖춘 재활용업체에게는 화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불안하게 화재걱정을 하며 사업을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 재활용업체, 매출액 5억, 종업원 12명, 인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하자, 보험사는 높은 화재발생 가능성 등을 사유로 일부분야(파유리, 폐주물사, 선별처리업종)의 재활용업체의 화재보험 가입만 수용
 - 재활용업체 건물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나, 보험 회사의 계약 기피로 가입에 어려움 존재

■ 개선방안

- 화재방지 설비를* 구비한 재활용업체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 허용
 - * 화재 방지 설비(조기경보를 위한 CCTV,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화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일부 재활용 업종의* 보상한도액 상향 조정(현행 5천만원 이하 → 개선 3억원 이하)
 - * 파유리, 폐주물사,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업종의 화재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관련법령

○ 화재보험법 제5조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손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당사자, 즉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계약에 관한 내용임에도 징수는 정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차주에게서 받고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부담금을 차주에게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할인 요청 등 출혈경쟁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출혈경쟁은 제살 깎아 먹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자동차수리비는 보험사가 확정하는 손해액에 따르게 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사가 징수하여 정비업체에 제공한다면 보험사가 확정된 금액만큼이라도 정비업체가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당한 보수 없이 좋은 서비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정비업체, 대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정비의뢰자(차주)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징수를 정비업체에서 담당
 - 정비업체는 자기부담금을 차주에게 받고,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비업체에 지급
- 자기부담금을 고객에게 직접 받게 되자, 자연스럽게 정비업체 간 차주(고객)를 유치하기 위한 할인경쟁이 발생, 이는 출혈경쟁과 동일
- 보험사의 손해사정으로 수리비가 변경되는 경우 전적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재정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차주와 불필요한 갈등 발생
 - * 과거 '정액제'의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 후 재정산 할 필요가 없었고, 자기부담금이 주로 5만원 내외의 소액이어서 차량 소유자와의 마찰이 거의 없었음

■ 개선방안

- 보험사에서 직접 자기부담금을 징수하여 정비업체에 지급토록 개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의 목소리

주로 농민 및 임업인이 많이 쓰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파는 중소 농약상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에 농약을 받아 **농민에게 영세율로 판매한 후 환급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농민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농약상에서 대신 확인 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자인 농민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징구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습니까? **농민들도 주민번호는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환급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해서**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는 다른 일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기가 일수예요. 엄청남 부담이 되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약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협에는 영세율로 농약을 공급하면서 일반 농약판매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 아닙니까? 부디 농약판매상에도 영세율로 농약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 바랍니다.

- 농약 판매업체, 충남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농민 등의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를 운영 중임
 - 영세율 적용 품목 : 농어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품목(조특법 제105조)
 - 영세율 적용 대상자 :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 생산협동조합
- 일반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영세율 적용받는 농협 등의 조합과 비적용 판매상 간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 차이 발생
 - 일반 판매업체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농민에게 영세율로 판매한 후, 농민 확인 절차를 거쳐 별도로 환급절차를 수행

- 이때, 중소판매상이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구매자인 농민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인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 복잡
- 또한 구매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거부감이 높아 애로 발생
- 판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농민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인력이 없는 소규모업체는 이에 대해 큰 부담을 호소

■ 개선방안

- 농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 대상에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된 농약을 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1~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 사. <생략>

현장의 목소리

급속한 고령화에 상조산업도 급성장했습니다. '22년 들어 상조업계 선수금이 7조원을 돌파하고, 가입자수도 700만명을 넘어섰죠. '24년부터 초고령 사회라고 하니, 앞으로 그 성장세는 더 가파를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상조 서비스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나 상조산업 관련법과 제도는 초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업계의 애로사항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고객별로 선수금 50%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고객별 보전은 가입 건마다 부대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관리도 힘들고요. 회사 전체의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한다면 관리도 수월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의 보전 비율도 부담입니다. 선수금 50%를 보전하려면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해서 보증수수료까지 내고요. **회계상으로 선수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데, 담보, 수수료,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영업손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재무건정성에 대한 오해를 사고요.

소비자보호제도의 필요성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무건정성, 피해보상의무 이행 준수 여부에 따라 보전 비율을 차등화한다면, 소비자 피해 방지와 상조업의 발전 모두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에 의거 가입건별로 선수금 50%를 보전해야 함
 - 가입건별 소비자 피해 보상 보전은 업체에 가입건별로 보전 계약 관리 등 부대비용을 발생시키며, 상조회사는 선수금 50%를 보전하기 위해 그 이상의 담보, 보증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함
- 회계상으로 선수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데, 보전 계약을 위한 담보, 수수료, 부대비용 등까지 부담해야 해서 상조회사의 영업 손익에 악영향을 미침
 - 소비자에게 재무건정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켜, 업계 신뢰도가 저하됨

■ 개선방안

- 소비자피해보상 보전 기준, 개별 가입건 → 회사 전체 선수금 개정
- 회사별 재정건정성, 피해보상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지급보증 비율 차별화 및 완화

■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text{보전하여야 할 금액} = (\text{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text{선불식 할부거}) \times \frac{50}{10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
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11 상조업에 대한 방문판매업 및 할부거래법상 이중신고규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며 상조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착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구 고령화 흐름에 따라 상조산업도 선수금 약 7조 5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조산업의 성장을 돕기는커녕,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규제일변도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이중규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방문판매법의 적용도 받고 있어 고충이 많습니다.

방문판매법은 할부거래법에도 규정된, 같은 내용의 등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해서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상조업체들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며,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상조시장 진출을 노리는 보험사들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행위를 해도 상조회사에만 의무가 주어지는 현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상조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이중규제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

현황 및 문제점

- 상조산업은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두 가지 법이 적용되고 있음
 - 할부거래법 상 시도지사 등록 의무 규정이 방문판매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조회사는 동일 내용의 신고를 두 번 해야 함
- 이 외에도 상품금액 한도 규정, 후원수당 규정 등으로 인해 상조회사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음
- 상조회사는 이미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양 법의 규제로 행정력 낭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임

개선방안

- 상조업,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조항 신설
- 할부거래법상 신고로 방문판매법상 신고 같음할 수 있도록 개선(신고의제 조항 신설)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2 대형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규제 완화 재검토

[금융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국내 상조산업은 일본 상조산업을 참고해 왔지만 근래에는 탈일본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웨딩, 축하연 등을 포함한 사업 다변화로 변신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상조와 보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기업이 상조산업까지 진출한다면 기존 상조 가입자의 대량 이탈 등으로 중소 상조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상조산업은 73개의 중소기업, 가입자 수 729만명, 선수금 7조 4761억원 규모
- 대기업의 상조업 진출, 상조업계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 보류 또는 불허해움
 - 보험사가 상조업에 지분 투자해(15% 이상)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정부에서 불허
 - 금융기관에서도 상조업 진출 시도했으나 중소 상조업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하여 포기
- 보험업계, 상조업 진출 논리로 사업의 유사성을 꼽으나 상조와 보험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업종이며 전문분야도 다름
 - 보험은 연령·병력 따른 가입제한이 있고 사유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이지만 상조는 가입제한이 없으며, 장례시 물품 및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임
- 보험업계의 상조업 진출은 기존 상조가입자의 대량 이탈 등으로 인한 중소상조업체의 경영난 발생, 그리고 상조가입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중소 상조업체 보호위한 정부의 대형 보험사 상조업 진출규제 완화 재검토

13 뿌리산업 대상 신용평가 시 기술력 등 종합적 판단 요청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의 목소리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재난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화된 재무제표로 현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인가요?

표면처리산업은 3D업종이지만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뿌리산업입니다. 지난 2017년 인천표면처리업체들이 힘을 모아 연면적 15만㎡ 규모의 인천표면처리센터를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거의 대다수의 업체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감소해 재무제표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지나가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화된 재무제표로 신용을 평가해 여신 여부를 결정하면 당장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자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우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로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지역경제 기여도, 성장성, 기술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중소기업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표면처리업체, 매출액 3억, 종업원 5명, 인천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부자재 등을 생산하던 표면처리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 기업신용도 평가시 대부분의 표면처리 중소기업 신용도 하락 예상
 - 재무제표 악화 때문에 부채 상환 압박, 이자부담 증가, 대출금 회수 등 심각한 자금수급난 우려
- 코로나 사태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시적인 것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기업의 귀책사유도 없음 → 매출부진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할 필요

■ 개선방안

- 뿌리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재무제표, 담보 외에도 기술력, 성장성,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실시



XI. 정책일반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다양한 사업자와의 교류 등을 통해 신규 아이디어 모색, 새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기본법과 달리 상당히 경직된 형태의 법으로 제한적·규제적 관점에서 기술된 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기술 발달로 산업이 점차 변화하고 크로스오버 되고 있으나, 조합의 주된 산업분류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조합원 참여를 제한하여 유사·연관 산업 중소기업과의 협업 및 시너지 모색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직화 확대에도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60여년의 긴 역사만큼, 일부 조합원은 가입 당시 중소기업자였으나, 성장과정을 통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조합원 중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5% 이하로만 허용되는 실정으로, 당초 가입 당시 중소기업자였던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참여 및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외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에서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반면,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 조합원에 대한 인정 및 중소기업자 외의 자 허용 관련,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규제 완화를 요청 드립니다.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현황 및 문제점

- 기술 발달로 산업이 점차 변화하고 융합이 촉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된 산업분류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조합원 참여 제한
 - 이는 유사·연관 산업 중소기업과의 협업 및 시너지 모색을 저해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조직화 확대에도 어려움
- 이와 관련 협동조합 공동사업 원활화 및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확대 등 위해, ‘같은 업종 조합의 다른 업종 조합원 제한’ 규제의 완화가 절실한 상황
 -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관련 제조와 IT·AI 접목, 온라인 기반 사업체 영입 등 다른 업종 조합원 확대 필요

- 또한,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 중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5% 이하로만 허용하는 실정으로, 당초 가입 당시 중소기업자였던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참여 및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외적 인정이 필요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은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업종과 기업 사이즈에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개별중소기업으로 인정

■ 개선방안

-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법·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3항 단서(다른 업종 허용 한도, 20% 이하) 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중소기업자 외의 자 허용 한도, 5% 이하) 폐지 또는 완화

■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3항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조(조합원 자격의 예외)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레미콘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2009년부터 동일한 상황으로, 내년 7월까지 유지됩니다.

믹서트럭 공급이 12년간 제한된 동안 믹서트럭 수요, 즉 레미콘 제조사와 생산능력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레미콘 운반비는 100% 이상 늘었지만 건설사들이 올려준 레미콘 단가는 50%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레미콘 업체들은 경영 위기를 맞을 수에 없습니다.

또한 수급제한 때문에 레미콘 운반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해졌습니다. 7월 1일 레미콘운송업체는 파업을 선언했고, 결국 운송료를 2년간 24.5% 올려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제조업체는 믹서트럭이 없으면 현장에 시멘트를 갖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서 노조는 명절 상여금 100만 원, 요소수 비용 전액 지급, 성과금 1인당 연 2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러한 요구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수급제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수급조절제도에 관여하는 위원회에라도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공무원, 학계, 관련협회 관계자, 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작 1,000개에 가까운 레미콘 업체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 필요한 만큼 믹서트럭이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된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으로 레미콘업계 경영악화 및 운송차질 피해가 심각한 실정
 - 이 기간 레미콘 업체 수는 34.2%, 출하량은 26.2% 증가한 반면, 믹서트럭 증가율은 5.2%에 그쳤으며, 공장 당 트럭 보유대수는 평균 3.7대가 감소해 운송차질 지속

〈 연도별 생산능력 및 믹서트럭 계약대수 〉

연도별	업체수 (개)	생산능력 (1,000m³)	출하량 (1,000m³)	생산능력 /출하량(%)	믹서트럭 계약(대)
'09	711	510,380	115,516	22.6%	20,319
'14	807	575,800	152,154	26.4%	19,907
'21	954	631,622	145,752	23.0%	21,888
증감율	34.18%	23.76%	26.17%	-	5.2%

- 믹서트럭 공급부족으로 운반비는 100% 이상 올랐지만 같은 기간 건설사들이 올려준 레미콘 단가는 50%도 채 되지 않음

〈 레미콘 가격 및 운반단가 현황 〉

구 분	'09	'14	'19	'21	'22.7	'09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가율
운반비(원/회전)	30,313	36,045	45,596	55,620	71,000 (요구안)	134.2%	10.3%
가 격(원/m³)	56,200	62,100	66,300	71,000	83,000	47.6%	3.6%

- 이에, 국토부에 수급제한 해제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21년 개최된 수급조절 위원회('21.7.26)에서는 관련 조치를 '23년까지 연장했음
-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때문에 레미콘 제조업체는 차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8·5제 및 주5일제 등), 이로 인해 운송요건 악화
 - 운반사업자들의 노조결성 후 집단 운반비 인상 및 노동 3권 요구 등 장기간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어려움 가중
 - * ('22년 운송거부현황) 제주도 : 2개월, 경남 : 1.5개월, 부산 : 0.5개월, 수도권 : 7.1부 시작
 -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 공공주도 3080정책,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에 적기 공급 여부가 우려됨
-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 결정 장기화와 레미콘 운반사업자들의 운송제한 행위는 전국 954개 레미콘제조사 중 98%(935개)에 달하는 중소레미콘업체들의 매출 감소 및 수주기회 박탈
 - 특히 중소기업 중 77%(722개)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은 더욱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
 - * ('22.6월) 총 954개사 중 중견 19개사(2%), 중기업 213개사(22.3%), 소기업·소상공인 722개사(75.6%)

■ 개선방안

-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제한 해제
 - 수급제도위원회 존치 시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중소레미콘업계를 대표하는 레미콘 업계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관계자 포함
 - * 당사자인 중소 레미콘업계는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위원 15명 중 노조 관계자만 3명
- 수급조절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3 승강기 관련 업무 산업담당 부처로 이관

[행정안전부]

현장의 목소리

승강기 산업은 기계, 전기, 전자, 통신 공학의 융·복합된 4차 산업으로 체계적인 이론과 품질관리 및 산업의 이해도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행정 조직 관리, 재난관리 등을 주관하는 부처가 전담하고 있어 타 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승강기 산업의 공동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승강기 산업에 대한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 기술 인력양성정책과 예산확보, 표준·수출 지원 등 진흥정책이 절실합니다.

* 승강기 시장은 거대 다국적기업과 A엘리베이터 등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국내 시장의 약 85%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3위의 시장

-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승강기 업무가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이후 승강기 산업발전보다는 인증과 검사 등의 규제 관리에 집중
 - 승강기의 중대고장 범위 확대, 2인 점검, 과태료 부과, 승강기 부품인증 및 안전인증 제도 신설 등 규제 확대
- 행정안전부 내 담당과의 전문성 부족
 - 승강기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 부서는 승강기산업과가 유일하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학적 이해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담당하는 부서 구성원의 전문영역은 주로 토목이거나 행정인 상황
 - * 일본은 국토교통성, 미국 및 캐나다 각 지방정부 건설부서에서 담당함

■ 개선방안

- 산업특성 등을 고려 주무부처 이관(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4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

현장의 목소리

현재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복제약(제네릭 제품)의 경우,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53.55%)으로 등재되고 있어요.

하지만 2006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하된 약가(53.55%)로 등재된 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약가 가격을 추가로 10% 인하하여 발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오히려 약가 인하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소제약사의 경우 신약 보다는 복제약을 위주로 발매하고 있어서, 연동제 시행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 품목을 발매하는 대기업보다 큰 실정입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 약 16년 만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를 개정해서 청구금액 상한 기준을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은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 제정으로부터 16년이나 지난 지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일시적 현상으로 증가한 수요를 평균 수요로 적용하여 약가 인하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기약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정부에서도 감기약의 품질을 막기 위해 제약사들에게 제품 생산 증가를 독려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수요 증가를 평균 사용량 증가로 반영해서 약가 인하라는 규제를 적용하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당 약제의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약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는 오롯이 중소제약사의 몫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연동제 적용 제외 요건인 청구액 상한 금액 기준을 현행(20억)보다 상향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 한국제약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이하 연동제)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대형 품목의 약가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됨
- 그러나 복제약(제네릭 제품)의 경우,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상한 금액의 53.55%로 약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 적용시 약가를 10%씩 추가 인하해야 하는 상황임

* ▲동일제제가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모두 충족시 53.55%, 1개만 충족시 45.52%, 모두 미충족시 38.69%로 산정

- 중소제약사의 경우 신약보다 복제약 발매 비율이 높아 대형품목을 발매하는 대기업보다 연동제에 따른 약가 인하 피해에 취약함
- 지난 3월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제외 요건인 청구액 상한 금액 기준을 15억→20억으로 상향했으나, 이는 16년간의 물가 상승분과 코로나19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감기약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의 생산 독려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으나, 일시적 수요 증가를 현행 기준에 그대로 반영하여 약가 중복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요건인 청구액 상한 금액 기준 상향

■ 관련법령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량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상을 명하지 않는 동일제품군 또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청구액의 합계가 20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2. 상한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가. 1회용 점안제를 제외한 품목의 경우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3조에 따른 주성분 코드가 동일한 품목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 미만일 것
 - 나. 1회용 점안제의 경우: 단위당 주성분함량이 동일한 1회용 점안제들의 상한금액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 미만일 것
- ② 제1항의 산술평균가의 100분의 90 미만인 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의 기준 일자는 청구액 분석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5 대두 수입물량공급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현장의 목소리

17년도부터 aT의 직배대두 공급축소로 두부 업체는 매년 수입대두 물량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다음연도 물량을 조기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올해는 상반기부터 내년도 물량을 당겨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식품 중소기업 중에서도 연식품 중소기업은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약해 공매에 참여해도 대기업보다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강원도연식품협동조합,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대두(콩)은 농식품부가 aT를 통해 ①직접수입·분배(직배, 직배공매) 하거나, ②수입권을 부여(수입권공매) 하는 방식으로 실수요단체에 공급 중
- 농식품부·aT의 직배대두 공급축소로 '17년 이후 수입대두 부족문제가 해마다 반복
 - 당해연도 부족물량을 내년도 물량에서 미리 배정받는 왜곡된 구조가 5년째 반복되고 있어 공급부족·가동중단에 대한 불안감 고조
 - 대두사용량이 가장 많은 연식품(연)의 경우, '22년 직배물량은 '17년의 62.6%에 불과하고 필요물량의 39.0%에 달하는 3.3만톤이 부족한 상황

< 연식품(연) 수입대두 부족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필요물량(A)	76,128	71,321	68,853	69,962	74,409	84,826
배정물량(B)	71,946	64,774	63,869	66,187	63,152	51,669
직배(WTO)	57,670	48,334	48,598	49,106	44,145	36,086
직배공매	500	2,000		1,500	3,694	
수입권공매(FTA)	13,776	14,440	15,271	15,581	15,313	15,583
부족량(A-B)	4,182	6,547	4,984	3,775	11,257	33,157

- 연식품 이외에도 장류, 두유 등 대두를 활용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정부의 직배 대두 축소기조에 따른 경영부담을 공통적으로 호소 중

* 「대두 TRQ 물량, 정부-업계 몇 년째 평행선」, 식품음료신문('19.7)

- “연간 두유업계에서 필요한 대두물량은 약 3만~3만5000톤으로, 협회에서 FTA물량 등을 끌어 모아 간신히 3만3000톤 정도를 배정하는데도 부족한 실정”

- 최고가 경쟁 입찰인 직배공매 및 수입권공매는 자금력이 우월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상공인에는 불리한 방식
 - 전국 1,500여개 두부가공업체는 정부에 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만큼 영세한 기업이 많아 공매로 인한 가격상승·변동성이 심각한 부담
 - 또한 즉각적인 자금회수가 가능한 직배와 달리, 공매는 낙찰금 납입 이후 수입, 배분 및 회수까지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자금운용에도 애로
- 특히, 직배공매의 경우, 물량부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물량의 일부를 공매로 전환·확대하고 있어, 수년 째 애로를 호소하던 실수요 단체의 현장애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 반복

■ 개선방안

- 수입대두 직배물량 확대 및 차년도분 조기공급 요청
 - 연식품(연)의 경우 '22년 대두수요량은 8.5만톤 수준이지만 공급량은 5.2만톤 수준으로 3.3만톤 가량이 절대부족
- 직배공매 폐지 및 직배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변동성 최소화 통한 밥상물가 안정 및 서민식품인 두부의 원활한 공급지원

6 대두포장규격 소포장으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현장의 목소리

두부 제조업체는 인력 대부분이 고령층입니다. 그런데 원재료인 콩을 상하차 할 때, 유독 콩의 포장 규격이 50kg로 되어있다 보니 두부 제조업체의 상하차 작업이 너무 힘듭니다. 다른 곡물들은 소포장으로 오는데, 유독 콩만 50kg으로 포장되어 인력 대부분이 고령층인 두부 제조업체의 상하차가 작업이 너무 힘들고 위험합니다.

-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강원도연식품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두 포장규격은 50kg로 일원화되어 있어, 두부제조업체가 원재료인 콩을 상하차하는 것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음
 - 두부 제조업체 근로자는 대다수가 고령자로 상하차 과정 중 다치는 경우도 발생
 - 타 곡물의 경우 소포장 도입된 사례 다수

■ 개선방안

- 현 대두 50kg포장규격을 30kg로 축소

현장의 목소리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차량 제원과 소속 부품 관련 데이터만 확인돼요. 제원과 부품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차대번호가 무엇인지 모른 채 방문하시는 고객이 대부분이에요. 멀쩡히 번호판에 차량등록번호가 있는데, 차대번호 파악 후 재방문을 부탁드리면 불만이 상당하죠.

무엇보다 똑같이 자동차 부품을 다루는 부품 제조업체나 정비업체 등에는 차량등록번호 조회를 허용하면서, 왜 부품 판매업체에만 불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동차 부품 판매 대리점, 수원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부품대리점은 정비업체 또는 일반 고객 대상 부품 판매·상담 시 차량 제원 조회를 위해 차대번호(17자리)를 요청, 자동차 차량등록번호(7~8자리)는 개인정보 분류로 인해 차대번호 수집 및 검색을 통한 상담으로 대체
 - 차대번호와 차량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근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의안번호 : 제2019-16-260호)
- 부품 제조업체, 정비업체, 중고차 매매업체, 보험개발원 등에는 차량등록번호 조회를 허용하면서, 부품 판매업체에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
 - 차량에 해당하는 정확한 AS부품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제원 및 적용 부품 확인 시 차대번호 요청을 통한 상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효율적
 - 고객이 대리점 방문 시 차대번호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상담이 불가능, 이에 차대번호 확인 후 재방문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정비업체에서 부품 주문 시 차대번호 유선 전달로 인한 잘못된 부품 조회 현상 발생, 또한 옵션이나 차종을 잘못 전달하면서 오 배송 및 수리 지연 현상 발생

■ 개선방안

- 부품대리점도 고객과 원활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제공 허용
- 차량의 유통·관리·보험 등 기업과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데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추가
-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 의뢰 시 예외적으로 수리를 담당하는 공업사 및 부품 납품업체들이 수리의 목적으로 한정하여 차량등록번호를 차주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 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 이전 여행업은 대규모 여행사가 일반 여행사의 상품을 받아 대리 판매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중소 여행사들은 15~30프로 이상으로 수수료를 대형 여행사에 지불하거나 현지 지상비 없이 투어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여행업의 생태는 고객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중소 여행사 또한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은 위의 약습을 타파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여행생태계를 위해 자체 OTA를 개발, 수수료 부담 없이 투명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신규 사업 영역이 기존 협동조합 사업 영역과 달라서 행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법을 따라야 하는데 협동조합법과 여행법 사이의 조율이 어렵습니다. 여행업은 단순히 여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조합사업에 기입하고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수행할지 몰라 매번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연락하기가 번거롭고 어려우며, 신규 사업 시행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신속히 발맞추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재의 협동조합 사업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여행업 관련 협동조합, 서울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2021. 4. 21.)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었으나, 개별 항목은 개정된 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기업 본연의 활동인 사업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협동조합 경쟁력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됨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함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등 애로사항이 있음

■ 개선방안

- 관련 업종 및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신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또는 단서 조항으로 사후 신고제 도입

■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제12호

제35조(업무)

-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작년 11월,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2도 화상을 입고, 작업장 내부가 파손돼 약 1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LPG가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시공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LPG판매업계는 전국 15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LPG 판매업자가 안전관리를 동시에 한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나 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시공업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협동조합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LPG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가스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협법 개정('19년)으로 협동조합 보조금 지급주체 확대
(주무관청 → 중앙정부 및 지자체(광역·기초))

「중소기업기본법 제135조(보조금)」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12.10)

-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및 광역지자체 활성화계획 수립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9.24.)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의 중소기업지위 인정

- 현행법령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불가

-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제11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 가능

「산림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이와 관련하여, LPG판매업계는 전국 15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변화에 발맞춰 건설업 등록하여 가스안전 사각해소를 위한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수행코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일 것

■ 개선방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산림조합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어 건설업 등록이 가능토록 개선
 - 일반적으로 LPG판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현행,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2종), 가스난방공사업)을 겸업, LP가스 판매업의 특성상 공동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공이 수반되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동조합과 사업조합이 제35조 및 제82조에 따라 하는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동조합과 사업조합이 제2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현장의 목소리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은 '플랜트 유지보수'와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조합원사가 참여하여 2019년 설립된 사업조합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으로 업무구역이 여수시로만 제한되어 있어, 여수 이외에 소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 가입이 불가하다보니 공동사업 추진 및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사업조합 설립 시, 같은 업종 사업조합과 다른 업종 사업조합을 구분하여 업무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사업조합 설립요건(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80조)〉

구 분	업무구역	발기인수	비고
다른 업종	전국 또는 둘 이상의 (광역)시·도	50인 이상	-
	하나의 (광역)시·도 또는 일정지역	30인 이상	-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5인 이상	-
같은 업종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 (다른 시·도의 시·군·구 포함)	5인 이상	전국 또는 (광역)시·도 업무구역 불가

- 최근 산업이 고도화, 융합화 되어 특정산업의 경우 관련업체가 소수이며,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하나의 시·군·구에서는 발기인 부족으로 사업조합 설립·운영이 곤란하여 조합 공동사업 추진 시 애로 발생
 - ex) 1.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조)의 경우 특정업종(유류파이프 배관 관리 등) 기업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지만 업무구역 제한으로 여수 이외지역은 조합원 가입 불가
 - 2. 드론, 3D프린터 등 첨단업종은 정보공유 및 공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조합설립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체 수가 적고 전국에 산재 되어 있어 조합설립 어려움
- 사업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구역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다른 업종(5인 이상)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확대
 - (現) 하나의 시·군·구 → (改) 둘 이상의 시·군·구
 - ※ 같은 업종(5인 이상) 사업조합과 동일하게 통일

■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현행	개정요구(안)	비고
제6조(업무 구역) ①(생략) ②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④ (생략)	제6조(업무 구역) ①(현행과 같음) ②-----, 하나 또는 둘 이상의 ----- ----- -----. 1. 2. (생략) ③-④ (생략)	사업조합 업무구역 같은 업종 다른 업종 동일하게 적용

현장의 목소리

광주전남식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은 '22년 소진공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신청을 하려 했으나, 조합원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농약판매업)이며, 전체 조합원 103개사가 광주전남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보니 소상공인확인서 및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전 조합원이 ①소상공인 포털 회원가입 ②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③사업참여 동의서 제출이 필수로, 조합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사업 참여가 힘든 실정입니다.

- 광주전남식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 기술개발·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협업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 지원규모 : 1억~5억원 이내(자부담 20~30% 이내)

- 동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실정임
 -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에서 협업 업체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나, 등록 시 모든 조합원사 대표가 협업활성화 포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또한, 전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를 필수 요구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합원사로 구성되어 있고,
 - 일반협동조합(기본법)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합원수가 많아 조합원사 개별적으로 포털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이 힘든 실정임

■ 개선방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실을 반영하여 협업활성화 지원제도 신청절차 간소화 요청
 - 전 조합원의 포털 회원가입 대신 동의서·위임장·조합원명부 제출 등으로 갈음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등은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여부 확인토록 행정절차 개선 필요

※ 유사사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협동화사업 정책자금」의 경우, 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업 사업에 대해 지원
- 조합에서 관련 서류작성 및 신청절차 등 조합중심으로 진행토록 되어 있음

현장의 목소리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 대부분이 영세한 자동차부품판매업체로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경우 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조합 총회 시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가 힘든 실정입니다.

-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5항(의결권과 선거권)에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33조의2에서는 대리인이 될 자격을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사가 대부분 영세 자동차 부품판매 업체로 구성,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

■ 개선방안

-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도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정관례 제33조의2에 규정된 대리인의 범위를 조합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관례 개정 요청
 - * 2008년 정관례에서 중기부가 조합원사의 임직원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한정된 규정은 조합과 관계 없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최근 신산업분야 등 서비스업종의 조합설립이 확대 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규제완화가 필요

※ 참고사례

- 일반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례 제33조의 2

제33조의 2(대리인이 될 자격)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탄생한 지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을 묵묵히 뒷받침 했습니다. 다가올 100년에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협업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조합도 변혁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낡은 법제가 저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이사 자격기준입니다. 상근이사는 협동조합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합에 매일 출근해 모든 사업과 업무를 통솔합니다. 어떨 때는 조합 이사장보다 중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중소기업 실무에 밝은 전문가를 상근이사로 선임하려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상근이사 자격기준이 가로막습니다.** 경력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조합에 필요한 전문가를 영입하기 힘듭니다. 시대에 맞는 기준도 아닙니다.

다른 협동조합들은 상근이사 기준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4차 산업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실무형 리더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상근이사 자격요건 완화가 꼭 필요합니다.

-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 등 경력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 등 폭넓은 전문가 영입이 어려움
- 현행 기준은 △영세조합의 경우 공무원 출신 인사 선임 어려움 △ 조합 전문성 약화 △행정비용 낭비 등 조합 발전을 저해하며, 조합 운영 및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자율적 임원선출 권한을 크게 제한함
-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및 소비자협동조합은 상근이사의 기준이 없으며,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농·수협 등의 상임이사 자격기준도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개방적임

■ 개선방안

- 상근이사 자격기준 대폭 완화 및 간소화

■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의 부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6.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

14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부품대금 5% 인하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차량 보험수리 부품비용 지급 시 손해보험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근거 없이 부품 청구액의 5~10%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부품유통업체가 자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액을 감액하는 것이죠.

더욱 문제인 것은 대기업 직영 부품유통업체에는 차감 지급을 적용하지 않거나 지역별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손해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별 할인율은 제주는 0%, 인천·충남이 3~5%, 기타 지역은 5~7%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소재 한 부품유통업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손해보험사의 깎기 금액이 무려 8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2015년~2017년까지 발생한 약 40억 원의 매출 중 지급받지 못한 할인 금액이 2억 1백만 원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부품 판매 대리점, 경기·광주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사고차량 수리 시 정비업체는 부품유통업체에서 필요한 부품을 먼저 가져다 쓰고 이후 부품유통업체는 납품한 부품 값을 손해보험사에 後 청구, 이때 보험사는 부품 청구액의 5~10%를 일방적 차감 후 부품판매업자에 지급

* 직영 부품유통업체에는 깎기(할인) 없이 정상가격 지급

- 이는 비순정 부품을 취급했던 1980년대 대금 할인 관행이 정착된 것에 기인, 순정 부품만을 취급하는 현재까지 20~30년 전의 계약을 자동갱신하고 있음

- 또한 부품상의 유형이나 지역별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 역시 문제, 대기업 직영 부품상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지역별 할인율이 다른 것에 대한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음

- 이러한 문제는 손해보험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야기, 거래 유형별로 부품대리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①1,2급 정비업체만 거래(전체 매출 대비 보험 매출의 비율 : 70~80%), ②1,2급 정비업체와 3급 경정비 업체 모두 거래(보험 매출의 비율 : 50~70%), ③3급 경정비 업체만 거래(보험 매출 없음)

- 이중 ③의 유형은 약 10% 미만이며 나머지 대리점은 모두 1,2급 정비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보험 매출의 비율이 50~80%에 달함, 이처럼 영세 부품대리점의 보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의 지위는 우월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부품유통업체 매출 중 보험 관련 매출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나, 손해보험사의 차감 지급으로 유통 마진(약 15~20%)의 3분의 1 이상을 받지 못하므로 업체 부담이 가중
- 인건비, 운송비 등 각종 비용과 재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부품 청구액 차감 지급 관행은 영세 부품유통업체의 폐업·도산 위험을 배가시킴
- 또한 사고 과실 판정 등 송사로 이어질 경우 손해보험사는 부품대금을 장기 미지급하고 있으며, 지연 이자 지급 등 피해 보상조치 제공하지 않고 있어 영세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
- 특히 사고 차량 출고 후 수일 이내 차량 이상으로 추가 부품 수요 발생 시 해당 건에 대해 5% 할인 이외에 자차 면책금 공제라는 이유로 20%를 추가 할인하여 이중 손실이 발생
- '19.10월부터 1년간, 정비업계는 정부, 국호, 손해보험사협회와 선(先)손해사정 시범운영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 정비업계 꺾기관행은 다소 개선
 - 부품 유통업계의 경우 개선사항 없는 상황

■ 개선방안

-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부품 청구액 차감 지급 관행 철폐
- 자동차 서비스업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정부신고센터 설치
 - 부품 청구액·정비 공임비 등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 대금 지급 지연 등 자동차 서비스업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채널 마련
- 손해보험사-부품유통업체-정비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 청구 금액 차감 사유 통보, 지연 이자 지급, 대금 지급 연기 사유 통보 등 규정

15 재활용 집계차량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

[국토교통부]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재활용 집계차량 생산 및 소비국입니다. 골목길이 많고 재활용 쓰레기를 빠르게 처리해야하는 특성 상 포크레인과 덤프트럭보다는 집계차가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류비 지원이 안 되고 보험료도 비싸서 집계차량 운송업자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집계차량의 신규 진입도 막혀있는데, 일반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한다면 적재량과 연비 문제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 이슈인 쓰레기 대란은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수집운반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
 -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비용이 이를 가공해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크기에 수집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
-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18.1.8)」에 따르면, 재활용 폐기물 수집을 위한 분노운반차량 등은 신규 공급(허가)이 가능하나 재활용 집계차량은 청소용이 아닌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될 우려에 따라 신규 허가 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민간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운반 차량 대부분이 집계 차량인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유류비 지원 혜택에서 배제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그러나 재활용 집계차가 일반화물 운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음
 - 집계차로 화물 운송 시 중량으로 인한 연비저하 문제 때문에 일반 트럭으로 구조변경이 필요 → 약 6천만 원 소요 추정
 - 불법운송 적발 시 사업 허가 취소 및 징역 부과 등 위험부담 존재

■ 개선방안

- 재활용 집게차량을 정부의 유류비 지원 가능토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3호에 집게차 추가
 - 재활용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는 집게차량이 필수 차량으로, 동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통한 지원 시 쓰레기 대란 해소 기대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호)

제3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 가. 노면청소용 차량
 - 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현장의 목소리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가 생산하는 수산물 가공식품의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공동특산물판매전시장' 신규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의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지원 대상을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은 여수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생산하는 오천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33개 조합원사는 생선·조개류 등을 가공 및 생산하여 연간 총 1,100억원의 매출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합명	여수오천산업단지 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주무관청	전라남도
설립일자	2006. 10. 19	주요품목	수산물 가공·제조
조합원수	33개사	소재지	전남 여수 망양로 477
주요사업	공동시설(오피수처리장) 운영 및 조합원사 교육, 정책건의 등		

- 조합에서는 조합원사가 생산하는 수산물 가공식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특산물 판매전시장을 신규건립 추진 중임
 - 최근 인근 지역개발 등 여수지역 관광객 증가로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전시장 건립 필요
- 조합은 판매전시장 건립 관련 전라남도의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판매전시장 건립 추진이 힘든 실정임
 - 지원대상이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으로 제한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지원사업(전라남도)

-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내용 : 수산물 직매장·위판장·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 지원(도비 및 시군비 30~50%)

-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과 성격 및 취급품목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어촌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목적이 같음
- 여수오천산단은 여수·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식품특화단지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유통산업에 맞춰 식품 가공 및 판매가 가능한 One-stop 시설 조성 필요

■ 개선방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수협 및 영어조합법인 등과 동등하게 판매전시장 건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오천산단조합의 경우, 전라남도의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함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점은 불합리함

현장의 목소리

전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영세 슈퍼마켓 조합원들로 구성,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공동구매사업은 대기업과의 구매협상력 증대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거래 시 보증 증권 및 근저당 설정 등 담보요구에 따라 물류센터 근저당 설정이 필요하나, 의무사용기간(10년)이 지났음에도 목포시에서 근저당권을 해제해주지 않아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전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 전남서부수퍼조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2007년 목포시와 운영협약을 맺고 2008년부터 사업비 30억(국비 9억, 시비 12억, 자부담 9억)을 투입하여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 운영 중임
- 준공 후(2009.2.11.) 관련규정* 등에 따라 목포시의 근저당 설정(21억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1조(재산의 처분 제한)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축물 등 중요한 재산을 물류센터 개소 후 10년 동안(이하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 한다) 지방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의 건립목적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목적사용기간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설비 등의 의무목적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렉시설,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설비 : 5년.
2. 소모성 설비 : 2년.
3. 그 밖의 시설물은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정한다.

② 중소기업자단체는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업추진기간 동안은 센터 재산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의무목적사용기간 이후 사업추진기간 동안의 센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단, 센터 매각 시 매각대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 중소기업의 유통물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센터건립 취지에 맞도록 조합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목포시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물류거래 등에 애로사항이 있음
 - * 물품공급사(제조 대기업)에서는 원활한 한도거래를 위해 담보제공 등 근저당권 설정 요구

■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관리는 지자체장(목포시)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목적 사용기간(10년)이 경과하였고, 조합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포시의 근저당권 설정 해제 필요
 - 관련 규정(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무 목적 사용기간 이후 센터의 재산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합 정관 조항을 추가하였음('21.6.15)
- 타 지역 조합의 경우 의무사용기간(10년) 경과 후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 근저당권 설정 해제조치 완료

❖ 타 지역 조합 사례

-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17.10.11),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18.8.1) 정관개정 후 근저당해제 조치 완료

18 중소기업협동조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광주광역시]

현장의 목소리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은, 영세한 자동차부품유통업체가 모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업체별로 부품창고를 운영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조합원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차부품 물류센터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내에 입주할 수 있는 물류부지가 많지 않아 최근 건립준비 중인 첨단3지구 내 물류부지에 물류센터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조합원사)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
 -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중소기업에 공급,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협상력 향상 및 원가절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광주자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은 신규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음
 - * 입주희망조합 : 자동차부품, 가구, 연식품, 콘크리트, 식자재공급업 등 7개 조합 3만평 수요
 - 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는 택배업 등 일반물류업종과 달리 교통문제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아 산단 입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법률과 조례에도 조합 지원근거가 있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 개선방안

- 광주광역시에서 조성 중인 첨단3지구 등을 포함한 신규 조성예정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입주 요청

〈광주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첨단3지구 개요〉

- ▶ 위 치 : 광주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 ▶ 사업면적 : 3,616,853㎡
- ▶ 사업계획 :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예정
- ▶ 시 행 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 입주대상 업종 : 인공지능 관련 제조업, R&D, 물류유통

- 건립 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그린뉴딜 실현이 가능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시설 구축 등 지원 요청

현장의 목소리

현행법은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차가 정비소에 입고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자가 봉인을 발급받아 가져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불법임을 알지만 자동차 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봉인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고시 까지 소유자가 번호판 및 봉인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정비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망가진 번호판 및 봉인을 대충 끼워서 출고시키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및 봉인을 재발급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탈부착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자동차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소유자를 대신하여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동차정비업체, 대전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 차량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도 매번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번호판 봉인을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발급 받도록 하고 있어 시간 및 비용상 비효율과 불편이 발생

■ 개선방안

- 자동차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자동차 정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떼는 경우 봉인의 탈착을 허용토록 관련법 개정 필요
- 정비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현행	개정안
<p>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p> <p>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④ ~ ⑨ (생략)</p>	<p>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③ ----- ----- -----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소유자를 대신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 부착할 수 있다.</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현장의 목소리

국가 R&D를 신청할 때 부채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출형 투자 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을 예외 규정으로 두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서울시 산하 기관 R&D 센터는 단순히 부채비율 1,000% 넘으면 무조건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정입니다.

- 서비스업(SW개발업), 매출액 71.3억원, 종사자수 44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부채비율이 단순 K-GAAP을 선택하는 것과 K-IFRS를 선택할 경우 분명히 다른데, 이에 대한 분석 없이 SBA(서울산업진흥원) R&D센터에서는 단순 부채비율 계산식에서 1,000%가 넘는 경우 아예 과제지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당함

■ 개선방안

- 부채비율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의 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청
- 타 부처들처럼 예외조항을 두어 투자받은 기업들이 K-IFRS로 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서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함

현장의 목소리

정부에서 거의 10년 넘게 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을 지원해주면서 중소기업들도 어느 정도 스마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문제점이나 누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부터 사후 점검까지 단계별로 지나치게 감리 및 검수 등의 점검사항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굳이 **불필요한 점검으로 인해 인건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공급기업인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프트웨어개발·유지보수 업체, 매출액 20억, 종업원 27명, 서울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사후점검까지 단계별로 지나치게 점검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점검으로 인해 인건비가 지속 소요되어 자금난 반복
- 1년의 업무량 중 50%가량을 계획과 점검으로 낭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 사업의 경우, 2021년 12월 공고 이후 7월 현재까지도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

■ 개선방안

- 점검(검수)기능 최소화 및 스마트공장 시스템 품질개선 비용에 투입
- 참여기업(수요기업)이나 공급기업의 부조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관련법령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정)

현장의 목소리

유통상가단지는 주로 비슷한 업종의 소상공인 개별점포가 대규모로 집적하여 운영하는 영업 시설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입점 점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시설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유통상가단지는 대규모점포로 구분되어 소상공인임에도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을 받지 못해 단지를 운영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같은 유통사업단지여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하니 난감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체 유통상가단지를 전통시장으로 분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상가단지는 특정 품목이나 이와 연관된 품목 등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집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유통상가단지는 대체로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전문유통단지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대다수 단지는 시설 노후화로 주차장 확충, 화장실 보수 등 시설 현대화가 필요
 - * '19년 기준 전국 산업용재 관련 유통상가단지 54개 평균 경과연수 19.6년
- 그러나 법상 유통상가단지가 시설 현대화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으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오히려 규제 대상으로 취급
 -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기준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일부 유통상가단지는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우회적 방법을 활용 중이나, 전통시장 인정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행정처리가 까다로움
-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더라도 시설 현대화 등 지원 사업은 기존 재래시장 형태를 갖춘 시장 위주로 집중, 산업용재, 전자제품 등을 취급하는 유통상가단지는 소외
- 따라서 유통상가단지가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이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의 범주에 유통상가단지를 포함시킬 필요

■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내 유통상가단지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전문상가단지 업종요건 완화)
 - 유통상가단지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규모점포 범위에서 제외
-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의 범주에 유통상가단지 포함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다. (생략) <신 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다만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전문상가단지는 대규모점포로 보지 아니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거나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

〈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②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2.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2. (생략) 3. 상기 1호와 2호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항의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되는 곳

현장의 목소리

중소슈퍼는 저성장으로 인한 소비 위축, 유통업계의 경쟁 심화,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소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구매 등을 수행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중심을 잡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 업무가 중기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현재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각 물류센터 데이터를 통합 및 가공하는 통합전산망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지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소유통육성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근거해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이 개정('20.5월), 중앙정부의 보조금에서 지자체의 예산으로 변경
 - '20년부터 중기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이 1,274억 원에서 0원으로 순감, 지자체에선 재정부족으로 별도로 예산 책정하지 않은 곳이 다수
- 중소유통업 온라인 진출 지원, 물류환경 스마트화 등 중소유통 육성 정책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정부 주도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중소유통물류센터 선진화 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정 지원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건설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등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법과 제도가 형식상 갖추어져 있어도 제2, 제3 하청이 늘어날수록 현장에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 때, 제 값을 주도적으로 감시·감독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원사업자 등에게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관련자가 법을 준수하고 부실공사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세 건설업체, 매출액 40억, 종업원 7명, 경북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는 대부분 종합건설에서 전체 공정을 수주하여 전기, 통신, 소방 등 해당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 이 경우 하청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에 공사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등 제출해야 공사 진행 가능
- 하청업체들이 공사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발주처나 원사업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다수 건설업체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감액 요구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하청업체 직원 및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와 자재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과 연결되어 연쇄 부도, 대금지급 소송 등 경제·사회적 비용 초래

■ 개선방안

- 모든 건설공사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의무 규정 명기
- 표준계약서 미작성시 발주처 및 원사업자 책임 규정 신설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약자를 지원하는 기업이 충분히 존중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시 기업간 우열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약자지원 기업이라는 이유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도 입찰을 싹쓸이 한다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평가항목 중에서 약자기업에게 가산점(5점 이하)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자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도를 싹쓸이하는 실정입니다.

약자기업이 잘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자기업 때문에 일반 기업이 발전의 기회를 놓쳐 망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약자기업 전용 입찰 제도를 만들던지 아니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약자기업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 콘크리트제조업체, 매출액 50억, 종업원 35명, 인천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구매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은 안정적 매출처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진입 희망
- 공공구매제도의 일종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도는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기본평가항목 60점 이상(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신인도), 선택평가항목 40점 이하(선호도, 지역업체,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약자지원, 경영상태, 납품실적 등)로 구성
- 기업 간 차별성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약자기업 등이 가산점을 받아 입찰을 독차지해 선량한 일반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

* '21년 A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수도권 지역, 벽돌콘크리트) 전체 25건 중 23건을 약자지원 기업이 수주

■ 개선방안

- 약자지원 기업 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5점 이하) 폐지 또는 약자지원기업 전용 입찰제도 신설

■ 관련법령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표 1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등		-0.5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현장의 목소리

당 사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용 특수 가스켓 개발·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재료들을 국산화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고,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발전하면서 제조물품의 품질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혁신의지를 감퇴하게 만듭니다. 적극적 투자와 노력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고, 납품계약을 인질로 노하우와 기술의 공유를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물량이 많고 의존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부품 제조업종의 경우 대기업과의 종속관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제조 노하우, 기술의 보호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술공유 요구 방지 및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로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매출액 259억, 종업원 48명, 경기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대기업이 납품계약 체결을 무기 삼아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중소기업 혁신의지를 감퇴시키는 사례 빈번함
- 특히, 기술개발 및 노하우 축적에 대한 노고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기술개발 결과는 수탁기업인 대기업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여전함
- '22년 2월부터 기술자료 제공시 수탁-위탁기업 간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미체결시 과태료 부가기준 등을 제정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술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항 부재
 - 납품계약 유지를 빌미로 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술 공유 이후 납품업체 변경 등의 압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항 명시 필요

■ 개선방안

- 기술보호 계약조항 구체화(기술공유 강요 방지, 기술공유 이후 일방적 납품계약 종료 방지 등) 및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관련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의 목소리

2020년 말부터 제주도 ○○리조트 내에 대규모점포 개설이 진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지역상권마저 무너질까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등) 마련, 제주도 광역단위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지만 개점이 진행되었고 지난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제24차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통해 권고안이 심의·의결되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었지만 현행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에서의 구성 및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제주 소재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제주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제6조 및 제7조

- 제주 ○○리조트 내 대규모점포 개설 관련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겼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음
- 2021년 9월까지 중소기업사업조정을 진행하였고 제24차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사업조정 권고안이 심의·의결된 상황(중기부 공고 제2021-540호)*

1.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는 경우 허용 된다.
2.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한다.
3. 명절(설날, 추석) 연휴기간 판촉 행사를 제한한다.

- 중기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상권으로 보고 있으나 제주도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각 행정시별(제주시·서귀포시)로 운영되게 되어 있어 위 사례와 같이 제주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제주 ○○아울렛 입점 관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21.9월)

- 도 조례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주도 광역 단위로 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비한다는 이유로 '21.8.9일,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4조의3을 따르도록 개정됨
-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협의회장은 행정부시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하며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협의회 위원의 임명·위촉 규정(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에만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이 포함되어 있음
- 제주특별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시는 지방자치 단체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선방안

-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 등 도내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가 아닌 제주도 행정에서 해결토록 관련 규정 개정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
- 제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도시자가 임명·위촉하도록 시행규칙 제4조의2 개정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건의(안)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의의 구성)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의의 구성) ② 회장은 부지사(특별자치도 행정부시장을 말한다) ,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8조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4조의3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장의 목소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 해소요청을 해도, **중앙부처 및 해당 기관의 유권 해석에 입각하여 “고충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민원 신청인, 즉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피신청기관”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다시 신청을 해도 그것이 권익위 내 **같은 담당자에게 재배당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의신청이 실효성이 있게 진행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건설자재 제조업체, 매출액 40억, 종업원 22명, 강원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신청은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피신청기관의 입장만 고려하고, 중앙부처 등의 유권해석은 포함하지 않음
- 민원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신청 민원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면 동일 담당자(원처분 조사관)에게 다시 배당되므로 실질적으로 재신청의 실익이 없으며, 무조건 첫 처분을 받아들여야하는 상황
 -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제도가 있는 것에 반해, 민원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기회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게 어긋남)

■ 개선방안

- 중앙부처 및 해당 기관의 유권해석이 첨부된 민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유권해석 기관 간 공동처리 필요
- 민원인의 이의제기 신청 제도 마련
 - 이때 이의제기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이 아닌, 주 유권해석 부처 또는 민관규제개선추진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처리 필요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0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 동법 시행령 제50조

-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행정 기관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내 두부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대기업 회사들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방송사의 소포제, 유화제가 몸에 해롭다는 방송 송출 이후로 소포제, 유화제를 사용하는 영세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 중 일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송출했고, 결국 국민들이 소포제나 유화제가 포함된 상품은 유해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체에서 실상 사용하는 소포제, 유화제는 식물성원료로 추출하였으며 까다로운 할랄 인증까지 받은 상품을 활용하여 만들지만 여전히 대기업 계열사들은 無소포제, 無유화제라는 취급문구를 작성 및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소포제와 유화제를 쓰는 모든 두부 공장은 몸에 안 좋은 두부를 만든다는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영세업체들이 사용하는 소포제, 유화제의 무해함을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대폭적으로 알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부제조업체, 강릉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 계열의 두부 제조기업은 無소포제, 無유화제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여, 영세 두부 업체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 첨가하지 않은 부원료에 대한 과도한 표시 문구를 제한하는 법안 마련

■ 관련법령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6.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영양소"라 함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